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914-01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2. 12.

수행기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학협력단



본 자료는 용역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연구보고서로서 특허청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년 12 월 일

- 주관연구기관명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학협력단
- 연구 기간 : 2022년 9월 19일
~2022년 12월 18일
- 주관연구책임자 : 고 영 희
- 참여연구원
 - 연구 원 : 임 효 숙
 - 연구 원 : 문 지 용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II.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제품 추천사업 분석	12
1.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제품 추천사업 비교 분석	13
2. 두 사업의 유사성 및 차이점 분석	32
3. 혁신지향 공공조달 관련 사업 분석	42
4. 사업 개선 방향	52
III. 사업 관련 심층 조사 분석	54
1. 선정 기업 대상 설문 조사	55
2. 선정 및 미선정 기업 대상 인터뷰	75
3. 혁신제품 추천 프로세스 개선 방향 인터뷰	82
IV.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사업 개선 방안	85
1.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사업 추진 방향	86
2.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사업 전략	94
3.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사업 관련 법령	100
V.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 실행 사업	122
1.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 단계별 실행사업	123
2. 우수발명품 혁신제품 지정 촉진 사업	127
3.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사업 추진 로드맵	136
참고문헌	140
부 록	141

표 목 차

<표 1-1> 우수발명품우선구매 및 우수특허기반제품 관련 법령	4
<표 1-2> 우수발명품우선구매 및 우수특허기반제품 사업 비교	4
<표 1-3> 설문조사 계획	10
<표 2-1>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비교	30
<표 2-2> 기술개발제품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제도 비교	45
<표 2-3> 경쟁적 기술대화 지원내용	48
<표 3-1> 설문 조사 개요	55
<표 3-2> 설문 조사 주요 항목	56
<표 3-3> 인터뷰 참여 기업 현황	75
<표 3-4> 인터뷰 질문	76
<표 4-1> 서면심사표 변경안	98

그림 목 차

<그림 1-1> 국내 중소기업 경영애로사항	2
<그림 1-2> 우수발명품우선구매 및 우수특허기반제품 추진절차 비교	3
<그림 1-3> 우수 IP기반 제품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 모델	8
<그림 2-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추진 체계도	18
<그림 2-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추진 절차	19
<그림 2-3> 혁신제품 지정 대상 및 절차	25
<그림 2-4>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추진절차도	25
<그림 2-5>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사업 절차상의 차이점	36
<그림 2-6>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이유	37
<그림 2-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활용 내용	38
<그림 2-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선정 및 공공납품 성과	40
<그림 2-9>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천 및 지정 성과	40
<그림 2-10>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추진체계	48
<그림 2-11> 사업의 유사성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52
<그림 3-1> 응답 기업이 참여했던 사업	57
<그림 3-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지원 목적	58
<그림 3-3>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의 지원 목적	58
<그림 3-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알게 된 경로	59
<그림 3-5>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59
<그림 3-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개선 의견	60
<그림 3-7>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개선 의견	60
<그림 3-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프로세스 개선 의견	61
<그림 3-9>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프로세스 관련 개선 의견	61
<그림 3-10>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 지원책 관련 의견	62
<그림 3-11> 우수발명품의 홍보 및 사업지원 관련 필요 사항	63
<그림 3-12>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위한 추가 지원 노력 관련 의견	63
<그림 3-13> 우수발명품 선정 후 R&D 투자 변화	64

<그림 3-14>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 후 R&D 투자 변화	64
<그림 3-15> 우수발명품 선정업체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 계획	65
<그림 3-16>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업체 중 재지원 계획	65
<그림 3-17> 우수발명품을 설명하는 내용	66
<그림 3-1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	66
<그림 3-19> 우수발명품 선정 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 시 가장 도움이 된 부분	67
<그림 3-20> 기업 설립년도	68
<그림 3-21> 주요 고객	68
<그림 3-22> 주요 시장	69
<그림 3-22> 주요 시장	69
<그림 3-24> 선정된 제품의 산업 분야	70
<그림 3-25> 연간 매출액	70
<그림 3-26>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71
<그림 3-27> 특허 보유 건수	71
<그림 3-28> 디자인권 보유 건수	72
<그림 3-29> 실용신안권 보유 건수	72
<그림 3-30> 상표권 보유 건수	73
<그림 3-30> 설문분석 결과를 통한 사업 개선 시사점	73
<그림 4-1> 신청 기업 확대 전략	86
<그림 4-2> 지원 혜택 강화 전략	87
<그림 4-3> 지원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전략	91
<그림 4-4>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 정책 방향	92
<그림 4-5>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사업 통합 방안	94
<그림 4-6> 통합 사업 추진 체계	95
<그림 4-7> 통합 사업 추진 프로세스	96
<그림 5-1>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 사업 실행 로드맵	136

I.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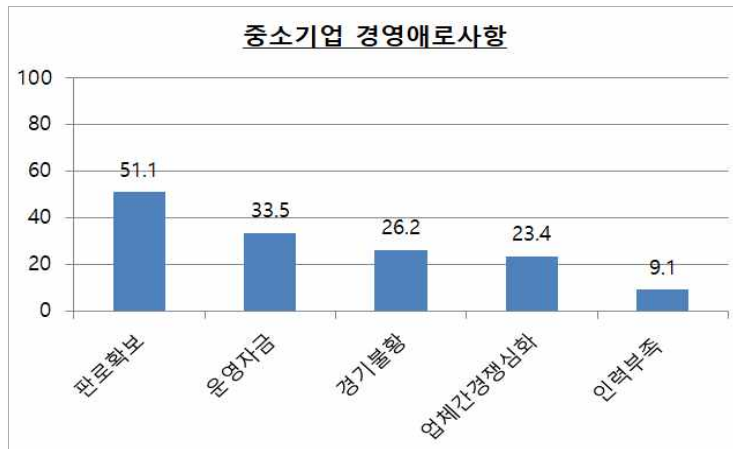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배경

가.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기반 사업화 성과를 위한 판로 지원 사업 필요성

-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후 가장 큰 시장 진입장벽은 유통망 확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음
- 특히 특허청의 경우, R&D에 집중한 우수발명, 우수특허 기반 제품들의 공공조달 등의 판로지원에 집중하는 사업으로 특화하여 기여하고 있음

<그림 1-1> 국내 중소기업 경영애로사항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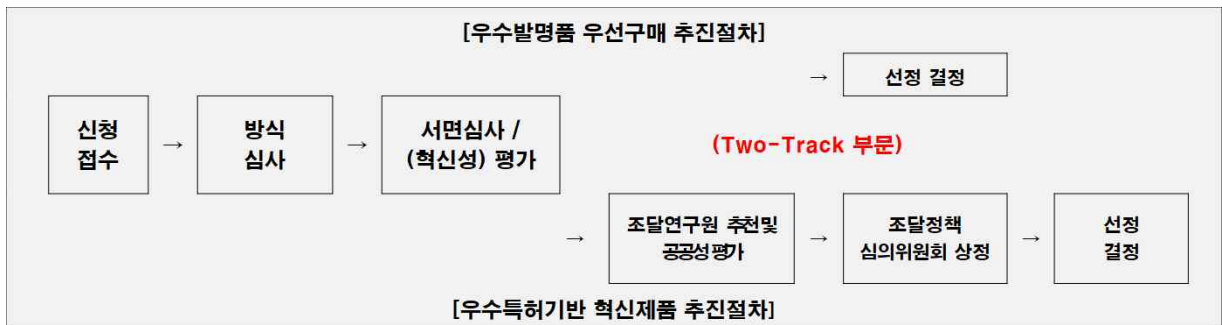
- 이러한 우수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특허청 차원의 사업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는 상황으로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도화 전략이 요구됨
- 기존 특허청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여 공공판로 지원 중 ('95.~)

*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 우수특허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구매특례를 제공하는 범부처 혁신제품 지정 절차(패스트트랙Ⅲ)에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트랙 신설·운영 (‘20. 하반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특허청 고시)

<그림 1-2> 우수발명품우선구매 및 우수특허기반제품 추진절차 비교



나. IP기반 중소기업들의 성장 기반 사업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우수발명품 선정 관련 규정의 공신력 확보, 목적이 유사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정책을 검토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필요

-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제39조의2(우수발명품의 홍보지원)에 명기된 우수발명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선정 기준 등 제반된 규정이 미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 141~148조에 판로지원 절차만 명기

- 우수발명품의 선정 주체가 한국발명진흥회장, 우선구매 추천취소는 특허청장으로 나뉘어 있어 우수발명품 선정 공신력 확보와 선정·취소 절차 일원화를 위해 특허청장이 선발하는 근거 및 절차 마련 필요

<표 1-1> 우수발명품우선구매 및 우수특허기반제품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1조~148조(혜택과 신청, 심사 등 선정절차)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특허청고시 제2021-22호, 우수특허제품 선정 절차 등)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사목(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다목(수의계약)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3호(패스트트랙3)

- 우수발명품의 공공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 및 우수특허제품의 혁신제품 선정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시책이 수립되어야 함

<표 1-2> 우수발명품우선구매 및 우수특허기반제품 사업 비교

사업구분	최종결과	혜 택	21년 추진
우수발명품우선구매	특허청 확인서	우선구매추천	112건 선정
우수특허기반혁신제품지정	조달위 지정	혁신조달제품(FT3)	99건 추천(48+지정)

다. 우수 IP기반 혁신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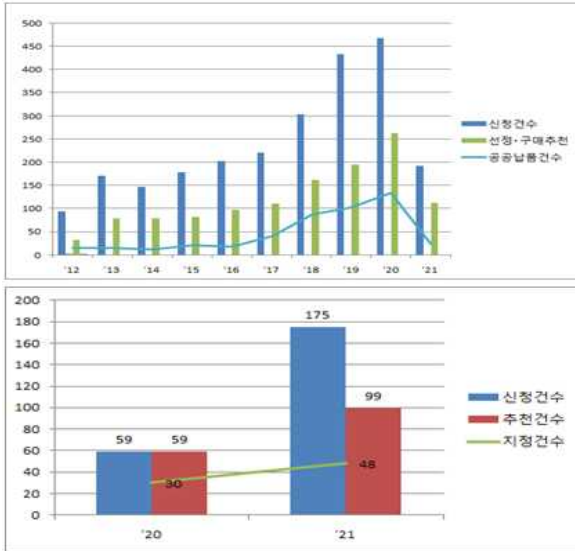
- 타 기관과 차별화된 특허청이 추천하는 우수 IP제품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이들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통합 지원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

- 기술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성장과정에서 특허청의 기존 및 신규 사업을 연계한 통합 지원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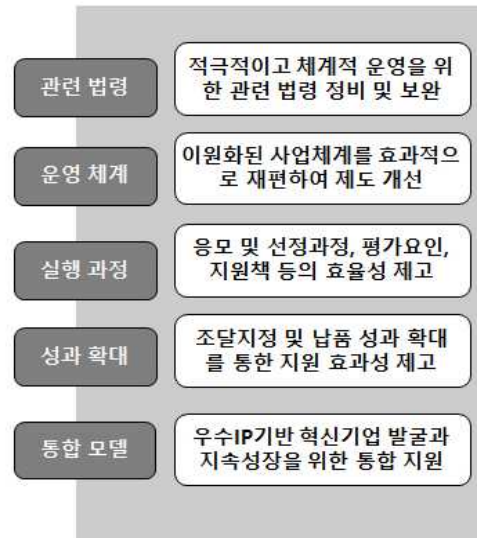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추천 사업을 통합 활용하여 특허청의 IP기반 지원 사업들의 연계 허브와 시장 성과를 통한 지속 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의 목표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제품 지원사업 현황



우수IP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체계화



가.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 혁신제품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심층 분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제도 및 절차의 심층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 도출에 반영
- 관련 선정업체, 미선정업체 등에 대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의 개선안과 향후 진행방향을 제시
- 각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과 전략 방향에 따른 보완점 도출

나. IP기반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

- 우수 IP기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분야의 판로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 및 실행 프로세스 도출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세부 운영 방법 등 제시

- 우수발명품,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법령 등 제개정(안) 도출
-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 운영절차/방안 도출

다. 우수발명품 혁신조달 정책 및 제도 개선안과 신규사업 도출

- 중장기적으로 특허청의 차별화된 우수 IP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및 지원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지원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정하여 제시
- 각 부처의 혁신제품 및 혁신조달 관련 지원 제도와 사업을 비교분석하여 특허청의 우수 IP기반 혁신제품 사업의 차별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 혁신제품 선정과 사업화 및 관로 지원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 구축안 제시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IP기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및 판로개척을 위한 선진적 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의 주요 연구 내용을 추진함

가.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사업 관련 현황 분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제도 및 절차 현황분석
 - 우수발명품의 불명확한 정의 및 선정기준, 선정/취소 주체 일원화 등 법령상 미비점 분석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두 유사제도의 목적, 정의, 평가항목, 효과,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 운영 방향 제시
- 우수특허 혁신제품 지정 촉진을 위한 혁신조달 지원 사례 및 특허청 혁신제품 관련 현황 조사
 - 우수발명품·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탈락 기업 현황조사
 - * 선정기업 조달실적 및 애로사항, 탈락한 기업의 사유 등의 설문

나. 행정효율성 제고 및 혁신조달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세부 운영 방법 등 제시
 - 우수발명품,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법령 등 제개정(안) 도출
 -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 운영절차/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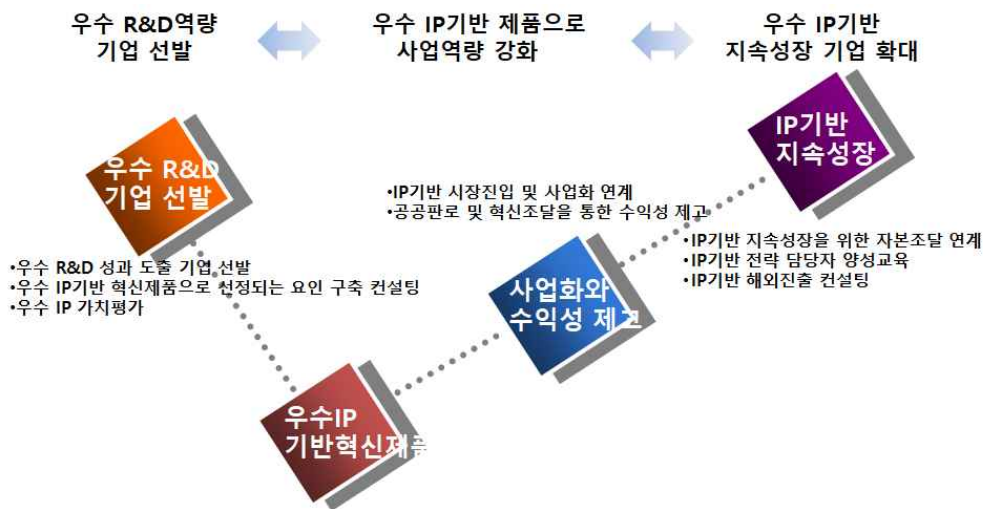
다. 우수 IP기반 혁신제품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제언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제언

- 우수발명품이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에 도전하거나, 혁신제품 재도전 기업의 혁신기술성·공공수요 적합성 개선 등의 지원방안 신규사업 제언
- 혁신성 외에 시장성과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우수특허제품 발굴을 위한 기업선정, 공모 프로세스 등의 혁신안 제시
- 우수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촉진 지원사업에서 선정되기 위한 사업화와 혁신조달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개선안 제시

라. 우수 IP기반 혁신제품 선정 촉진 신규사업 모델 제시

<그림 1-3> 우수 IP기반 제품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 모델



○ 중장기적으로 특허청의 차별화된 우수 IP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및 지원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지원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정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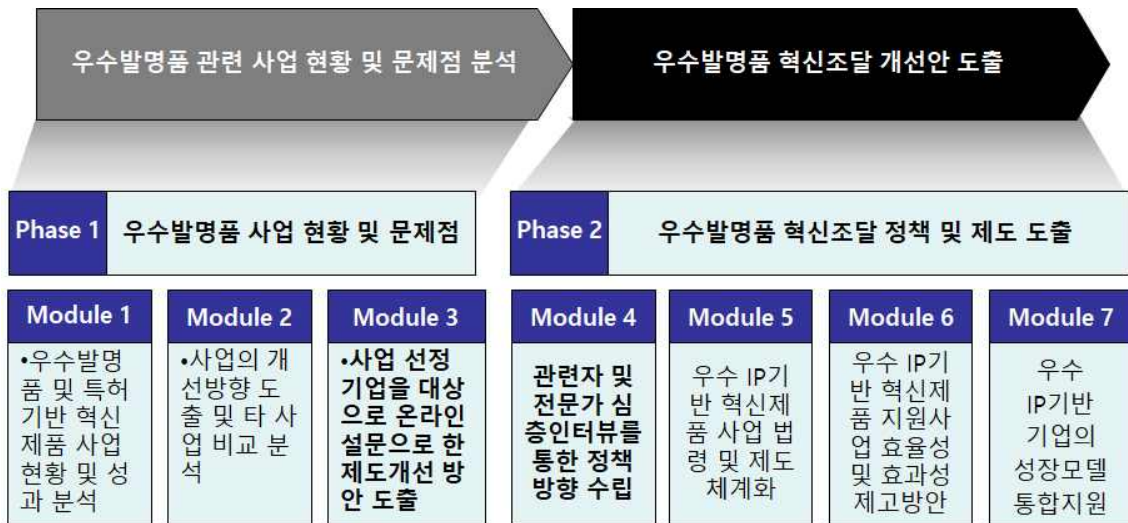
- IP 특화 제품과 기업들이 시장 성과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허청 차원에서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사업이자 실효적인 국내 IP 사업화

와 활용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 본 사업을 통해 우수 IP기반 혁신제품이 개발되고 선정되어 시장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다양한 특허청의 타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실효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과 중장기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추진 전략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우수 IP기반 제품에 대한 혁신조달 정책을 도출함



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정책의 효과성 분석

- 두 사업은 유사한 정책 목표 하에 수립되었으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의 경우 오랜 기간 시행되어오면서 정착되었으나 우수발명품 인증의 공신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실효적인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패스트트랙 III가 신설되

면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제품 추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특허기반 중소기업들의 보다 효과적인 공공수요 확보의 프로세스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특허청의 IP기반 기업들의 우수발명 및 특허제품들의 인증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신력과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조달의 성과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III에서의 차별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함

나.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업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설문조사 계획
 - 그간 우수발명품 선정업체와 우수특허혁신제품 선정업체에 대한 심층 설문을 통해 선정 프로세스 개선, 이후 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핵심 요인과 이를 반영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도출
 - 설문조사는 우수특허혁신제품 선정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우수발명품 선정업체에 대한 설문도 보완 병행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고자 함
 - 그 대상과 조사방법, 설문대상에 대한 안은 다음과 같음

<표 1-3> 설문조사 계획

조사구분	우수특허혁신제품 선정업체 설문	우수발명품 선정업체 설문
목적	우수특허혁신제품 선정 프로세스와 조달업체 선정 요인에 대한 보완 의견 취합	우수발명품 선정 프로세스와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현황 및 개선 요인 확인
활용	통합적 우수발명품 혁신조달 정책 및 개선안 도출	
조사방법	온라인설문	
규모	20-21년 선정 업체 중 약 100개 업체	

다. 우수발명품 혁신조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심층 인터뷰(FGI) 조사

○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계획

-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한 설문조사 외에 보다 면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련 신규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진행
- 인터뷰 대상자: 우수특허혁신제품 및 공공조달 선정업체, 공공조달 미선정업체, 조달 연구원 등
- 도출 분석내용: 선정업체들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안 및 공공조달 선정을 위한 핵심요인 반영 프로세스 도출, 보다 효과적인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제품의 선정 및 혁신조달 개선안 제시

II.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제품 추천사업 분석

1. 관련 사업 비교 분석
2. 사업의 유사성 및 차이점 분석
3. 혁신지향 공공조달 관련 사업 분석
4. 사업 개선 방향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가. 운영 배경 및 목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 적용받은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

- (운영 배경 및 추진 목적) 우수발명품을 인증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우선구매추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들의 이익 추구하고 권익보호

- (선정 시 혜택)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대상이 되며, 각종 인증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점수 및 가점점수를 부여함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간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유효기간 내 연 1회 추천(1년차 : 최대 20개 공공기관 추천*, 2~3년차(희망시))

*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시 일부 가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 * (기업) 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납품실적 5억 이하의 첫걸음기업
 - * (제품)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 전년도 직수출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

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
(부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나. 선정 기준 및 절차

- (신청자격)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기업
 - * 중견기업 : 디지털 그린 뉴딜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당해 연도 1사 1제품만 선정 될 수 있으며,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 규격추가 제품일 경우 특허 존속기간이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유효기간 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함
 - ※ 규격추가는 확인서 최초 유효기간 내에서 1회만 신청가능하며 탈락된 제품은 재신청 불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IP제품혁신(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수혜 기업이 지원제품을 대상으로 우선구매추천사업을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면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3개년(2019~2021)내 수혜기업
- 최종평가(우수, 적정, 보완) 결과 '적정' 이상 기업
- 다음 각 항목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수상, 정부지원, 신청인 자격, 주요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항목

① 수상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1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1점), 특허기술상 시상식 수상(2점)
② 정부지원(1점)		특허기술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기술금융 연계 지원을 받은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되어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시계약(통상실시, 전용실시)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지원한 경우(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기준)
③ 신청인 자격(1점)		창업기업(창업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 기업 인증, 국가유공자가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주요 기술 및 성능· 품질 인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3점)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GS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기타 (1점)	녹색기술,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우수 재활용 인증(GR),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GMP 인증, K마크, KS마크, KC마크 Q마크, 「건」 마크

○ **(신청제의 대상)**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우선 구매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①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 ②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신청제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해당 권리가 무효, 취소 또는 소멸되었거나,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⑤ 신청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재고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⑦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또는 약사법, 주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인삼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인 경우

- ⑧ 우수발명품 표시위반·BI사용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 ⑨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제품인 경우(신규지정 : 2회 이상 부적격 처리된 경우, 규격 추가 : 1회 이상 부적격 처리된 경우) 재신청 할 수 없음
- ⑩ 우선구매추천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중 규격추가를 신청한 경우
- ⑪ 기타 진흥회 회장이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 기준)** 신청제품의 선정은 신규지정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제품과 규격추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제품 선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신규지정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제품 선정

- ①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②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 ③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④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 규격추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제품 선정

- ①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등 등록 여부 확인
- ② 제품의 특허기술 적용여부 판단
- ③ 기 지정된 제품과의 핵심기술(기능·성능)동일 여부 판단
- ④ 제품의 시험성적서 및 관련 인증서 검토 판단
- ⑤ 제품 생산 및 공급 능력 서류 검토 판단

※ 제품 규격추가 평가심사는 신규지정 당시 서류와 제품의 동일성, 규격추가, 제품의 동일 기술 적용여부, 관련 권리, 사실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평가 방법)** 선정여부의 판단절차는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과의 상세 면담 및 견본제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판단함

-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지정 및 규격추가 서면심사 위원회를 동일 구성하여 함께 개최할 수 있음

- ① 신규지정 서면심사 위원회는 서면심사 기준표에 의거, 서면심사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 발표심사 대상 업체를 선정
- ② 서면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 요청일 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업과의 상세 면담 및 제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신규지정 및 규격추가에 대한 발표심사 위원회를 동일 구성하여 함께 개최할 수 있음

- ① 신규지정의 발표심사 위원회는 발표심사 기준표에 의거,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총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제품을 “적격”으로 평가
 - ※ 단,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라도 각 세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량(0점)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함
- ② 규격추가의 발표심사 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규격추가에 찬성하는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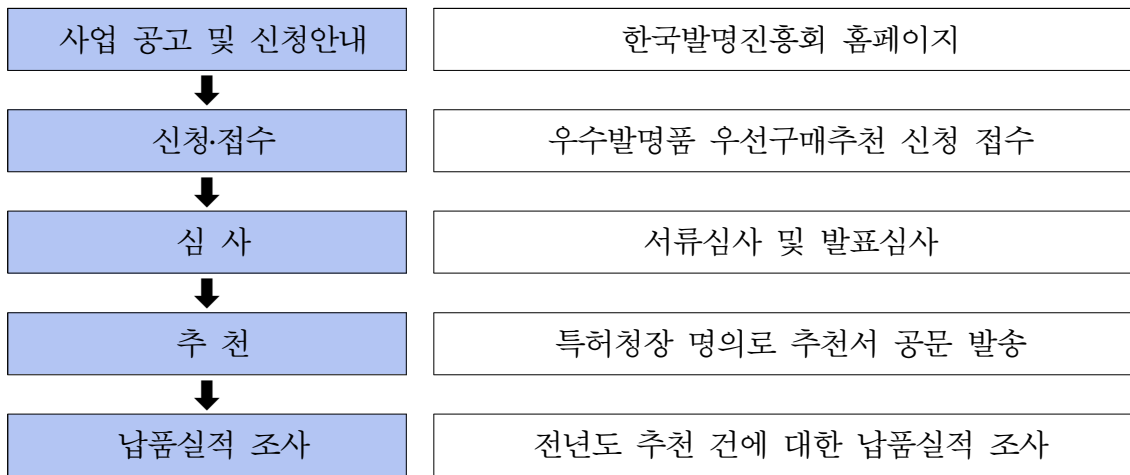
- **(추진 절차)**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우선구매 추천을 의뢰하고,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해당제품의 우선구매를 추천함

<그림 2-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추진 체계도



- 신청인이 우수추천 구매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 심사 후 선정된 신청인을 특허청에 추천의뢰
- 추천의뢰를 받은 특허청은 신청인을 수요기관에 추천하면 수요기관은 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

<그림 2-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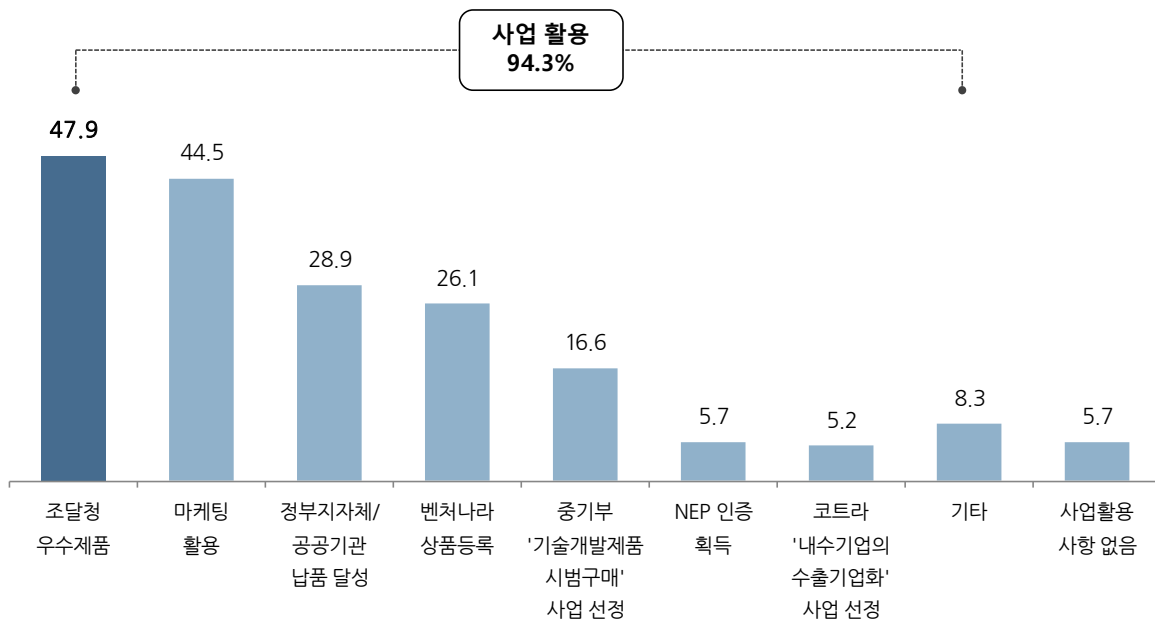
- 이의신청 처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함
 - ①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③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수혜기업이 지원제품을 대상으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을 신청할 경우 서면심사 면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음
 - ①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 이내의 수혜기업
 - ② 최종평가(우수, 적정, 보완) 결과 '적정' 이상 기업

다. 선정 현황 및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 본 사업에 대해서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속적인 선정 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2021년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수행한 우수발명품 우수구매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선정 현황 조사결과

- **(활용 현황)** 우수구매 추천사업의 사업 활용 현황은 94.3%이며, 세부 항목별로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획득'이 4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마케팅 활용'(44.5%),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납품달성'(28.9%) 등의 순이며, 미활용 경우도 5.7%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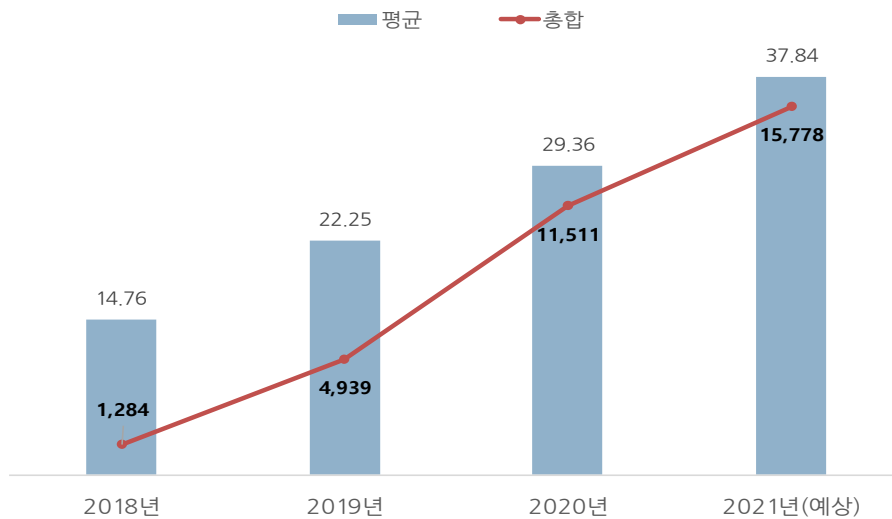


- 선정년도별 활용현황으로 '조달청 우수제품'은 2019년이 5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20년(47.1%), 2021년(45.8%), 2018년(40.0%)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마케팅 활용'은 2020년(47.1%), 2021년(45.8%)에서 높게 나타남
- 미활용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① 실효성 없음
 - ② 사용처 정보가 부족

- ③ 활용처가 마땅치 않음
- ④ 공공기관(관공서)에서 인증을 해주지 않음
- ⑤ 조달청 우선구매가 아니라 입찰 시에는 활용이 어려움
- ⑥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지 않음
- ⑦ 혜택을 주는 사업(가점이나 우대)이 많지 않음
- ⑧ 제도 및 신청내용, 신청 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함

○ **(납품업체 실적)** 총 납품업체수는 2021년 15,778개, 2020년 11,511개, 2019년 4,939개, 2018년 1,284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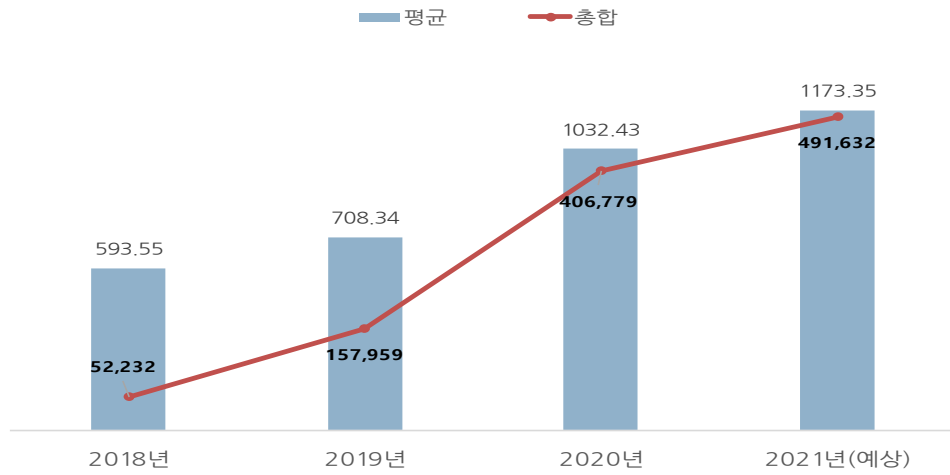
(단위: 개)



- 선정년도별 2021년(예상) 총 납품업체수는 2020년이 7,912개, 2019년이 3,715개, 2018년이 3,771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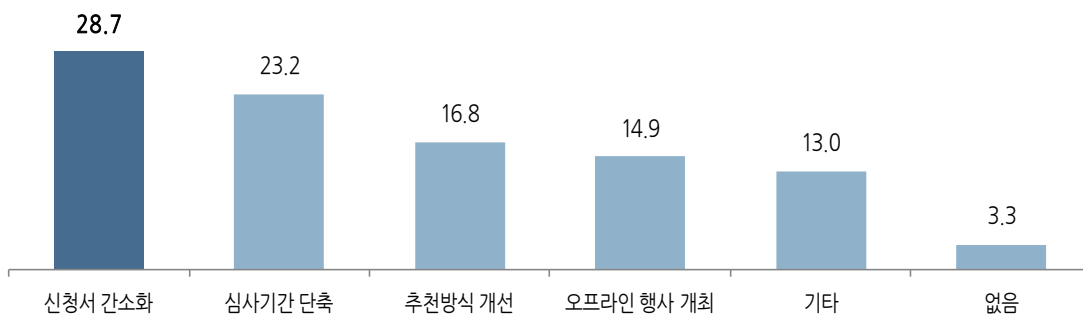
○ **(납품금액 실적)** 총 납품금액은 2021년 491,632백만원, 2020년 406,779백만원, 2019년 157,959백만원, 2018년 52,232백만원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 (개선사항) 우선구매 추천사업 개선사항으로는 '신청서 간소화'가 28.7%로 가장 높으며 '심사기간 단축'(23.2%), '추천방식 개선'(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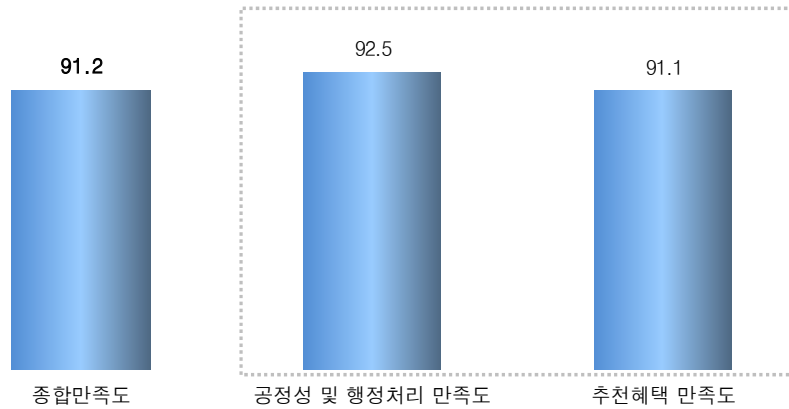
(단위: %)



2) 만족도 조사결과

- (종합만족도) 우선구매 추천사업 종합만족도는 91.2점이며, 항목별로는 공정성 및 행정 처리 만족도가 92.5점으로 추천혜택 만족도(91.1점) 보다 1.4점 높게 나타남

(Base : 2020, 2021년 선정기업, N=277, 단위 : 점)



- 선정 년도별 종합만족도는 2019년 96.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21년 94.4점, 2020년 90.4점, 2018년 89.3점의 순으로 나타남
- 창립 년도별 종합만족도는 2000~2009년이 94.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0년 이전 91.0점, 2010년 이후 89.5점 순으로 나타남

2.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가. 운영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기존 공공조달은 계약절차 투명성 중심으로 접근, 검증된 제품 위주 구매 관행 등으로 혁신적 제품기업의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함
- **(추진목적)** 혁신적 제품기업의 성장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 기반 우수 제품의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제고하기 위해 범부처가 추진 중인 혁신제품 지정사업 제도에 참여("20~)하도록 지원할 목적임
 - 우수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이 적용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청에 추천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혁신 공공조달 시장에 진

입시켜 판로를 지원해주고자 위함임

* 특허청은 1995년부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여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 기업의 적용 제품이 양산 판매되어야 함

<혁신제품 선정 기본요건>

1. (신청분야) 혁신성장 지원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신청분야)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기술개발단계) 기술개발단계가 7이상으로 수요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 기술개발 7단계는 현장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수준을 의미 (실험성적서 존재)

나. 선정 기준 및 절차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란 기재부 훈령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한 제품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①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②공공성과 ③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의미함

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의미함

②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③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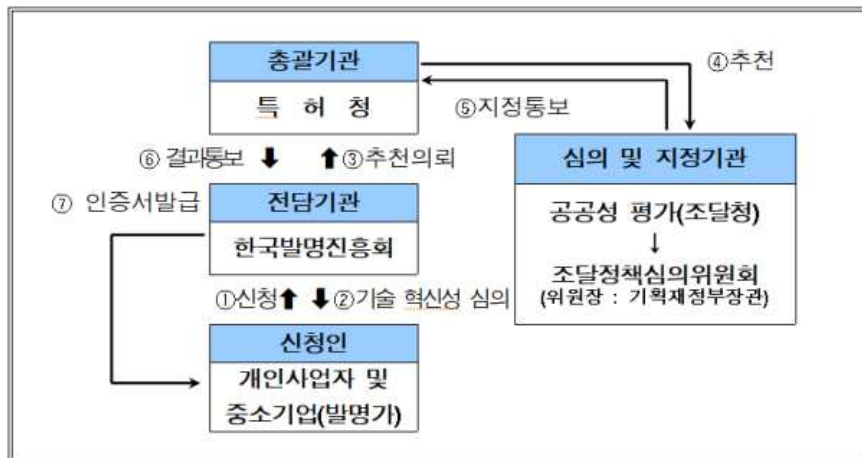
- (추진절차) 혁신적 제품의 신속한 조달 진입 지원을 위해 패스트트랙 I (R&D결과물) · II(상용화 전 혁신시제품) · III(각 부처 추천) 운영

<그림 2-3> 혁신제품 지정 대상 및 절차

구분	혁신제품 지정 대상	확정
① 패스트트랙 I	중앙부처 국가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각 부처 상정)	조달정책 심의위* · 공공 수요 발굴위** 의결 *
② 패스트트랙 II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조달청 상정)	
③ 패스트트랙 III	그밖에 기술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 기재부·조달청 평가·선정 및 위원회 상정)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NEP·NET 제품, Big3,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연계 제품 (12개 부처 추천제품)	

*조달사업법에 따른 공공조달 컨트롤타워(경제부총리), **조달심 산하 위원회(기재부 2차 관 주재)

<그림 2-4>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추진절차도



- **(추진체계)** 우수특허 제품의 혁신성 심사를 하여, 심사위원 평균 75점 이상인 제품을 기재부·조달청에 추천
 - * 심사기준 : 제품의 기술 혁신성(40)점, 시장성(20)점, 품질보증·공급능력(40)점
- **(추진실적)** 혁신제품 지정 트랙 중 패스트트랙Ⅲ를 통해 우수특허기반 제품을 발굴·사전심의를 거쳐 기재부·조달청에 추천 → 78개 혁신제품 지정
 - * (실적) '20년→59건추천(30개지정), '21년→99건추천(48개지정)
- **(지정기간 및 혜택)** 혁신제품 지정기간 (3년) 동안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적용한 구매 지원 가능

(구매목표비율 제도)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서 구매비율 이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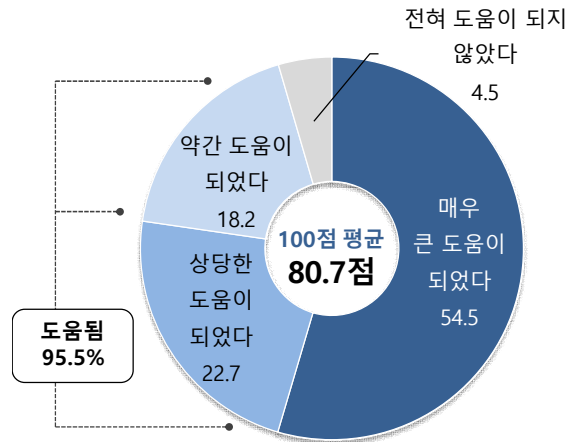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법)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법)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법)	창업기업제품 (창업지원법)
구매총액 50%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물품구매총액 5%	구매총액 1%	구매총액 8%

다. 선정 현황 및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1) 혁신제품 지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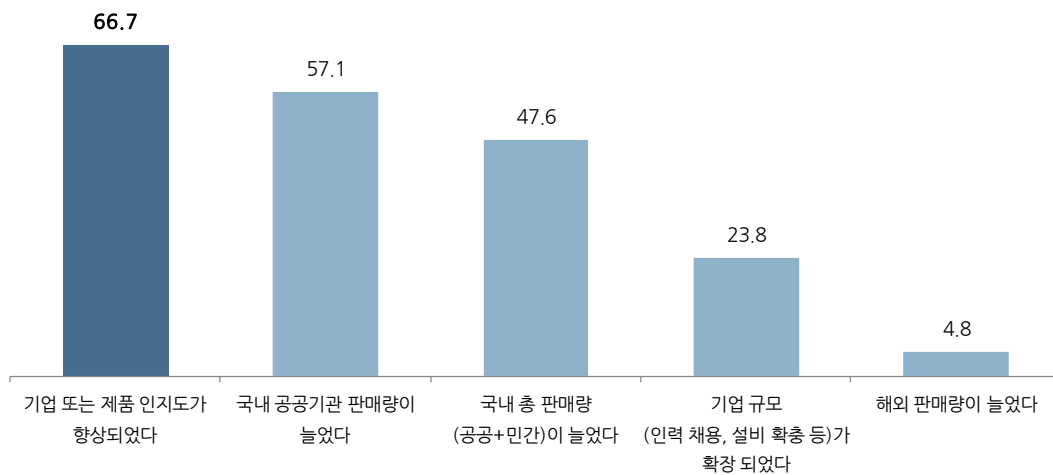
- **(수익성 및 성장성)** 수익성 및 성장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가 95.5%(매우 큰 도움: 54.5% + 상당한 도움: 22.7% + 약간 도움: 18.2%)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4.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80.7점임
 -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의 이유로는 '담당자 분리발주 의지 전혀 없음', '강제사항이 아니라 구매하기 싫어함', '책임회피가 심함' 의견이 있었음
 - 매출액별로 10억 미만이 91.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억 이상(75.0점), 10억~50억 미만(72.2점)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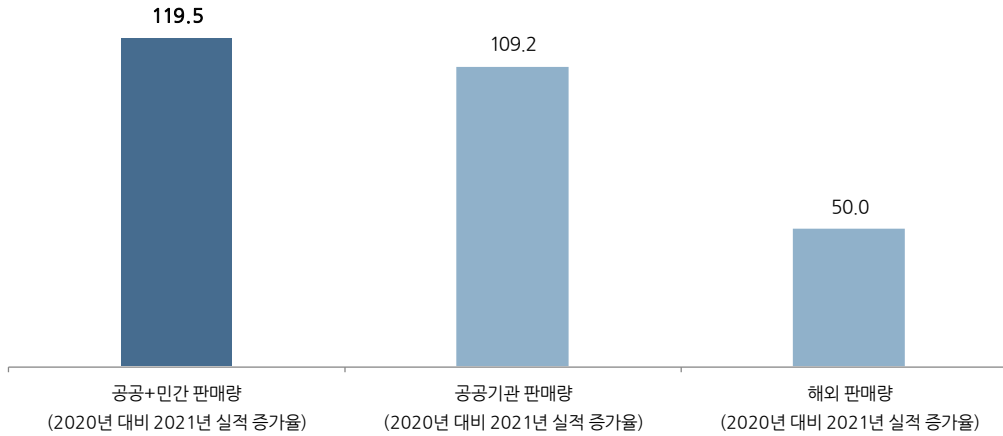
- **(도움분야)** 도움이 된 분야로는 '기업 또는 제품 인지도가 향상되었다'가 6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 공공기관 판매량이 늘었다(57.1%), '국내 총 판매량이 늘었다'(4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별 도움이 된 분야로는 '기업 또는 제품 인지도가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50억 이상에서 10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억 미만(66.7%), 10억~50억 미만(50.0%)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10억~50억 미만에서는 '국내 공공기관 판매량이 늘었다'는 의견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실적증가율)** 2020년 대비 2021년 실적 증가율은 '공공+민간 판매량' (119.5%) 증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기관 판매량' (109.2%), '해외 판매량' (50.0%)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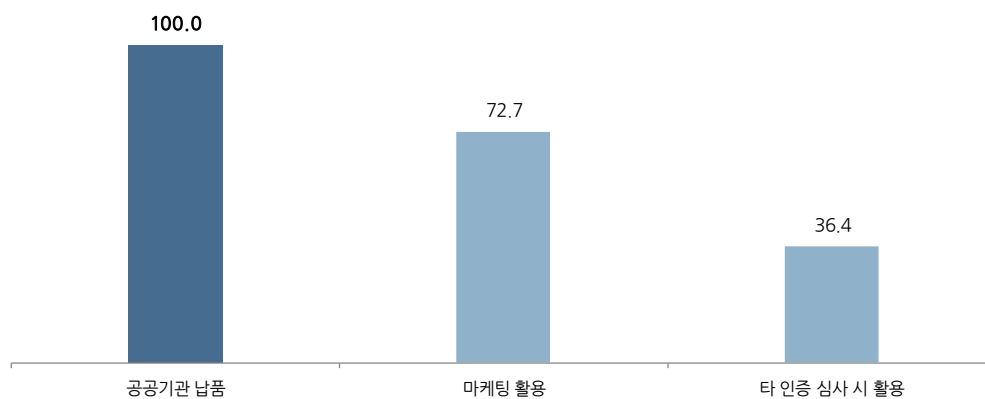


- 매출액별 '공공+민간 판매량'은 10억 미만이 277.5%로 가장 높고, 10억~50억 미만 (16.3%), 50억 이상(10.0%)의 순으로 나타남.

□ 만족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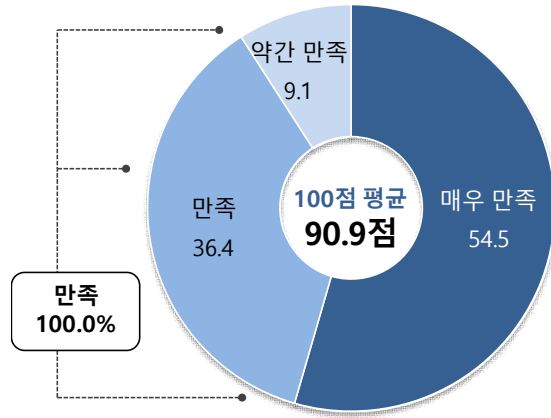
- (지원이유) 혁신제품 지정 사업에 지원하는 이유로는 '공공기관 납품'이 10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마케팅 활용'(72.7%), '타 인증 심사 시 활용'(36.4%)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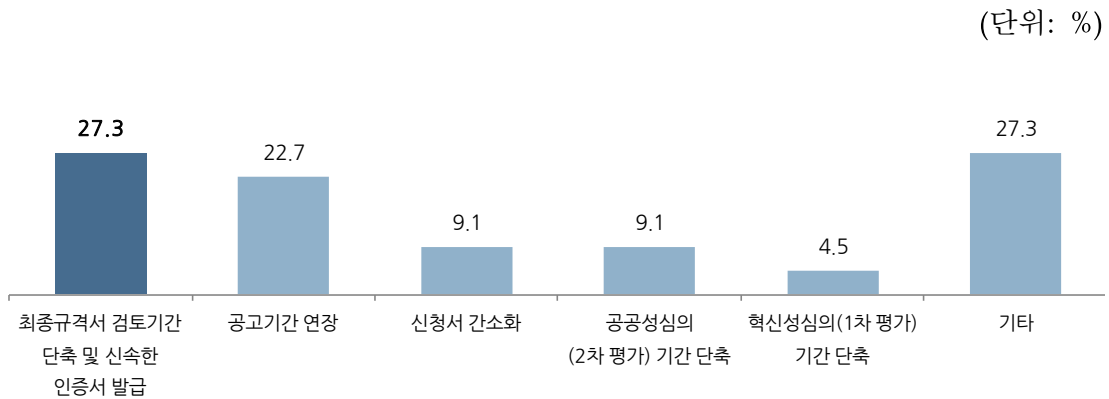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지원 이유로 '공공기관 납품'의견이 100.0%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마케팅 활용'은 매출액별로 10억 미만이 8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억 이상(75.0%), 10억~50억 미만(55.6%)의 순으로 나타남

- **(만족도)** 기술혁신성심의 행정처리 등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 100.0%(매우 만족: 54.5% + 만족: 36.4% + 약간 만족: 9.1%)로 나타남



- **(개선사항)**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최종규격서 검토기간 단축 및 신속한 인증서 발급'이 2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고기간 연장'(22.7%), '신청서 간소화'·'공공성심의(2차 평가) 기간 단축'(각각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별 개선할 사항으로 '최종규격서 검토기간 단축 및 신속한 인증서 발급'은 50억 이상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억 미만(33.3%), 10억~50억 미만 (11.1%)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는 '공공기관 매출 판로 확대', '구매 예산 확충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적극 참여', '관련 규정 및 제도 정착을 위한 필요 제반사항 준비 및 시행' 의견이 있었음

3. 두 사업 종합 비교

<표 2-1>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비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목적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우수발명품의 공공시장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 하도록 추천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유효기간 3년) ②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확인서 발급 ③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시 일부 가점, NEP 인증 심사시 신기술성 증명자료 활용, 조달청 벤처나라 후보 추천,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지정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 ○ (우수특허제품 지정시) 없음 ○ (혁신제품 지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의계약 가능 -② 구매자 구매면책제 -③ 공공 혁신구매목표제로 구매 촉진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성평가 → 우수특허제품 선정 → 기재부 추천 - 기술혁신성평가(서류심사) 후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기재부·조달청에 추천 - 기재부에서 공공성심의 후 조달심(공수위) 상정/지정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3사분기(연 2회) * 기존 연4회였으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도입 이후 연2회로 조정('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3사분기(연 2회)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전용 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분류별 6개 분과, 분과별 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분류별 6개 이내 분과 분과별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내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심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은 서류심사/발표심사 순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3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고도성(10/5) - 차별성(10/5) - 제품 품질의 우수성(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성 평가 항목 ○ 혁신성(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신규성(15) - 탁월성(15) - 기술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효과성(3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경쟁력(10/5) - 대체 우위성(10/5) - 제품의 시장성(10/10) ○ 품질 보증 및 물품공급능력(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보증능력(10/20) - 생산 및 공급능력(10/10) ○ 추천의 적합성(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적합성(10/20) -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10) - 기대 시장규모, 타산업 파급성(10) ○ 품질보증·공급능력 및 공공구매 필요성(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능력(10) - 생산·공급능력(10)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10) - 공공구매 필요성(10) <p>* 공공성심의회는 공공의 문제해결(35), 사회적 편익(35), 혁신구매필요성(30)으로 전문가 그룹평가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p>
<p>후속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코트라 내 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추천 등 후속연계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장터 등록 등

1. 운영 취지와 목적의 측면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 적용받은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특허기반 우수제품의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제고하기 위해 범부처가 추진 중인 혁신제품 지정사업 제도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 **(유사성)** 두 사업 모두 기존 공공조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목적은 유사함
 - 두 사업 모두 공공기관 납품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기업들은 공공기관의 납품을 통한 마케팅 활용 그리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음
 - 두 사업 모두 추천을 받게 되면 공공조달 제품으로 추천될 수 있으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에 바로 참여할수 있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목적	우수발명품에 대한 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특허 기반 우수 제품의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 범부처가 추진 중인 혁신제품 지정사업 제도에 참여('20~) 하도록 지원
신청기업 수요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획득 마케팅 활용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관 납품 마케팅 활용 타 인증 심사 시 활용

- **(차이점)** 기존 공공조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유사하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의 경우 범부처가 추진 중인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함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추천하는 것인 반면에,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사업**은 범부처가 추진 중인 혁신제품 지정사업 제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허청에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임**

2.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측면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은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서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우선구매 추천을 의뢰하고,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해당제품의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위한 선정 기준은 기술성, 구매효과성, 품질보증, 적합성 등을 기준을 선정함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 반면, **혁신제품 지정 사업**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 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을 지정하여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
 - * 혁신성인증제품 : NEP(산업부), NET(각 운영부처),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

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재난안전제품인증(행안부)

** 혁신정책연계형 : BIG3(관계부처), 탄소중립(환경부), 스마트챌린지(국토부), 도전.한국(행안부), 리빙랩(행안부, 국토부)

- 혁신제품 지정 사업에 선정된 제품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혁신제품 구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구매책임자 면책**이 되기에 혁신제품 구매 유인책이 되어 판로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
- 혁신제품 선정 심의기준은 기본적으로 제품 활용 분야가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여야 함

신청 분야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또한, 기술개발단계가 7이상으로 수요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직접생산 또는 협업생산을 통해 제조생산이 가능해야 함

단계	내용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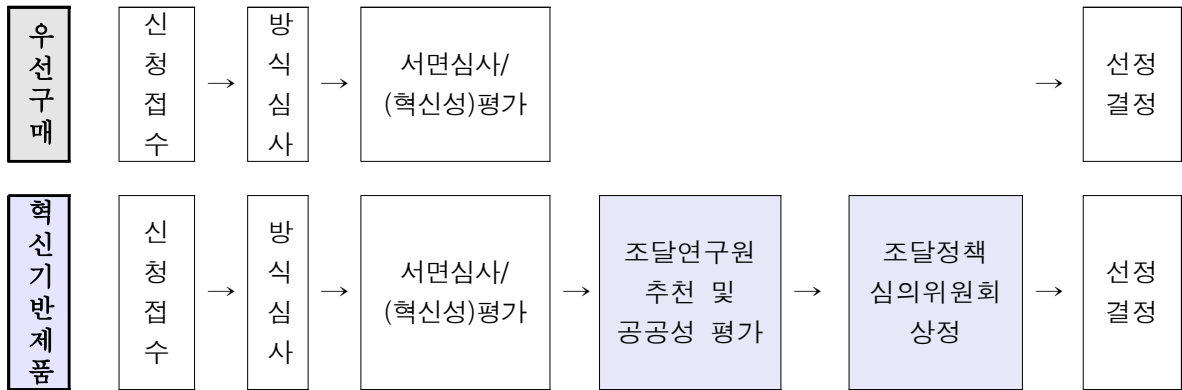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항목은 혁신성, 시장성, 품질보증·공급능력 및 공공구매 필요성 등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선정기준과 유사함**

· 기술 혁신성 심의 평가항목

구분	내용
혁신성	특허 등 제품의 신규성, 특허 등 제품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시장성	경쟁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 기대 시장규모, 타 산업 파급성
품질보증·공급능력 및 공공구매 필요성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공공구매 필요성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모두 사업선정을 위해 **혁신성과 시장성, 품질보증·공급능력과 공공구매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유사함**
- 하지만, 혁신제품 지정사업의 경우 제품 신뢰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혁신제품 구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구매책임자 면책이** 되기에 도전적인 구매활용이 가능하지만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한 부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과 혁신제품 지정 사업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혁신제품 지정사업의 경우**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또는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
 - 따라서, 조달연구원 추천 및 공공성 평가와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인정을 받는 과정이 필요함
 - **혁신제품 지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납품뿐만 아니라 범부처 추진 중인 혁신제품 지정사업 제도에 참여시킴으로서 혁신성장 지원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질도 제고하기 위해 **공공성 평가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함**

<그림 2-5>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사업 절차상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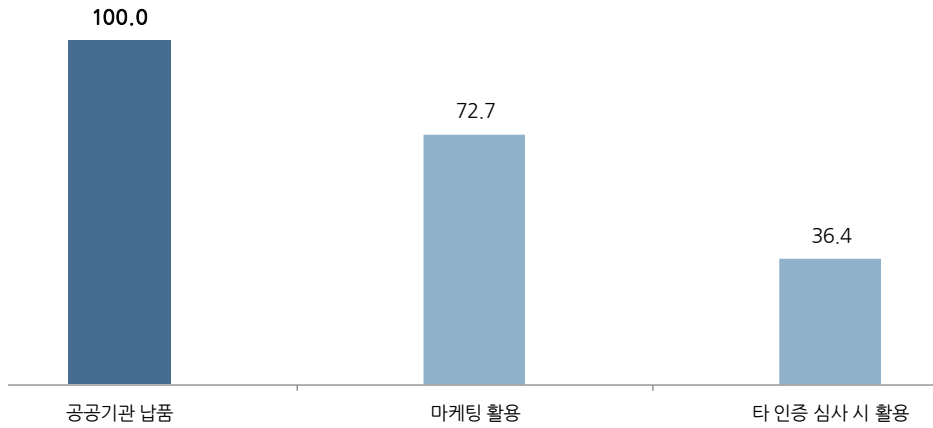


3. 선정 혜택 및 참여기업 수요 측면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 의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선정업체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서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 * 혁신제품 지정기간 : 조달정책심의위원회(혹은 산하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고시한날로부터 3년
 -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구매자의 책임이 면제되기에 공공납품을 통해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공공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기관별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 목표액이 부여되어 공공납품을 통해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사업 신청기업들은 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통해 빠르게 상용화하고 공공납품을 통해 획득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마케팅 활용을 통해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청기업들의 수요조사 결과 기업들의 참여이유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납품, 마케팅 활용, 타 인증 심사 시 활용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6>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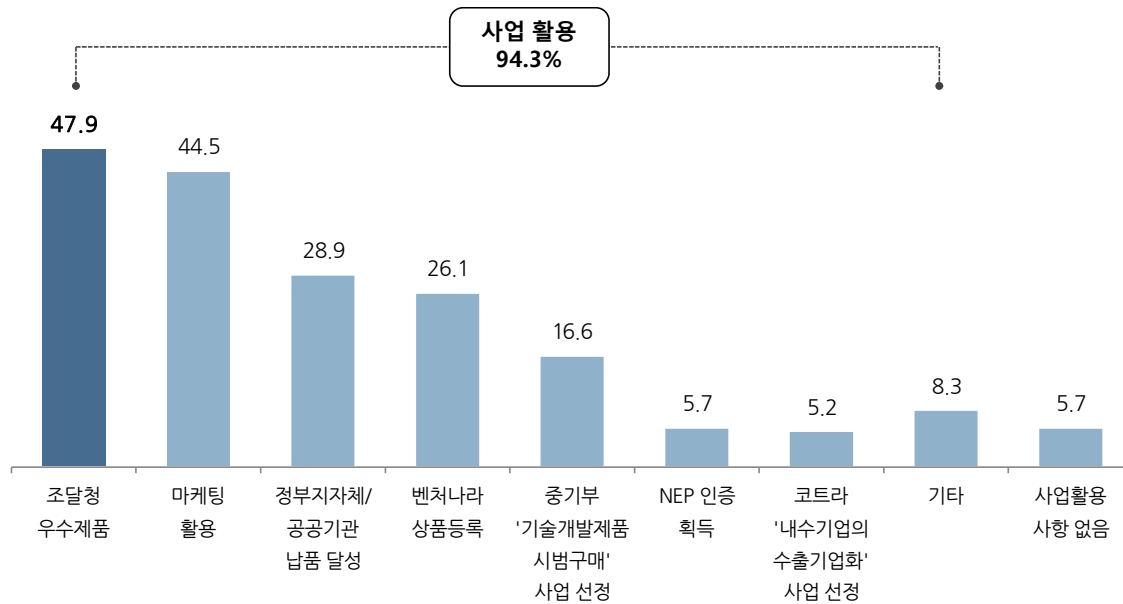


자료: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2021년)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우선구매 추천을 의뢰하고,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것으로** 참여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될 수 있도록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다음과 같은 가산점 부과 및 우대조건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시 일부 가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되며, 기술성 및 품질성 평가 면제
 - ※ 단,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희망기업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을 활용하는 세부항목별 살펴보면 ①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획득(47.9%), ②마케팅 활용(44.5%), ③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납품달성(28.9%) 등

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활용 내용



자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2021년)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사업 신청기업들의 주요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신청하는 것은 동일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기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획득 • 마케팅 활용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납품 • 마케팅 활용 • 타 인증 심사 시 활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두 사업 모두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또는 신제품 개발제품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는 동일함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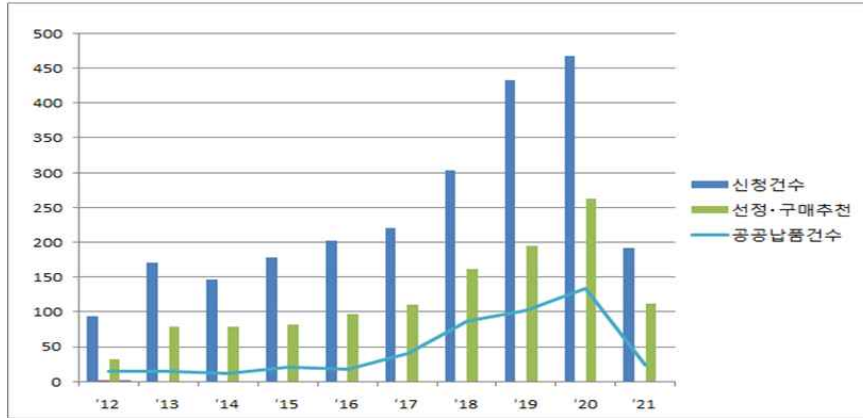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경우 우수발명품 추천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에 비해 신제품 일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들의 관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차이점임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선구매 추천사업 지원이유로 △조달청 우수제품 가점획득(69.2%), △공공기관 구매 추천(55.1%), △마케팅 활용(4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천의 경우 공공기관 납품을 주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신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활용 근거로 삼아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혁신제품 추천사업 지원이유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납품(100%), 마케팅 활용(72.7%), 타 인증 심사 시 활용(36.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사업 성과 비교

- 우수발명품 우선추천제도는 그 시행기간이 오래 유지되어왔고 우수발명품의 공공조달을 촉진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옴
- 지속적으로 신청건수와 선정 및 구매추천 건수가 증가하여왔으며, 21년 기준 467건 신청, 선정 및 구매추천 263건을 기록하였고 공공납품 건수는 134건, 44,428백만원을 기록했음

<그림 2-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선정 및 공공납품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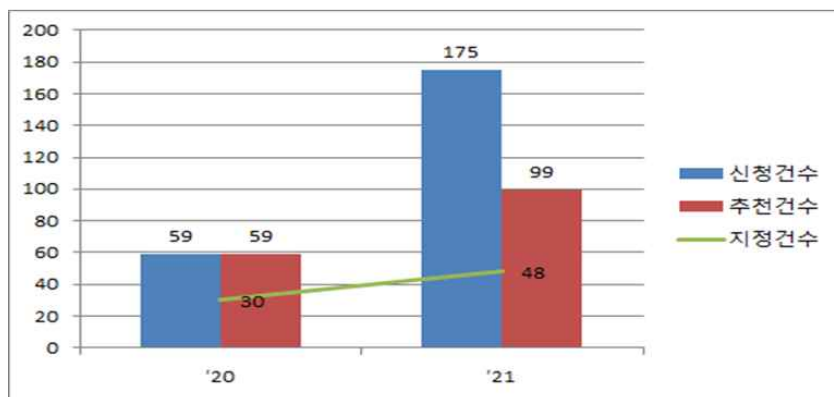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신청건수	93	171	147	178	202	220	303	433	467	191
선정·구매추천	32	78	78	82	97	110	161	195	263	112
공공납품건수	14	14	12	20	18	40	87	102	134	24
공공납품금액	6,470	7,264	9,234	11,872	10,198	22,105	45,450	48,485	44,428	9,124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천사업은 공공조달의 패스트트랙 III가 신설되면서 특허청의 우수특허기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규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한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 20년 59건의 신청건수에서 21년 175건으로 크게 상승했음

<그림 2-9>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천 및 지정 성과

	'20	'21
신청건수	59	175
추천건수	59	99
지정건수	30	48



- 이 중 추천건수는 99건, 조달청 심사를 통한 지정건수는 48건으로 약 50%의 지정률을 나타냈음.

- 다만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천사업은 시행 기간이 만 2년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성과와 신청건수와 선정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두 사업의 기업 활용측면이나 심사 프로세스 등이 유사하여 기존의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추천제도에 대한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21년 우수발명품 사업의 신청 건수가 감소했음
- 따라서 두 사업간 차별화 전략이나 통합 전략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1. 기술개발제품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 주요 부처들은 R&D와 기술개발제품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조달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음

연번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수익계약	우선구매	
1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	○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	○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	○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5	NET 기술 인증 적용 제품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	○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환경부	○	○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	○
		방재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행정안전부	○	○
		목재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8조	산림청		○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	농촌진흥청		○
		교통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국토교통부		○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보건복지부		○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해양수산부		○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조달청	○	○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①구매조건부 신기술 개발제품(공공부문) · ②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③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	○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행정안전부	○	○	
9	혁신 제품	우수연구개발(FT1)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기획재정부	○	○
		혁신신제품(FT2)	“		○	○
		기타혁신제품(FT3)	“		○	○
10	녹색기술제품	녹색성장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		○	
11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		○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		○	
13	물산업우수제품	물산업진흥법 제10조	환경부		○	
1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조달청			
15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16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 1번~13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가. 부처별 공공조달 추천사업 개요

- 1996년부터 실시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총 9종의 인증제도(NET, NEP, 성능인증, GS,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우수조달물품, 녹색 인증대상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R&D사업)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2014년에는 4종의 인증을 추가하였으며, 그 이후 인증들이 추가되어 현재 19개 인증을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제도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신제품인증(NEP)에 대한 공공구매제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 중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금액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주요 구매기관이 됨
 - 특히, 공공기관의 구매 시 공공구매 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제품구매와 관련된 전년도의 구매실적과 당해연도의 구매계획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NEP인증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별도의 품질소명이 요구되지 않으며, 정부 기술개발사업 선정 등에 가점요소로 작용함
-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NET) 인증제도
 - 기업의 개발기술 상용화 및 산업기술혁신 견인을 위해 1993년 신기술인증(NET)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 신기술 인증제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부처의 관련법에 의거하여 인증한 기술이 대상이며, 신청 및 접수 역시 소관 부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진행함
- 7개 부처·청에서 운영 중인 9개 신기술인증 마크가 통합되어, 현재의 신기술 통합인증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인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조달청)

- 본 제도는 성능,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이용한 우선구매를 통해 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제 구매물품의 수요자가 아닌 조달청이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주도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기업의 기술혁신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행조치가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님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일정 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납품예정 중소기업에 정부가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2002년 국방부의 방산물자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된 동 사업은 이후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해외바이어, 중소기업 등으로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개발구매’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조치로서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원과제 선정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성능인증제도(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성능인증제도의 신청은 관련 산업의 인증 및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완성된 제품 등 현재 21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 신청한 후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됨
- 성능인증제품의 심사 시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Good Software)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표 2-2> 기술개발제품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제도 비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혁신시제품 지정 구매사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주무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우선구매대상 인증 (19종)을 획득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발주기관과의 경쟁 적 기술대화를 통 해 최종 선정된 기 술개발 기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또는 혁신성 장 지원분야의 상 용화 전 혁신제품 (서비스 포함)	정부의 R&D 자금 을 지원받아 기간 내 개발 완료한 중 소기업 제품
지원 내용	공공기관이 물품구 매할 때 물품구매 액의 15%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개발 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혁신 수요를 바탕으로 요구 품 목 설정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상 용화되기 전의 제 품을 테스트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 지원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공공조달 연 계를 위한 피칭대 이 개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등 록 지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효과적인 민간부문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제도 개선 방
안

나. 부처별 공공조달 추천사업 프로세스의 시사점

○ 각 부처에서는 그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공조달 추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추천에

있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연계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 중소벤처부의 성능인증, 산업통상자원부의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적용제품),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인증 등이 이러한 사업들에 포함됨
 - 이 사업들 중 많은 사업들이 부처의 인증을 통한 품목 추천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달청의 공공성 평가와 품목 지정 프로세스에서 평가의 우위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음
- 주요 타 기관의 사업들의 강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 프로세스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의 비율을 이 제품들에 대해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구매촉진이 진행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이 진행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의 경우 공공혁신 수요를 바탕으로 요구 품목을 설정하고 발주기관과의 경쟁적 기술대화를 통해 적합한 역량을 가진 기술개발 기관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효과적인 공공수요 제품 개발과 직접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경우 지정후 3년 동안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피칭데이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구매촉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추진체계의 시사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제품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최근 조달시장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처별로 다수의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 2019~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들은 주로 제품의 기술

개발 및 실증(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또는 상용화(혁신시제품 지정·구매사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과정에 한정,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함

- 다만, 부처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사업들이 비교적 최근에 시행됨에 따라 차별화 부분과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경우, 시행령 내 수의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반면 1996년부터 운영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으나, 이미 개발된 제품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인증 획득 여부에 따라 직접 공공수요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 2019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업무협약을 체결,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인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시작함

○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R&D 실증과 공공조달 간의 연계 등 사업화 과정 지원을 통한 신산업분야 육성 목표

○ 우선적으로 파악한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기반 마련

- 사회문제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 공공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의 혁신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품목을 설정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공모 방식을 활용

<그림 2-10>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추진체계



자료: 산업부(2020), 「2020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R&D)사업 시행계획 공고」

<표 2-3> 경쟁적 기술대화 지원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기관들을 선정하여 공공 수요기관과 요구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실증형 평가를 통해 단일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요구사항 조정 결과에 따라 RFP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에서 주관하여 일정 및 계획 수립 • 기본설계, 시제품 제작비 등 실증형 평가 참여 비용을 지원
지원예산	• 수행기관별 2천만원 이내(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제외한 직접비만 사용 가능)
지원기간	• 1개월 내외
공모방식	• 지정공모
기술료	• 과제 기획, 실증형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술료 비징수
특이사항	• 접수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산업부(2020), 「2020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이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공공 수요기관의 수요 니즈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기업들의 R&D 단계부터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접적인 공공구매로 효과적으로 이어지도록 함
- 또한 공공 수요기관들과 수행 기관들을 연계하고 그 R&D 과정에 있어 복수의 기관들과 경쟁적 기술대화를 통해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며 그 과정의 비용 등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화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2. 주요 인증제도 개요

가. 신제품(NEP) 인증제도

□ 개 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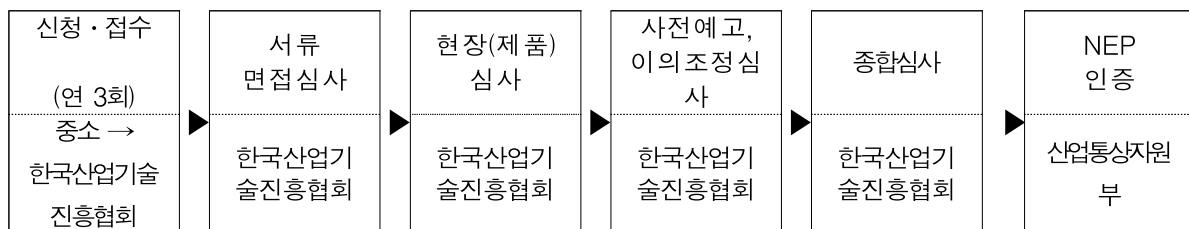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한함

** 6개 기술분야(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및 24개 인증평가위원회로 구성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5(신제품 인증의 절차)

□ 등록절차



□ 인증관련 사항

- (인증권자) 산업통상자원부
- (인증기간) 3년 (1회, 3년 연장 가능)
- (혜 택)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수의계약**** 등

* 해당 품목(물품분류번호) 구매액이 20%이상 NEP 제품으로 구매('16부터 시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라목

나. 신기술(NET) 인증제도

□ 개 요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로 구매 및 초기 시장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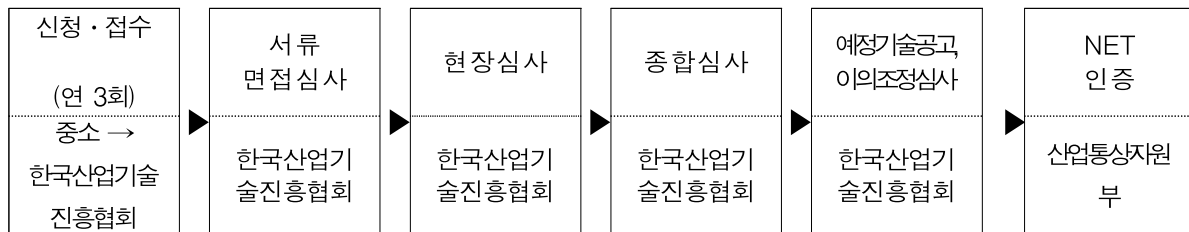
*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기술

** 신기술(NET, 11종): 산업신기술(산자부), 건설신기술(국토부), 교통신기술(국토부) 물류신기술(국토부, 해수부), 방재신기술(행안부), 환경신기술(환경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목재신기술(산림청), 농림식품 신기술(농림부), 해양수산신기술(해수부), 농기계 신기술(농림부)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신기술 인증)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

□ 등록절차



※ 산업신기술을 예시, 신기술 별 절차 다소 상이

□ 인증관련 사항

- (인증권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 (인증기간) 1~8년 (연장 1~7년)
- (혜 택) 수익계약*, 정부사업 가점 우대, 기술금융 지원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1항 3호 마목 / 산업, 건설, 방재, 환경 4종의 신기술에 한함

3. 관련 타 기관 제도의 시사점

○ 인증 품목 추천을 통한 공신력 제고 필요성

- 타 기관의 공공조달 사업의 경우 인증 후 인증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 또는 수요확보가 지정되거나 명확하여 선정시 공공구매로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인증을 통한 추천을 하는 NEP인증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별도의 품질소명이 요구되지 않으며, 정부 기술개발사업 선정 등에 가점요소로 작용함
- 이러한 인증의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NEP, NET 사업 등은 인증을 국가기술표준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

○ 실효적 프로세스 및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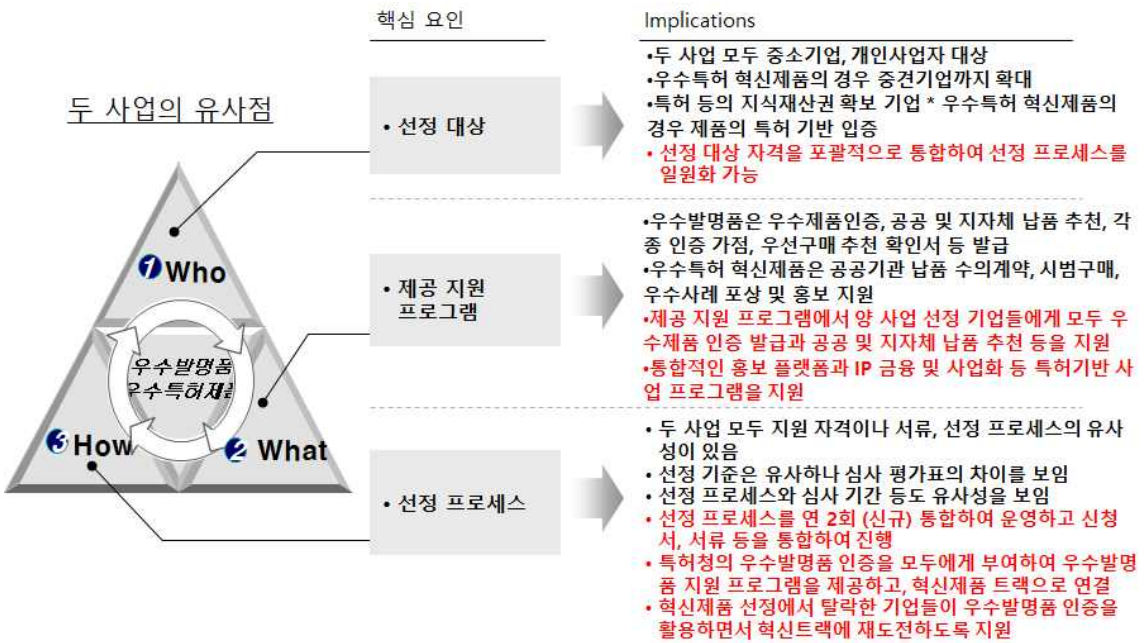
- 타 기관의 공공구매 촉진사업과 같이 선정된 품목에 대한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 비율 제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공공구매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소규모 기업들의 성장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업의 R&D와 제품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제품만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공공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품목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수요를 적극 연계한 기술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보다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합하고 직접적인 구매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정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행사와 홍보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공공구매 촉진 과정에 직접적인 후속 지원들을 실행함

4

사업 개선 방향

□ 두 사업의 선정 대상과 제공 지원 프로그램, 선정 프로세스 등을 분석할 때 대부분 공통적인 요인들이 많으나, 우수특허 혁신제품의 경우 특허청 차원의 후속 지원이 크게 없고 우수발명품의 경우 활용도는 다양하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림 2-11> 사업의 유사성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1. 선정 대상

- 두 사업 모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주요 신청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우수특허 혁신제품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개인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제도로 실행되고 있음
-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핵심 신청 요건으로 하고 우수특허 혁신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허 기반 입증요건을 보다 강화함
- 선정 대상 자격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선정 프로세스를 일원화 가능

2. 제공 지원 혜택

- 우수발명품은 우수제품인증, 공공 및 지자체 납품 추천, 각종 인증 가점,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등 발급 등을 지원 혜택으로 하고 있음
- 우수특허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납품 수의계약, 시범구매,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지원의 보다 직접적인 공공 구매가 이루어지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성 평가까지 최종 선정되어야 함
- ▶ 제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양 사업 선정 기업들에게 모두 우수제품 인증 발급과 공공 및 지자체 납품 추천 등을 지원
- ▶ 통합적인 홍보 플랫폼과 IP 금융 및 사업화 등 특허기반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

3. 선정 프로세스

- 두 사업 모두 지원 자격이나 서류, 선정 프로세스의 유사성이 있음
- 선정 기준은 유사하나 심사 평가표의 차이를 보임
- 선정 프로세스와 심사 기간 등도 유사성을 보임
- ▶ 신규 선정 프로세스를 연 2회 또는 3회 통합하여 운영하고 신청서, 서류 등을 통합하여 진행
- ▶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인증을 모두에게 부여하여 우수발명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혁신제품 트랙으로 연결
- ▶ 혁신제품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우수발명품 인증을 활용하면서 혁신트랙에 제도 전하도록 지원

Ⅲ. 사업 관련 심층 조사 분석

1. 선정 기업 대상 설문 조사
2. 선정 및 미선정 기업 대상 인터뷰
3. 혁신제품 추천 관련 인터뷰

1. 조사 개요

-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선정 프로세스, 활용 현황, 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업의 운영 및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함
- 설문 대상은 과거 3년(2020년, 2021년, 2022년) 동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서 선정되었던 기업 전체(총 404개 기업)이며,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임
-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04개의 기업 담당자의 이메일로 설문을 발송하고 102개 기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률 25.2%를 기록함 (<표 3-1> 참조)

<표 3-1> 설문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선정업체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기업 담당자 이메일)
조사 기간	2022년 11월 1일 ~ 11월 11일
표본 할당	2020년, 2021년, 2022년 선정기업 전수조사 (총 404개 기업)
유효 표본	102개 기업 (응답률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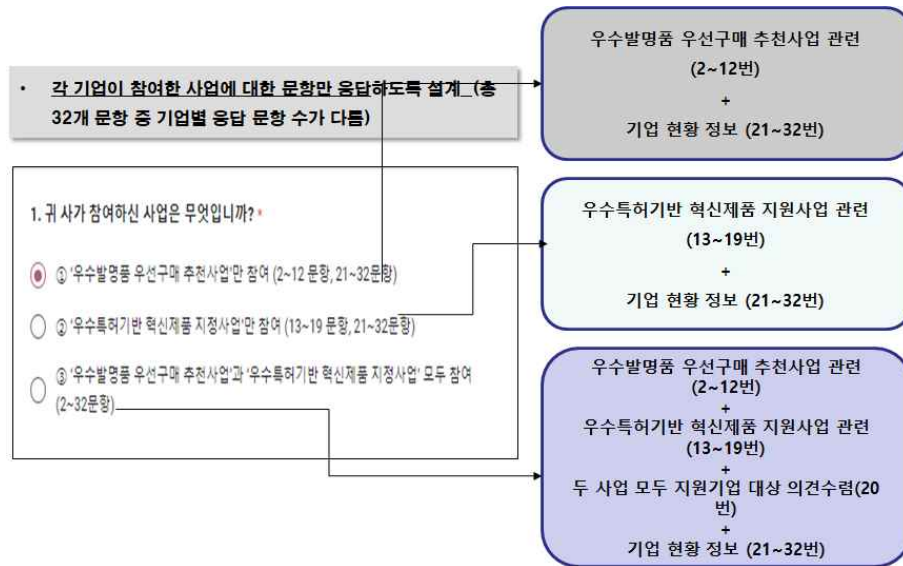
2. 조사 설계 및 응답 분포

- 설문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사업에 대해 각 사업의 사업 참여 동기,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 사업 선정 후 변화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표 3-2> 참조)
- 전체 설문 문항은 3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 참여 동기,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사업 선정 후 변화에 대한 문항과 함께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일반현황과 특허 보유 현황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함 (부록 참조)

<표 3-2> 설문 조사 주요 항목

구 분	내 용
사업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목적 • 사업을 알게 된 경로
제도 개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세스 개선 의견 • 신청 및 선정절차 개선 의견 • 선정 기준 관련 개선 의견 • 판로개척 지원책 관련 개선 의견 • 홍보 및 사업 지원 관련 개선 의견
사업선정 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 변화 •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원 계획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속한 관련 산업 • 선정 제품 관련 분야 • 수출/내수 시장 분포 • 주요 고객(B2G, B2C, B2B) • 기업 위치 • 설립 년도 • 연간 총 매출액 규모 •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특허 보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보유 건수 • 디자인권 보유 건수 • 실용신안권 보유 건수 • 상표권 보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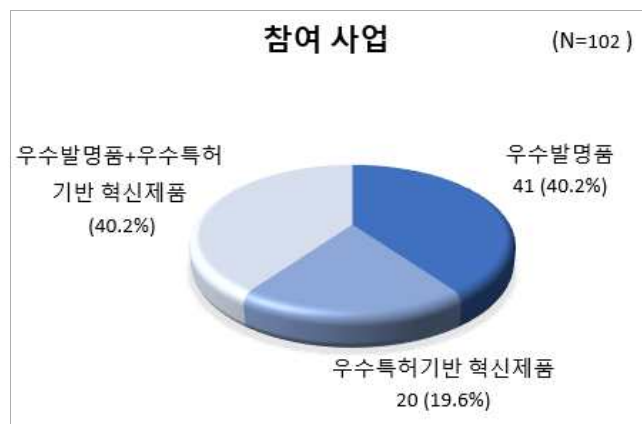
- 설문지는 32문항에 대해 각 기업이 참여한 사업에 대한 문항을 응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사업 참여자별 응답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회수된 유효표본 102개를 각 기업이 참여했던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에만 참여한 기업이 41개(40.2%),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만 참여한 기업이 20개(19.6%), 두 사업 모두 참여한 기업이 41개(40.2%)인 것으로 집계됨 (<그림 3-1> 참조)

- 이를 다시 사업별 응답 문항 수로 구분하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관련 문항 응답이 총 82개(41+41)이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관련 문항 응답은 총 61개(20+41)가 됨

<그림 3-1> 응답 기업이 참여했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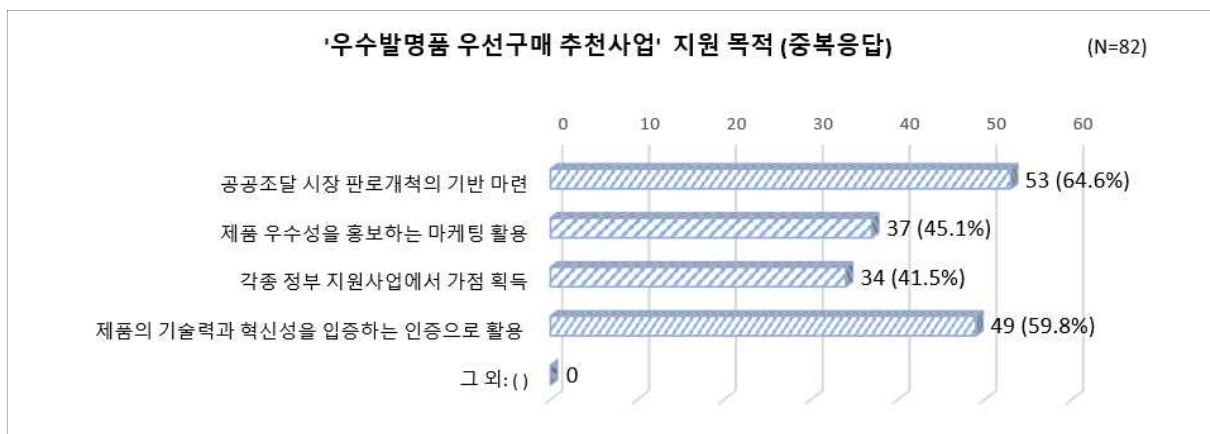


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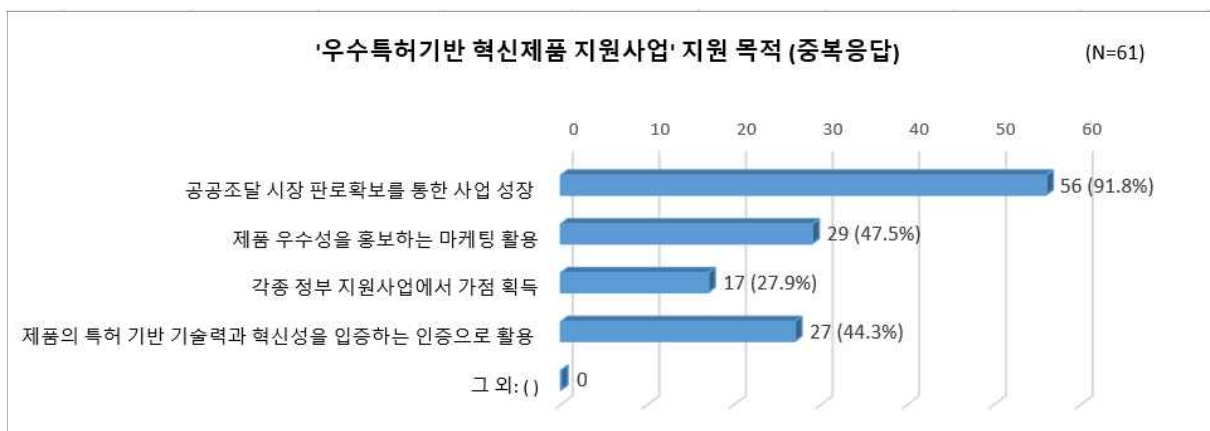
가. 사업 지원 목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경우, 사업 지원 목적에 대해 '공공조달 시장 판로개척의 기반 마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4.6%), '제품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인증으로 활용'을 위해서도 59.8%로 높은 응답을 기록함 (<그림 3-2> 참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의 지원 목적도 '공공조달 시장 판로 확보를 통한 사업성장'이 91.8%로 나타났으며,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용'이라는 응답과 '제품의 특허 기반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인증으로 활용'도 각각 47.5%와 44.3%로 나타남 (<그림 3-3> 참조)

<그림 3-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지원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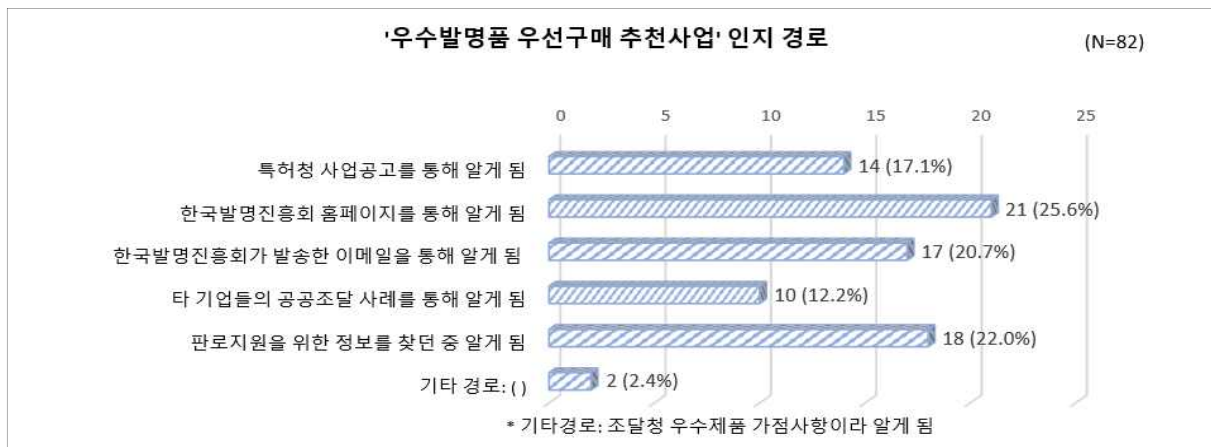
<그림 3-3>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의 지원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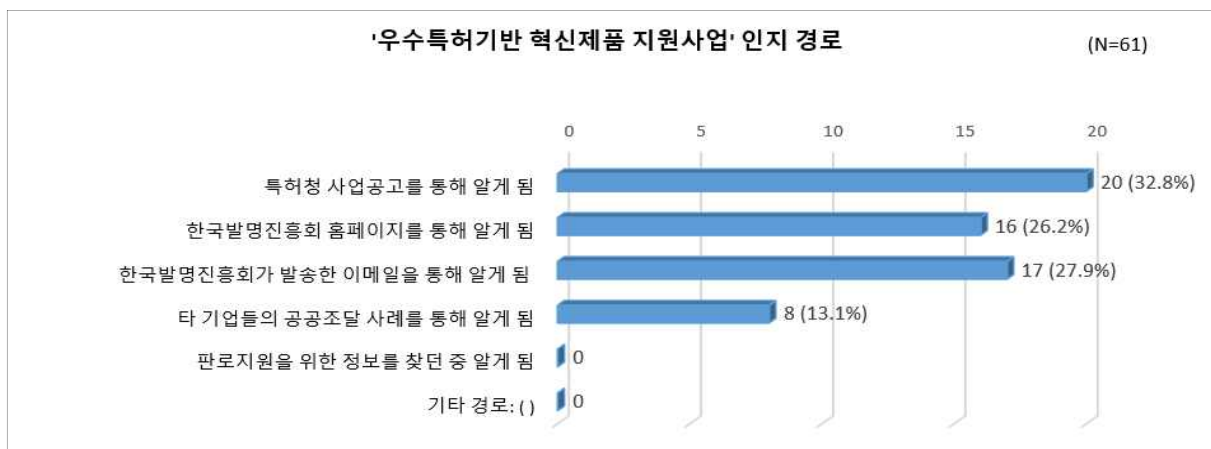
나. 사업 인지 경로

- 각 사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됨’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을 위한 정보를 찾던 중 알게 됨’ 22%, ‘발명진흥회가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됨’ 20.7%로 나타남 (<그림 3-4> 참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의 경우, 32.8%가 ‘특허청 사업공고를 통해 알게 됨’이라고 답했으며, ‘한국발명진흥회가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됨’이 27.9%,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됨’도 26.2%로 조사됨 (<그림 3-5> 참조)

<그림 3-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알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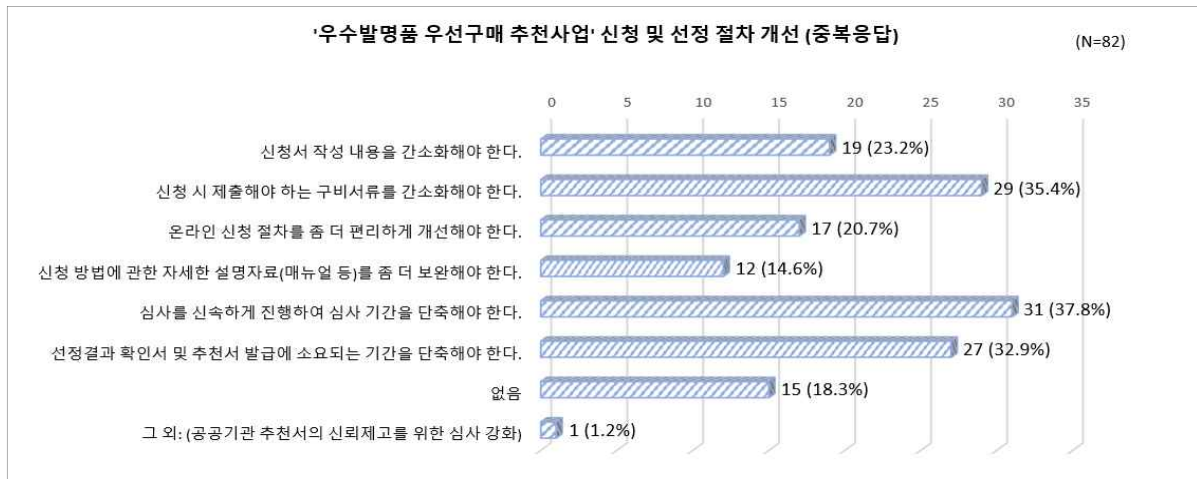
<그림 3-5>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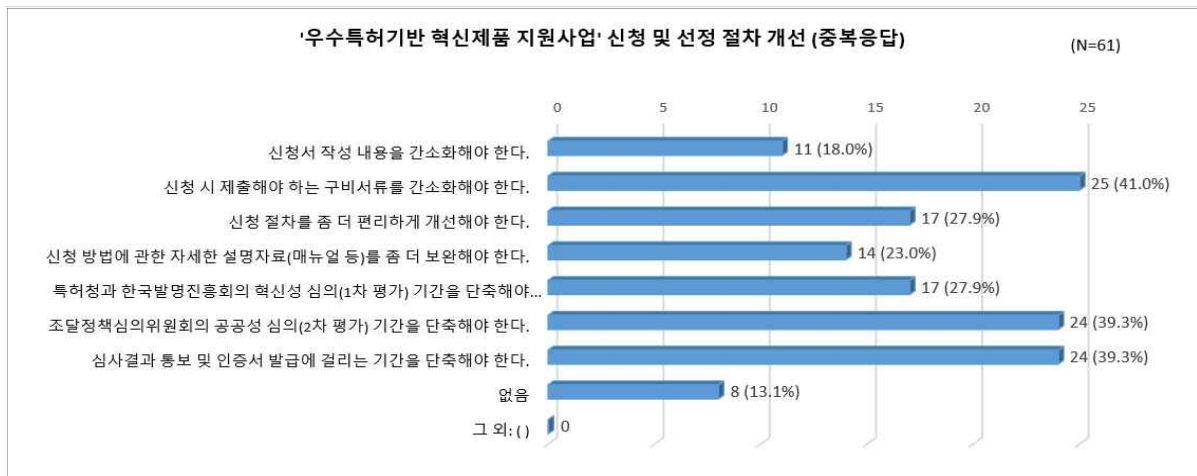
다. 신청 및 선정 절차 관련 의견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대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도 35.4%로 다음을 차지함 (<그림 3-6> 참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공공성 심의(2차 평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와 '심사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와 같이 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각각 39.3%로 높게 나타남 (<그림 3-7> 참조)

<그림 3-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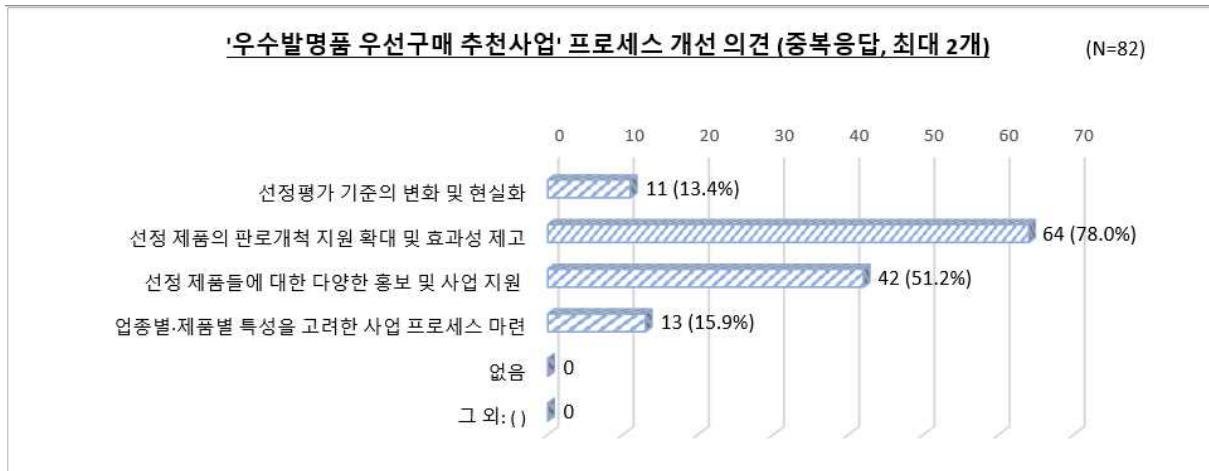
<그림 3-7>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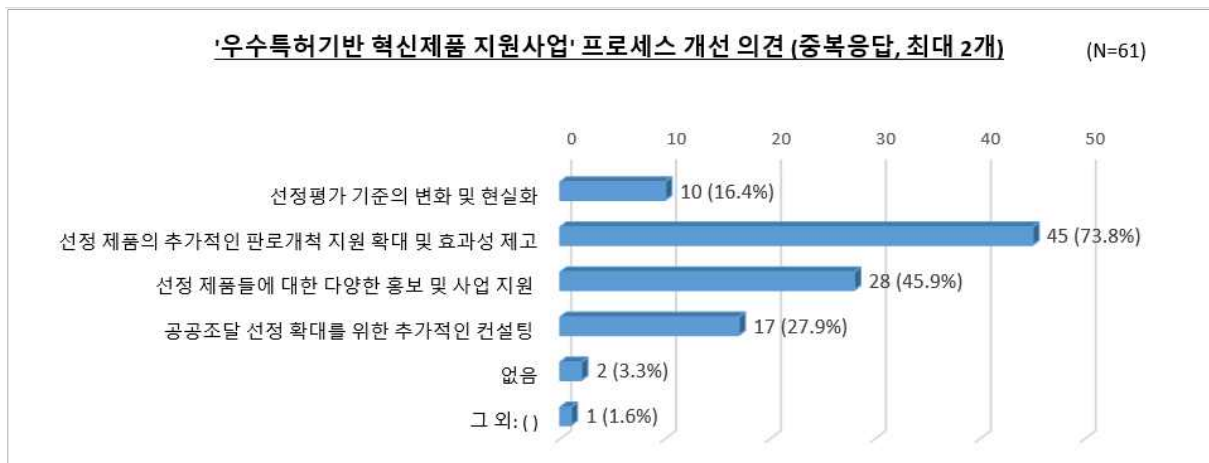
라. 사업 프로세스 관련 의견

- 사업 프로세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경우 '선정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8%, '선정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1.2%로 높게 나타남 (<그림 3-8> 참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도 '선정 제품의 추가적인 판로개척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3.8%로 가장 많았으며, '선정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사업 지원'도 45.9%로 높게 나타남 (<그림 3-9> 참조)

<그림 3-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프로세스 개선 의견



<그림 3-9>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프로세스 관련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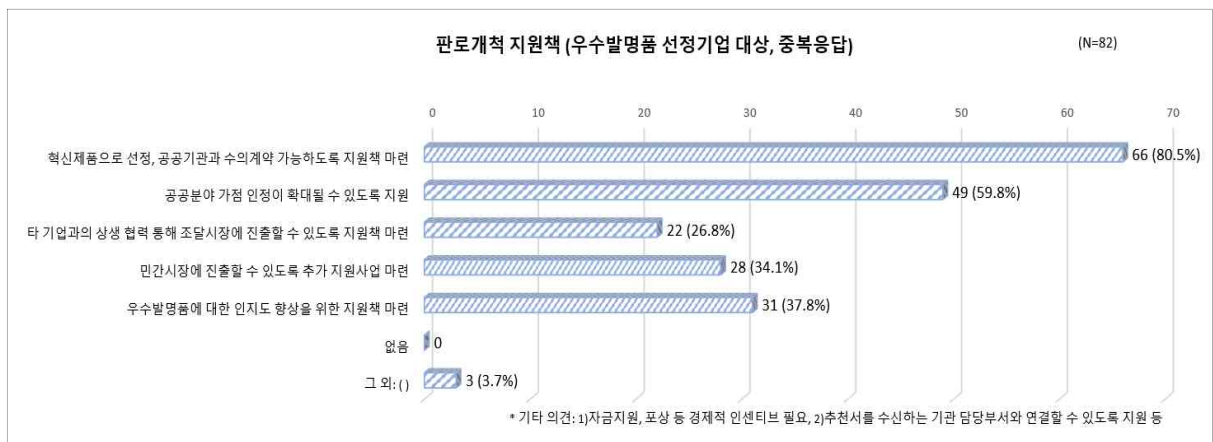


마. 추가 지원책 관련 의견

1)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 지원책 관련 의견

- 우수발명품 선정대상 기업들은 선정된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책에 대해 80.5%가 ‘혁신제품으로 선정,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3-10> 참조)
-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공공분야 가점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59.8%가 선택함

<그림 3-10>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 지원책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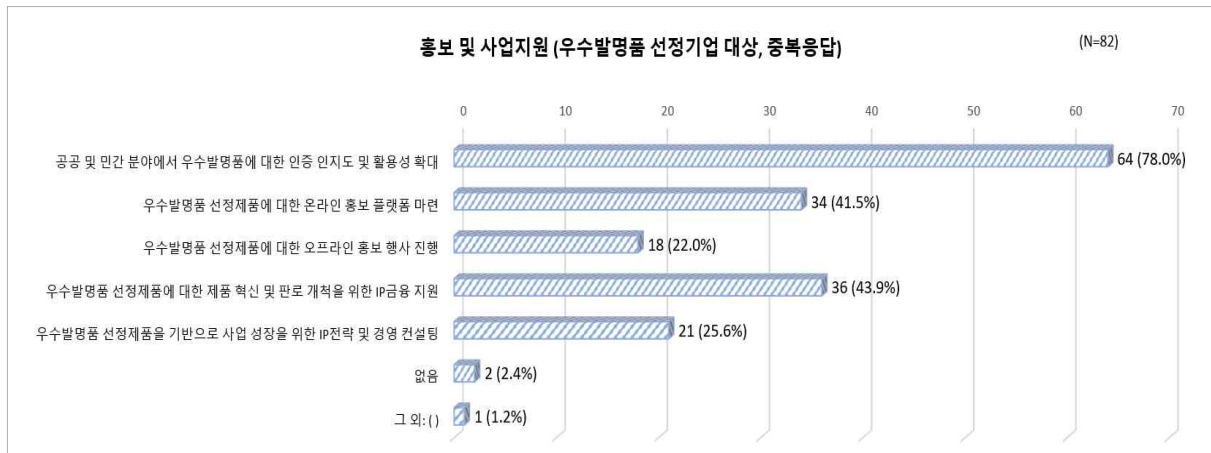


2) 우수발명품 홍보 및 사업지원 관련 의견

-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홍보 및 사업지원 관련 필요 사항에 대해, ‘민간 분야에서 우수발명품에 대한 인증 인지도 및 활용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8.0%로 가장 많았으며, ‘우수발명품 선정제품에 대한 제품 혁신 및 판로개척을 위한 IP 금융지원’도 43.9%, ‘우수발명품 선정제품에 대한 온라인 홍보 플랫폼 마련’도 41.5%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1> 참조)
-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는 공공기관 구매 의무 목표 비율을 정하는 등 ‘구매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금융기관 연계 등 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TV 광고나 전시회 등을 활용한 제품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

견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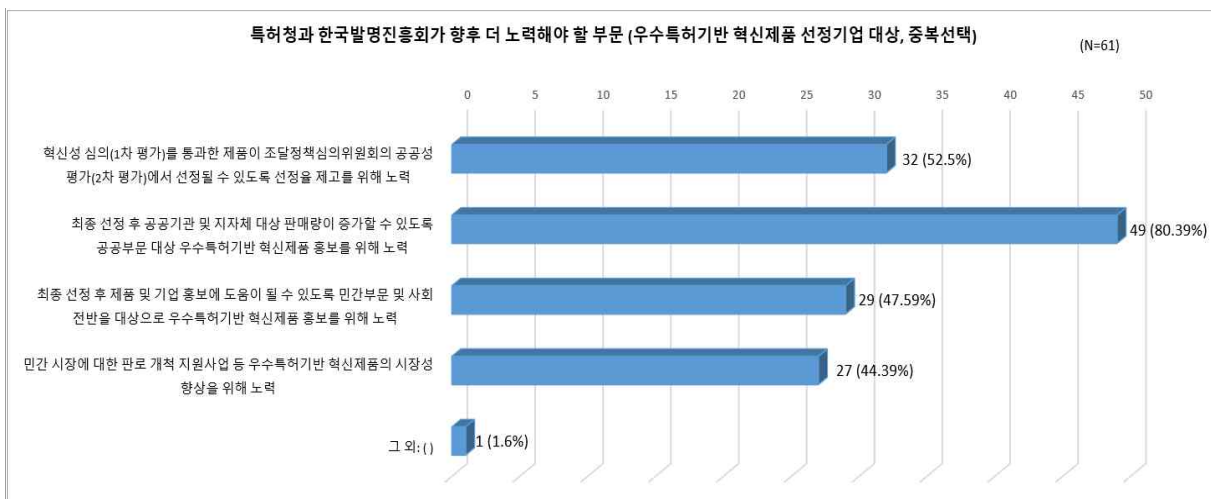
<그림 3-11> 우수발명품의 홍보 및 사업지원 관련 필요 사항



3)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위한 추가 지원 노력 관련 의견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향후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0.38%가 '최종 선정 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상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대상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3-12> 참조)

<그림 3-12>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위한 추가 지원 노력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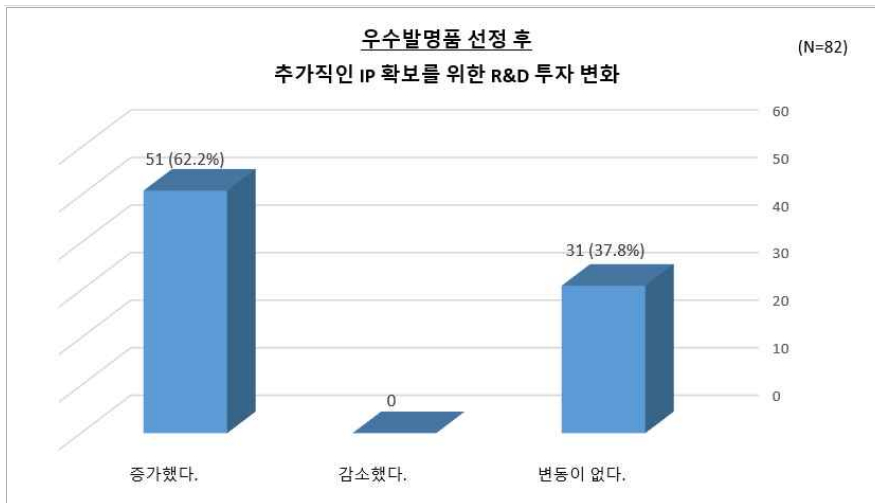


바. 선정 후 변화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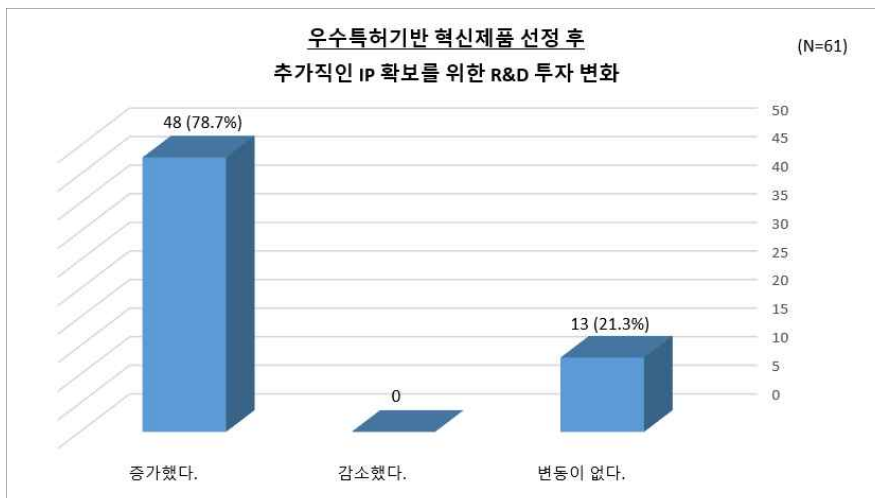
1) 사업 선정 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 변화

-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기업 중 62.6%는 사업선정 후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 변화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37.8%는 '변동이 없다'고 응답함. R&D 투자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없었음 (<그림 3-13> 참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전체 72.7%가 제품 선정 후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가 '증가했다'고 하였으며, 21.3%가 '변동이 없다'고 하였으며, 투자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없었음 (<그림 3-14> 참조)

<그림 3-13> 우수발명품 선정 후 R&D 투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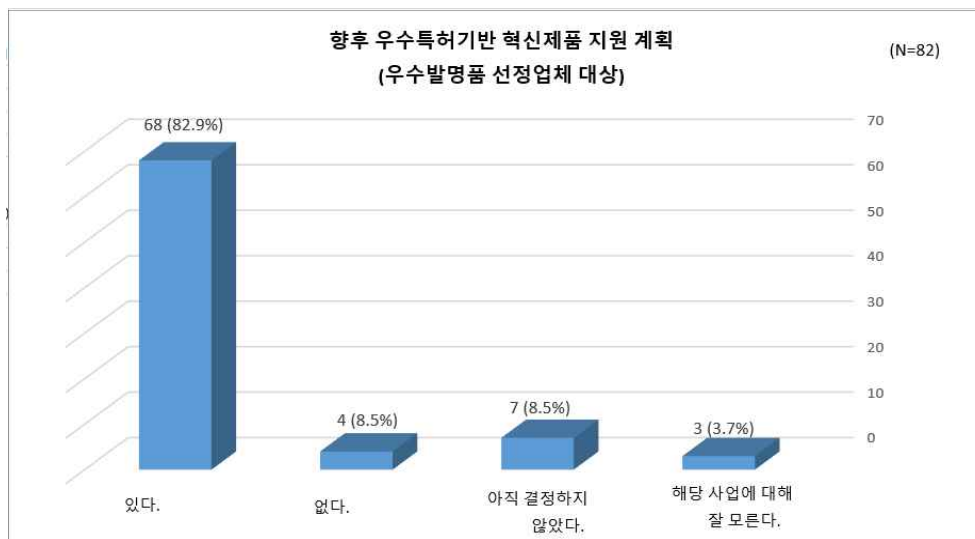
<그림 3-14>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 후 R&D 투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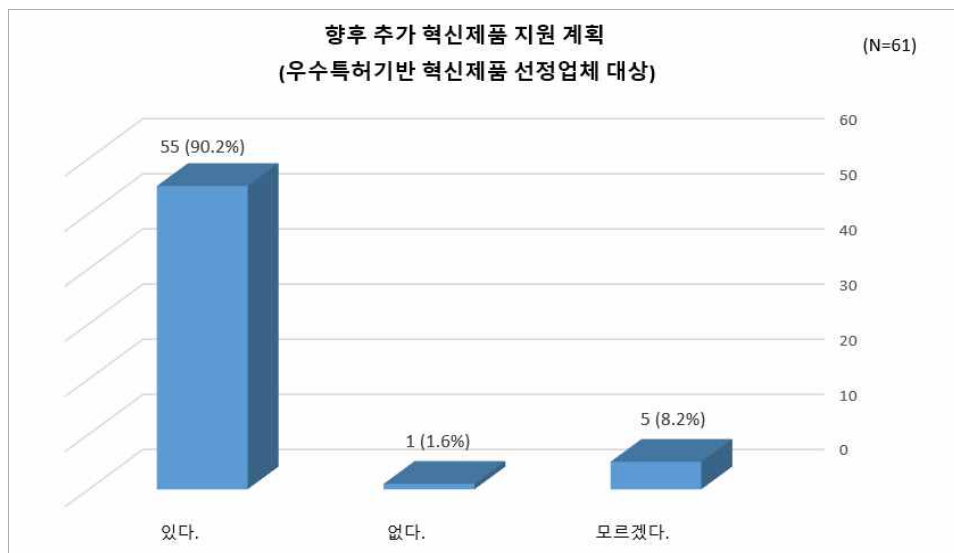
2) 향후 사업 지원계획

- 우수발명품 선정업체 중 82.9%는 향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하였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8.5%, 지원 계획이 '없다'가 8.5%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3.7%에 그침 (<그림 3-15> 참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에 선정된 업체들도 전체 중 90.2%가 향후에 추가적인 혁신제품 지원 계획이 '있다'고 답함. '모르겠다'는 8.2%, 없다는 1.6%로 조사됨 (<그림 3-16> 참조)

<그림 3-15> 우수발명품 선정업체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 계획



<그림 3-16>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업체 중 재지원 계획



사. 두 사업의 연계가능성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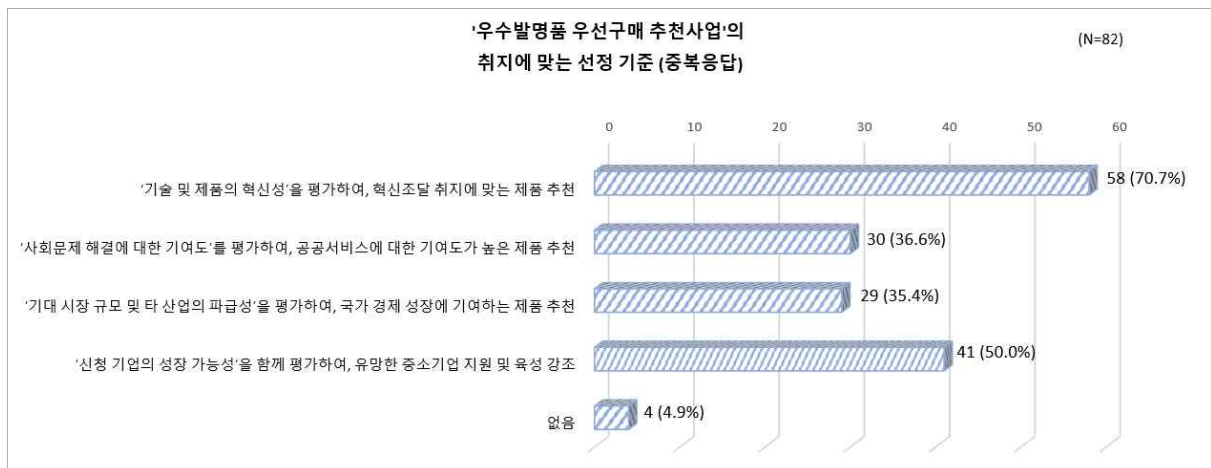
1) 우수발명품에 대한 이해

- 우수발명품 선정업체들은 우수발명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수발명품'을 잘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였음. 전체의 86.6%가 제품의 '혁신성'을 설명하는 내용인,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이 우수발명품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 응답함 (<그림 3-17> 참조)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을 선택하는 문항에 대해서도 70.7%가 '기술 및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조달 취지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야 한다'고 답함 (<그림 3-18> 참조)

<그림 3-17> 우수발명품을 설명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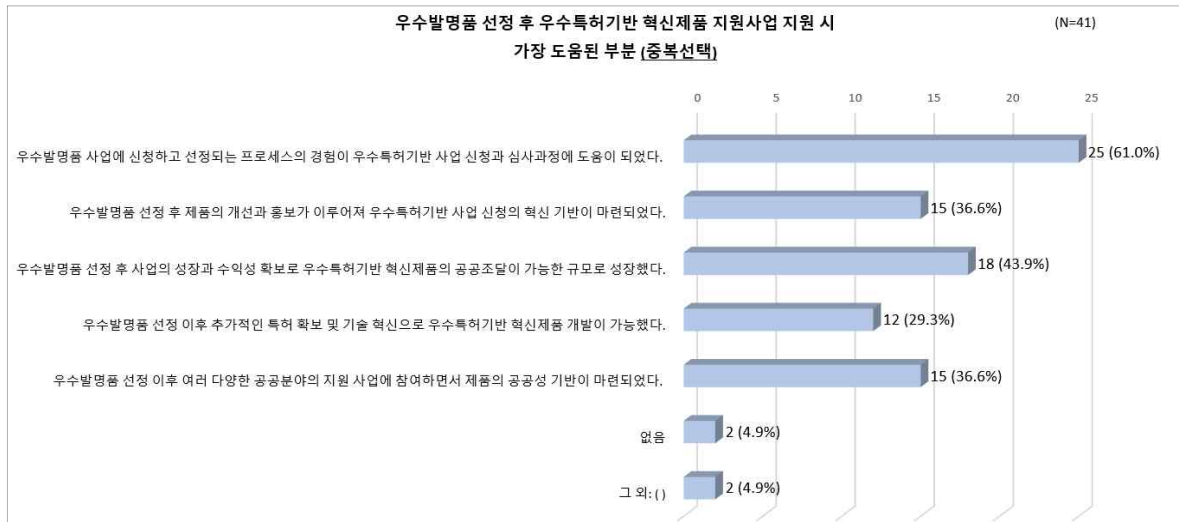
<그림 3-1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



2)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한 기업의 경험

-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모두에 선정되었던 기업들은 우수발명품 선정 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가장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 61.0%가 '우수발명품 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되는 프로세스의 경험이 우수특허기반 사업 신청과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그림 3-19> 참조)

<그림 3-19> 우수발명품 선정 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 시 가장 도움이 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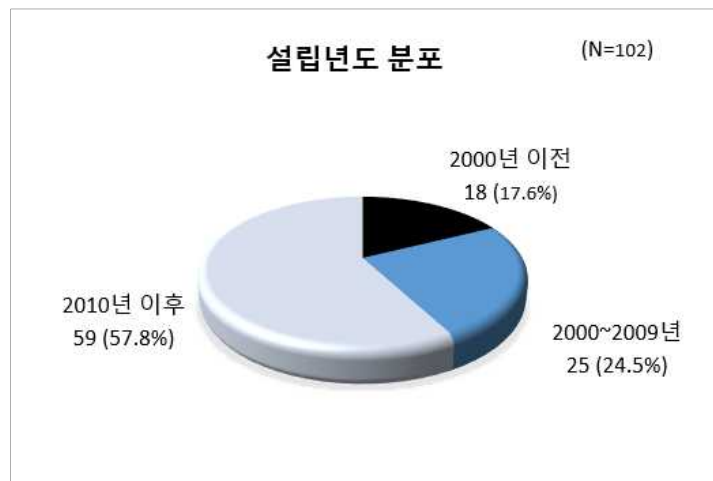


아. 선정업체 일반현황

1) 기업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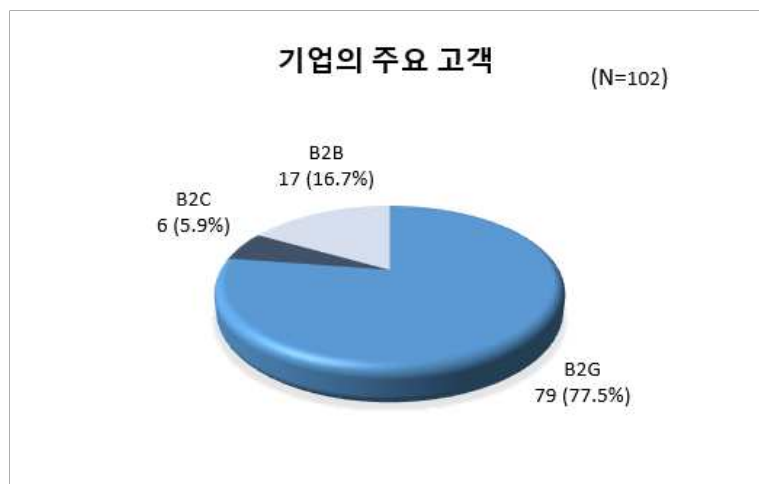
- (설립년도) 전체 업체 중 57.8%는 2010년 이후 설립된 기업으로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었음. 2000~2009년에 설립된 기업이 24.5%였으며,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17.6%로 가장 적었음 (<그림 3-20> 참조)

<그림 3-20> 기업 설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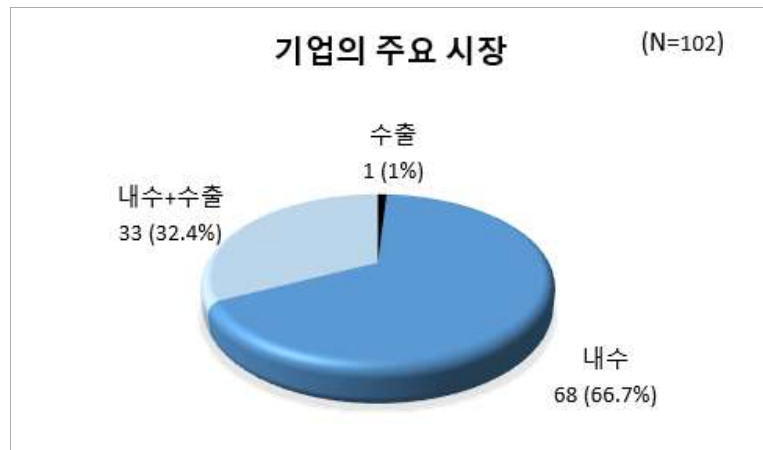
- (주요 고객) 전체 중 77.5%는 '정부기관'을 고객으로 하였으며, '다른 기업이나 생산자(B2B)'가 16.7%, '개인소비자(B2C)'가 5.9%로 나타남 (<그림 3-21> 참조)

<그림 3-21> 주요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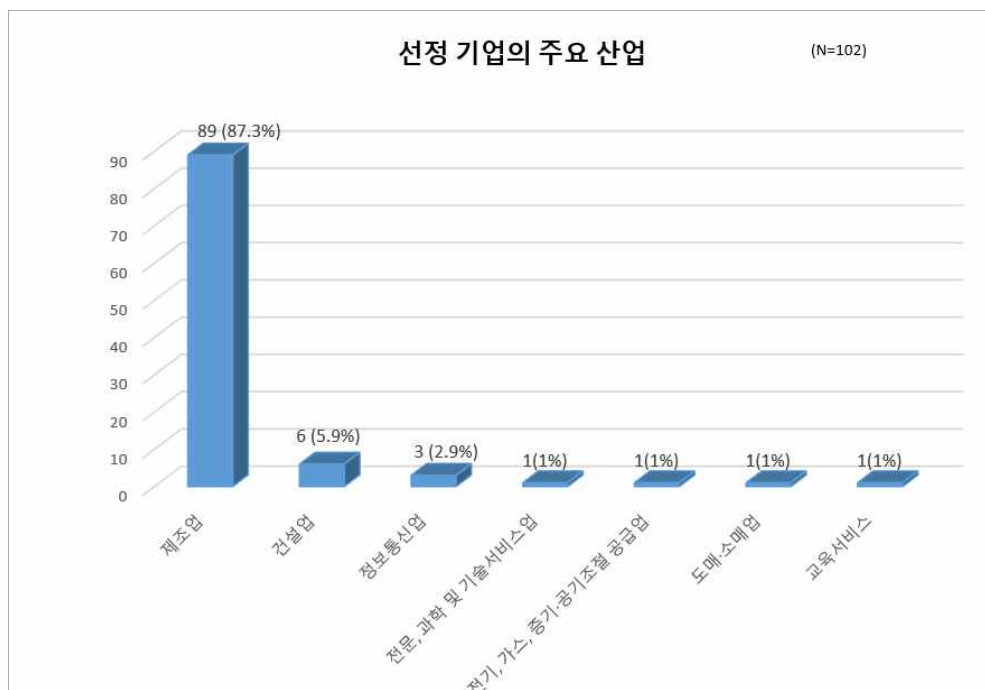
- (주된 시장) 주된 시장은 '내수(66.7%)'였으며, '수출과 내수 모두'라고 응답한 기업은 32.4%, '수출'은 1%에 그침 (<그림 3-22> 참조)

<그림 3-22> 주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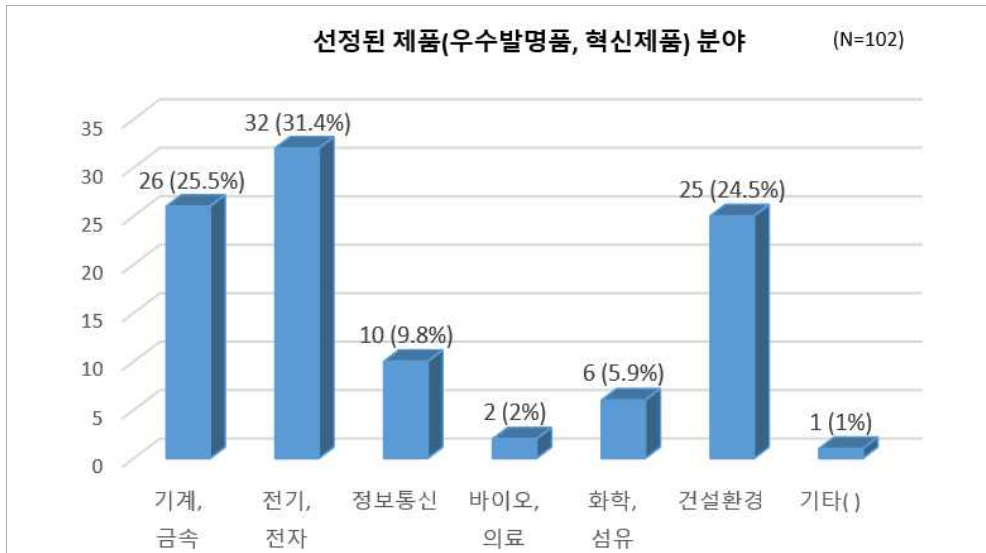
- (산업) 선정업체 중 대부분이 '제조업(87.3%)'에 속했으며,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전기·전자(31.4%)', '기계·금속(25.5%)', '건설·환경(24.5%)' 분야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3> 참조)

<그림 3-22> 주요 시장



- (선정제품 분야) 우수발명품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분야는 전기 및 전자 분야 제품이 3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계 및 금속 관련 제품이 25.5%, 건설 및 환경 분야 관련 제품이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4> 참조)

<그림 3-24> 선정된 제품의 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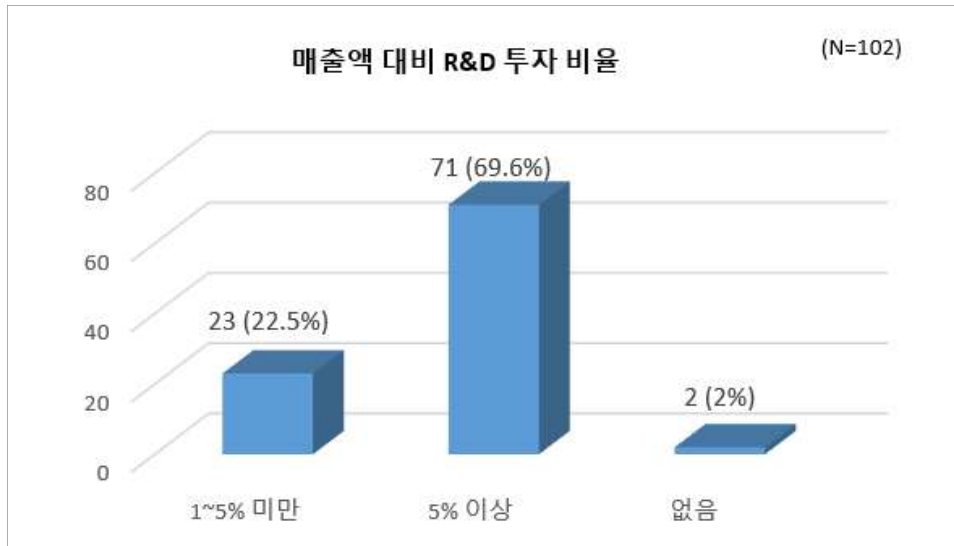
- (기업 매출) 선정업체들의 2022년 말까지 예상 매출액은 '10억이상 50억 미만'이라는 응답이 25.5%, '10억 미만'이 24.5%으로 조사됨 (<그림 3-25> 참조)

<그림 3-25> 연간 매출액



-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선정업체 중 69.6%가 매출액 대비 '5%이상'의 R&D 투자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업체 중 22.5%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5%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3-26> 참조)

<그림 3-26>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자. 선정업체 특허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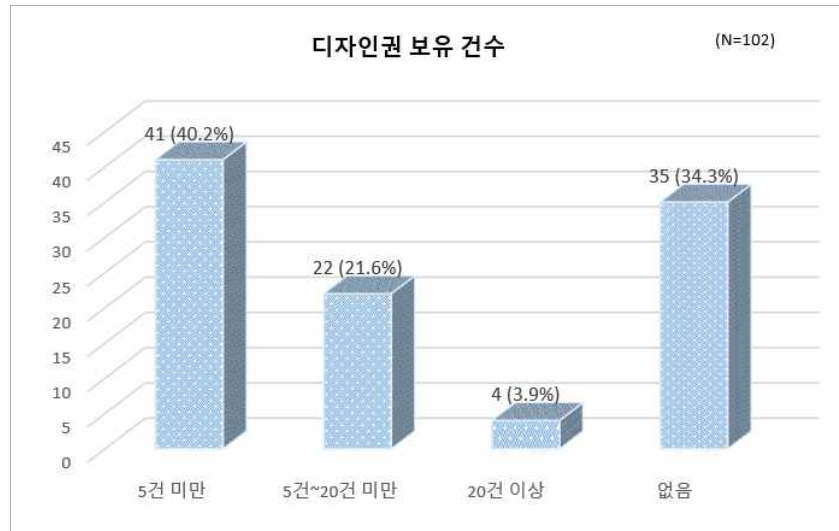
- (특허 보유 건수) 선정업체들의 특허 보유 건수는 '5건~20건 미만'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5건 미만'을 보유한 기업이 24.5%, '20건 이상' 보유는 23.5%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7> 참조)

<그림 3-27> 특허 보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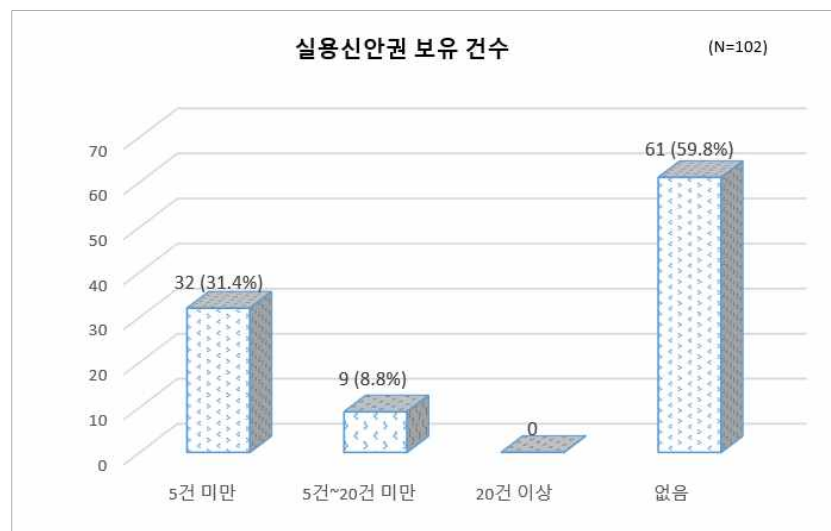
- (디자인권) 선정업체 중 40.2%는 디자인권을 '5건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3%는 '없음(보유하지 않음)'으로 조사됨 (<그림 3-28> 참조)

<그림 3-28> 디자인권 보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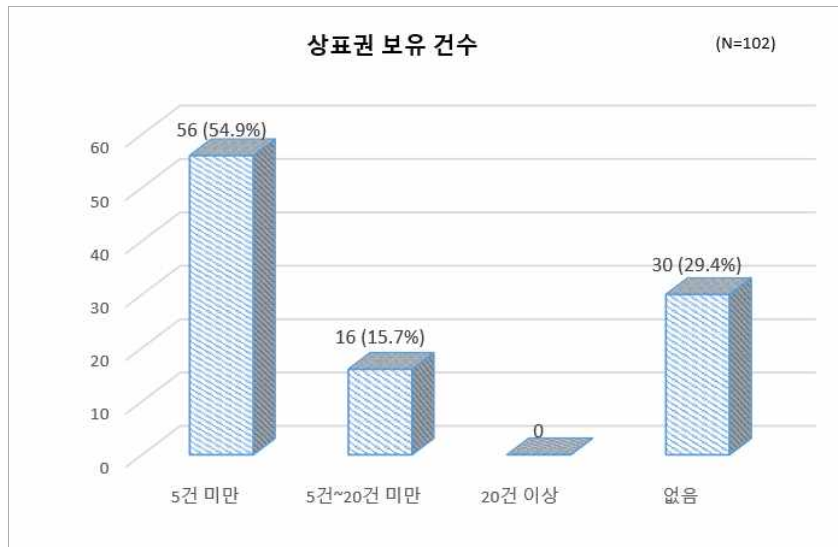
- (실용신안권) 전체의 59.8%가 실용신안권이 '없음(보유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31.4%가 '5건 미만'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함(<그림 3-29> 참조)

<그림 3-29> 실용신안권 보유 건수



- (상표권) 선정업체의 54.9%는 '5건 미만'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9.4%가 '없음(보유하지 않음)'으로 나타남(<그림 3-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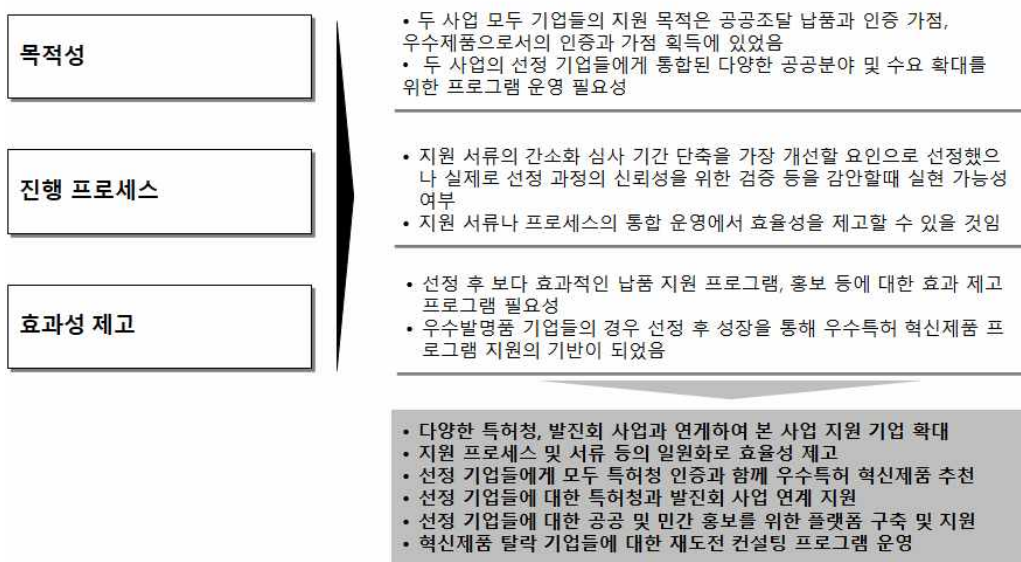
<그림 3-30> 상표권 보유 건수



4. 설문 분석을 통한 사업 개선 시사점

<그림 3-30> 설문분석 결과를 통한 사업 개선 시사점

■ 두 사업의 지원 기업들은 대부분 지원 목적과 활용 전략이 유사했으며, 진행 프로세스의 개선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요청하는 지원의 경우에도 공통성이 존재함



가. 사업 지원 목적

- 두 사업 모두 기업들의 지원 목적은 공공조달 납품과 인증 가점, 우수제품으로서의 인증과 가점 획득에 있었음

- 두 사업의 선정 기업들에게 통합된 특허청의 공신력있는 인증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공분야 및 수요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나. 사업 신청 및 진행 프로세스

- 지원 서류의 간소화 심사 기간 단축을 가장 개선할 요인으로 선정했으나 실제로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위한 검증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두 사업의 지원 서류나 프로세스의 통합 운영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다. 사업 효과성 제고

- 기업들은 선정 후 보다 효과적인 공공분야 납품 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에 대한 효과 제고 프로그램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우수발명품 기업들의 경우 선정 후 성장을 통해 우수특허 혁신제품 프로그램 지원의 기반이 되었음

1. 인터뷰 개요

가. 참여 기업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인터뷰에는 총 세 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업체 중 A사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이며, B사와 C사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임 (<표 3-3> 참조)

<표 3-3> 인터뷰 참여 기업 현황

구 분	참여 사업	혁신제품 지정	제 품
A사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	에너지 절감형 원심 분리기
B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혁신제품 미지정	균열방지형 전단키
C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혁신제품 지정	필터 게이트

나. 인터뷰 질문

- 기업 인터뷰는 사업에 지원하기 된 동기(계기), 사업 지원 준비와 심사 프로세스 관련 개선 의견, 사업 선정 후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사항들, 사업 선정 효과(구체적인 성과 등), 사업 선정 후 추가적인 사업 지원 계획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음 (<표 3-4> 참조)

<표 3-4> 인터뷰 질문

주제	질문
사업 지원 동기	• 사업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사업 프로세스 개선 의견	• 사업 지원 준비와 심사 프로세스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업 선정 후 필요 사항	• 사업 선정 후 공공조달 수요를 확보하는 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사업 선정 후 한국조달연구원의 공공성 평가 준비 또는 선정 이후 특허청의 추가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업 선정 효과	• 사업 선정으로 귀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 사업 선정 성과를 공공조달 외 사업 성장을 위한 다른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업 선정 후 추가 사업 지원 계획	• 사업 선정 후 특허청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이나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추가적인 타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2. 인터뷰 결과

○ 각 기업별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A사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참여 기업)

○ 귀사가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에 지원하신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판로개척 및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가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 본 사업 지원 준비와 심사 프로세스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연간 신청 가능 횟수가 2회 밖에 되지 않는 점과 심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경우 별도 문의를 해야지만 부적합 사유를 공개하는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타 인증 제도는 점수 및 평가 내용을 지원했던 모든 업체에 상세히 공개함)

○ 본 사업 외에 공공조달 확대와 사업 성장을 위해 특허청의 추가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특허를 기반으로 취득한 인증에 대한 가점 비중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그 성과를 공공조달 외에 사업 성장을 위한 다른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판로개척 활동에 활용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 귀사는 추후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당사는 아직 지원 계획 없습니다.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에 추가하여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B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참여 기업)

○ 귀사가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지원하신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 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 및 확장 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개발제품은 교량 내진보강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관급자재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납품이 필요한 바 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본 사업 선정 이후 한국조달연구원의 공공성 평가 준비와 심사 프로세스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 교량 내진보강 또는 지진격리제품은 동일한 기술에 제품 스케일 업 또는 다운되는 크기만 달라지기 때문에 용량별 많은 물품 모델 및 식별번호가 필요하지만 한국조달연구원의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본 사업 선정 이후 한국조달연구원의 공공성 평가 준비에서 특허청의 추가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선정 심의를 통해 상품성, 품질성, 기술성 등을 모두 인정 받았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공공성 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것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다시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혁신제품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 ▶ 특허청에서 우수발명품 선정시 이에 대한 모든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별도의 서류나 어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공공성 평가는 정말 이 제품이 혁신제품으로서의 결격사유 여부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신청 제품의 상품성, 품질성, 기술성 등은 이미 특허청 우수발명품에서 소명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본 사업 선정 성과를 공공조달 외에 사업 성장을 위한 다른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사업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 선정 후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추가적인 타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업이십니까?
 - ▶ 아직 계획 없습니다.

○ 우수특허기반 제품의 시장 확보와 사업 성장을 위해 특허청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우수발명품에 대한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각 공공기관의 기술 마켓 제품 대비 우수발명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대부분 평가 위원들이 평가 절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의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C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참여 기업)

○ 귀사가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지원하신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 본 사업 지원 준비와 심사 프로세스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규격검토(평가 제품별 제품규격서 검토) 단계에서 과도하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인증 확인 등)

- 안전인증 등 확인(제품규격서 내 신청모델명과 KC인증서상 모델명 상이로 시간지연 발생)
- 안전인증 등 확인단계가 공공성평가 서류검토(사전심의)시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

▶ 단계 요약 : 공공성 평가 서류검토(사전심의) → 공공성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상정 → 규격검토 → 지정서 발급 → 혁신장터 등록

- 이 때 '규격검토' 단계에서 약 2달이 소요됩니다.

○ 본 사업 선정 이후 공공조달 수요를 확보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 해당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혁신 쇼핑몰에 등재된 가격은 희망가격입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조달청 단가계약 단계가 추가로 있어 계약 체결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 및 단가 인하 등)
- ▶ 지정서 발급 이후 혁신장터 등록 전 확정단가(조달청 계약)가 쇼핑몰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 최근 언론을 통해 조달청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사업 선정에서 얻은 귀사가 판단하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 ▶ 수의계약 체결(1건 발생)이 가능함으로 영업활동의 어려움이 감소하였습니다.
- ▶ 혁신쇼핑몰 등재로 제품의 우수성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 ▶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혁신조달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참여 등)
- 본 사업 선정 성과를 공공조달 외에 사업 성장을 위한 다른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 우수조달제품 등록
- ▶ 해외인증 취득 및 진출 준비
- 본 사업 선정 후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추가적인 타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업이십니까?
- ▶ 한국발명진흥회의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 이후 한국조달연구원의 공공성 평가 준비 또는 선정 이후

특허청의 추가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지정서 발급 이후 혁신장터 등록 전 확정단가(조달청 계약)가 쇼핑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인터뷰 결과를 통한 사업개선 시사점

○ 신청 프로세스의 변화 요인

- 연간 신청 회수 증가와 심사평가 내용 공유 필요성
- 특허 기반 취득 인증의 가점 비중 상승 필요

○ 공공성 평가 및 품목 지정에서의 필요 요인

- 우수발명품과 우수특허기반제품의 지위향상과 인지도 제고 필요성
- 특허청의 선정에서 혁신성 심사 결과가 명확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프로세스 요구
-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후 규격검토 등의 기간 단축 및 수의계약 효율성 제고

○ 향후 특허청 사업과의 지속적인 연계 가능성

- 혁신쇼핑몰 등재의 홍보 효과와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한 효과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등 사후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가능성

1. 인터뷰 개요

가. 인터뷰 목적

- 우수특허기반 제품 추천 후 조달연구원과 조달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추천 프로세스에서의 추천 성과 확대 및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제품의 차별화 전략 방향 도출

나. 인터뷰 대상 및 진행

- 인터뷰 대상
 - 혁신조달지원센터 관련부서 팀장
- 인터뷰 진행 방법
 - 일시: 2022년 11월 10일
 - 장소: 한국발명진흥회 회의실
 - 방법: 대면 인터뷰 및 이메일 질의

2. 인터뷰 결과

가. 혁신조달 선정 품목

- ▶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공공조달에서 성과를 보이는 품목들의 특성은 공공수요가 확실히 있는 제품,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 공공의 문제 해결이 가장 핵심으로 분석됨
- ▶ 따라서 추천 제품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선정 및 공공조달 계약 성과가 제고됨

- 문제 해결의 혁신성: 아주 새로운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공공 문제를 보다 용이하고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의 성과가 높음
-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제품
- 환경, 안전, 의료기기, 우수 장비
- 국가위기대응을 위한 제품, 비축 물자 등의 품목 유리

○ 품목 확대 방향

- 향후 제품과 서비스의 융복합 제품군 등을 확대하여 융복합 기술의 활용과 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을 제고할 계획임
- 분기별로 적합성을 분석하여 분류항목 및 규격을 추가하는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함

나. 패스트트랙 III 변화 방향

➤ 패스트트랙 III 의 품목을 조정하여 인증을 축소하는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검토 중에 있음

➤ 이러한 품목 조정이 현재 특허청이 추천하는 우수특허 제품들의 혁신제품 선정과 조달 성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천이 2020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의 2년간 우수특허 제품들의 공공조달 실적은 약 50% 정도로 짧은 기간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간이 지날수록 조달 실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기업들이 요청하는 심사 기간 단축의 경우 심사 기간은 현재 약 3개월로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를 위해서 더 이상 단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다. 우수혁신제품 지원 방안

○ 조달위원회 차원의 혁신제품에 대해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선정이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선정 후 3년간 공공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3+3 지원 연장을 검토
- 또한 시범구매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부처 및 기관들과 연계하여 R&D를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에 있음
- 의료기기와 같은 국민 건강 등 공공 성격이 강한 제품들의 경우 민간의료 부분을 연계하여 우선구매 추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품의 확산과 조달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가. 제품 추천을 주관하는 부처들의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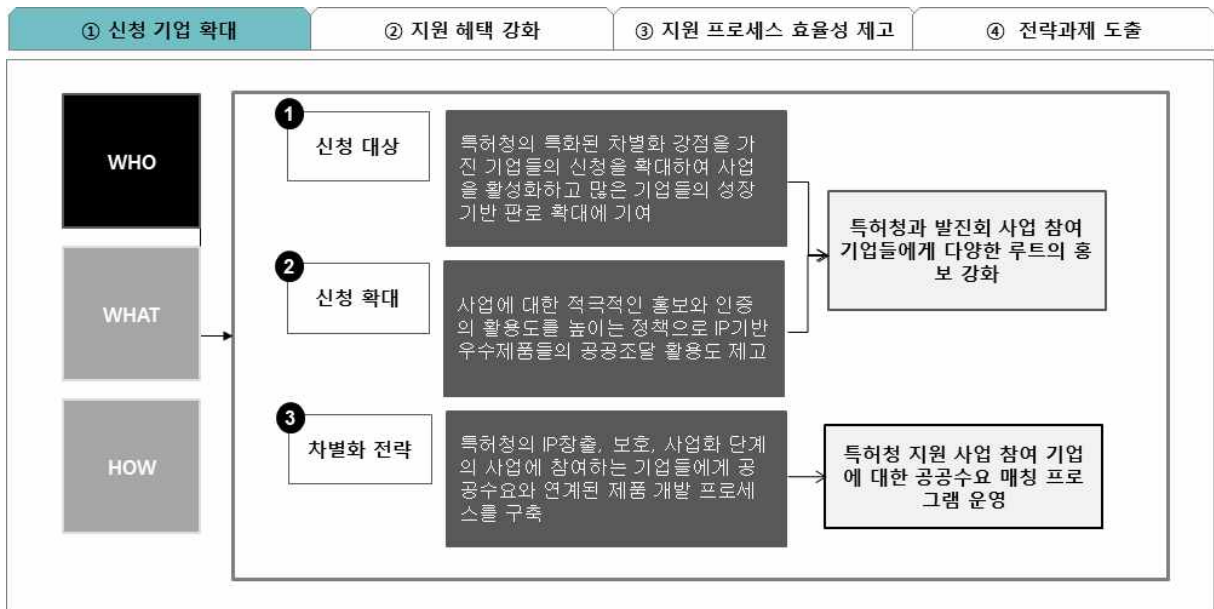
- 우선 본 사업에 추천하는 제품과 기업들을 최대한 확대하면 특화된 제품들의 공공조달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 따라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각 부처들의 창의적인 홍보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산자부의 경우 VC와 창업보육센터 등을 연계한 스카우터 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과기부의 경우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게 우수조달로 연계하도록 하는 내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따라서 특허청의 아이디어로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들과 연계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우수특허 혁신제품에 추천하고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IV.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사업 개선 방안

1. 사업 추진 방향
2. 사업 추진 전략
3. 관련 법령 지침 안

1. 신청 기업 확대

<그림 4-1> 신청 기업 확대 전략



가. 다양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발명품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지원 기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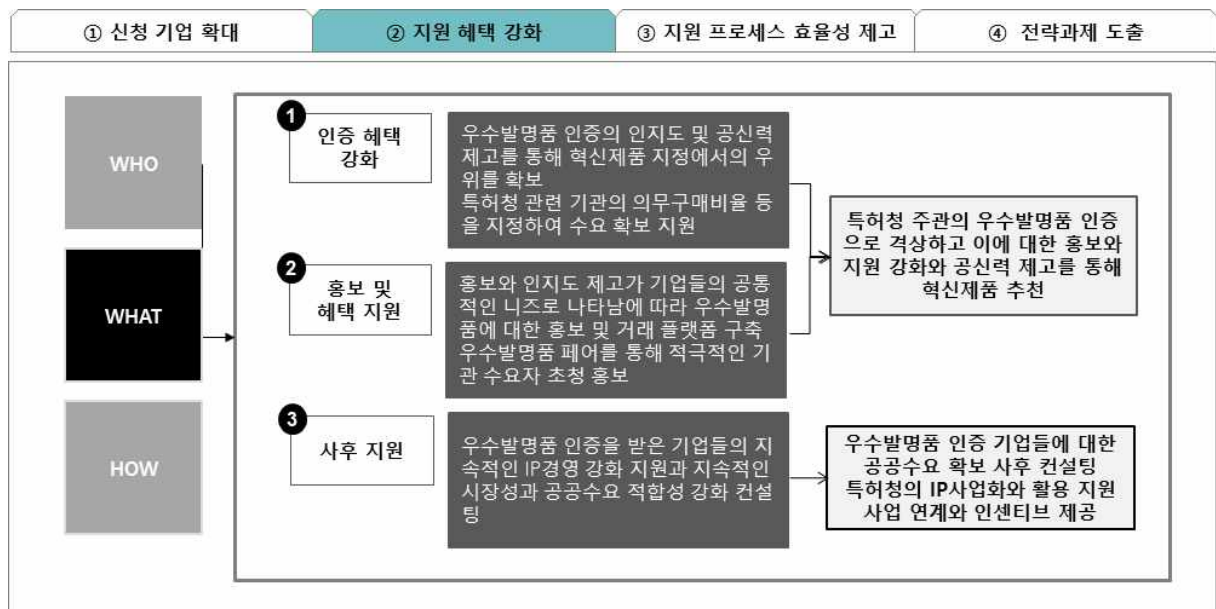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홈페이지에서 전체 지원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단계별 지원 사업들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우수발명품 인증 사업과 연계되도록 홈페이지 방문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우수발명품 인증 제품들의 성과를 알리는 웹진 발간 또는 특허청 소식에 포함하여 특허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발송
- 많은 기업들이 한국발명진흥회의 이메일을 사업 인지경로로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이메일 형태의 사업 홍보와 웹진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나. IP 창출 및 보호 단계 기업들에게 공공수요 연계 제품 개발 사업 지원

- 우수발명품 인증 사업에 대해 특허청의 IP 창출 및 보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사업 선정 이후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 확보 요인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수발명품과 혁신제품 지정에 적합한 IP기반 제품화를 유도
- 특허청 관련 산하 공공기관 및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필요 구매물품이나 성능혁신 제안을 받아 맞춤형 제품개발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관련 공공조달에 연계된 우수발명품의 개발과 신청이 확대되도록 할 수 있음

2. 지원 혜택 강화

<그림 4-2> 지원 혜택 강화 전략



가. 우수발명품 특허청 인증을 통해 공신력과 효과성 제고

- 우수발명품 사업과 우수특허기반 사업의 중복된 범위와 기업들의 신청 목적과 활용방안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두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선결 요건으로 볼 수 있음

- 특허청의 정책 취지와 특성을 살린 우수발명품을 특허청이 인증하는 제도로 격상하고 이 제품들을 패스트트랙 III의 혁신제품으로 추천하여 사업을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정 기업들의 기회와 활용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패스트트랙 III의 NEP, NET 제품들의 경우에도 해당 부처의 인증 후 제품을 추천하여 보다 공신력과 혁신성 등을 제고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허청의 우수특허제품도 인증을 통해 제품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다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인증 우수발명품에 대해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에 있어 가점과 우선구매비율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보다 확대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인증 우수발명품에 대해 특허청과 산하 기관, 관련 기관들의 의무구매비율을 도입하여 인증 기관이 판로 개척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선정 기업들에 대한 공공수요 확보 및 홍보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지원

- 사업에 참여하고 선정된 기업들이 공공조달 수주나 성과를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정 기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지원이었음
- 특히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상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대상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홍보'와 '민간 분야에서 우수발명품에 대한 인증 인지도 및 활용성 확대'를 강조함
- 우선 우수발명품에 대한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인지도 향성과 공신력 제고가 요구됨
- 따라서 우수발명품 인증을 승격하는 방안과 혁신제품 추천에 있어 NEP, NET 제도와

같이 특허청의 인증을 부여하여 추천 프로세스를 진행해 그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우수발명품 인증 제품에 대해서 특허청 차원의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와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조달청의 혁신제품 선정과 별도의 국내 우수발명품에 대한 홍보 및 거래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 2회 정도의 우수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 관련 기업들을 초청하여 우수발명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조달 및 구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우수발명품 박람회의 경우 향후 해외 정부기관들도 초청하여 동남아 등의 해외 공공기관의 조달시장과도 연계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다. 우수발명품 인증 기업들에 대한 초기 수요 확보 및 지속적인 공공수요 발굴 지원

- 우수발명품 인증 기업들에게 신속한 초기 수요를 확보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혁신제품 추천 및 선정과 별개로 특허청과 관련 기관들의 우수발명품 인증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설정하고 품목 등에 있어서도 구매물품과 혁신성능개선 요청을 받아 맞춤형 우수발명품 개발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장성과 공공수요와의 적합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혁신제품 개발과 공공수요 발굴을 확대하도록 함

라. 선정 기업들에 대한 특허청과 발진회 사업 연계 후속 지원으로 IP기반 기업 성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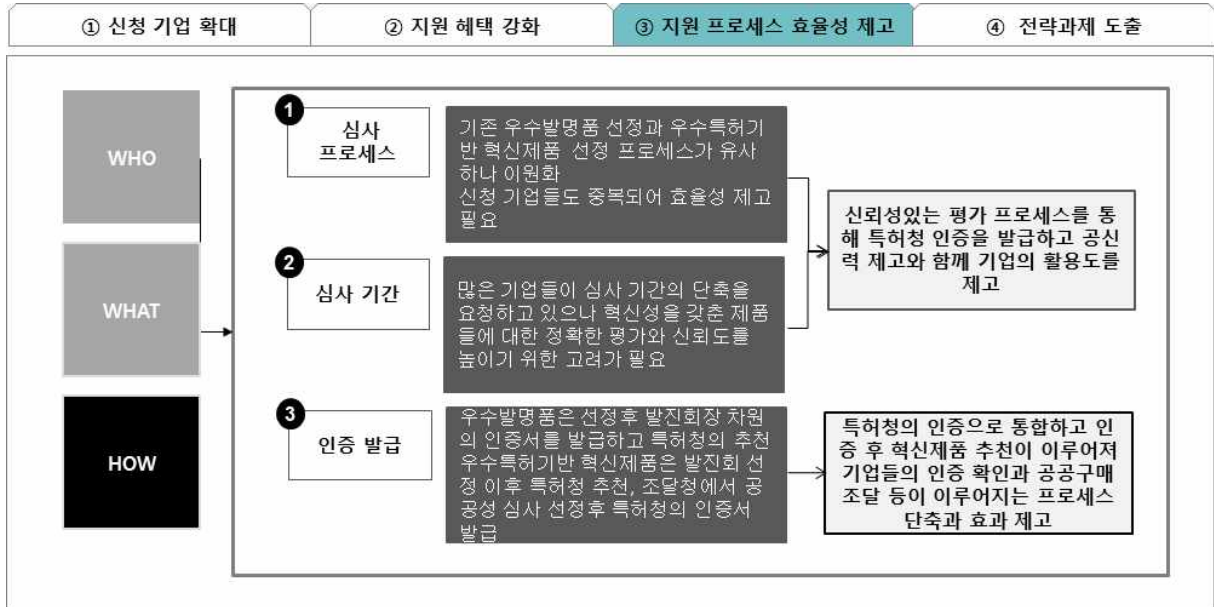
-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R&D 활동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권을 취득하는 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 기업들이 IP기반 역량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우수발명품과 우수특허기반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의 경우, 소규모 및 중소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기업들로서 선정 후 두 사업 선정 기업들의 약 50% 이상은 IP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들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기업이 추가적인 IP 활동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이를 기반으로 한 IP 창출 및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특허청 인증의 취지와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수발명품 인증 기업들이 혁신제품 선정과 공공조달 이후 지속적인 IP 창출 및 사업화를 통해 우수 IP경영 기업으로 성장하여 특허청의 IP기반 국내 기업 및 산업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우수발명품 인증 기업들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와 인증 가점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인증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IP기반 사업화를 통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있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3. 지원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그림 4-3> 지원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전략



가. 우수발명품 인증을 통한 혁신제품 추천 등 구매촉진 프로세스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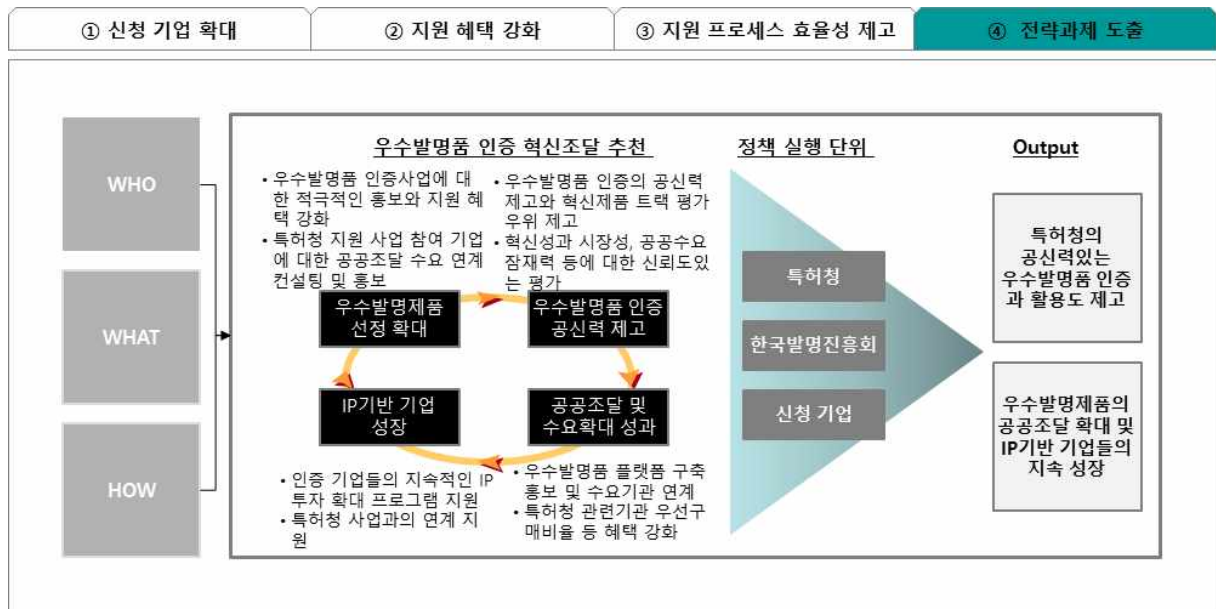
- 많은 기업들이 본 사업의 신청 프로세스에서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기간 단축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함
- 다만 우수발명품 인증을 격상하고 공신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리한 심사 기간 단축은 사업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우수발명품 선정 및 인증과 혁신제품 추천사업을 통합하고 일원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심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요청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우수발명품의 인증을 통해 해당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성 및 혁신성에 대한 가점을 확보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에서의 유리한 평가 요인들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편의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나. 우수발명품 인증의 공신력 및 혁신성 평가의 효율성 제고

- 혁신제품 선정과 공공조달에 있어 혁신성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 부처의 패스트트랙 III에 해당 부처의 인증제품을 추천하는 것과 같이 특허청 차원의 인증으로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일원화와 함께 한국발명진흥회장 명의의 인증을 특허청의 인증으로 격상하여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우수발명품 인증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술 및 제품혁신성과 시장 및 공공성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면 및 발표심사 등의 단계별 프로세스의 개선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4.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 정책 방향

<그림 4-4>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 정책 방향



- 앞에서 분석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확대에 있어 핵심적인 4가지의 대응 이슈와 이에 대해 필요한 정책 방향

을 도출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4대 핵심 대응 이슈들에 대한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인증제도 격상과 강화, 관련 제도 및 법령, 시행안 제정, 우수발명품 인증 및 공공구매 촉진 사업의 프로세스 구축과 관련 사업 확대, 관련 기관 역할 정립,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함
- 본 정책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로 특허청의 공신력있는 우수발명품 인증의 시장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우수발명제품의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으로 IP기반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여 특허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가. 우수발명품 선정 확대

- 우수발명품 인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혜택 강화
- 특허청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수요 연계 컨설팅 및 홍보

나. 우수발명품 인증 공신력 제고

- 우수발명품 인증의 공신력 제고를 통한 혁신제품 선정 평가에서의 우위 강화
- 혁신성과 시장성, 공공수요 잠재력 등에 대한 신뢰도있는 평가 프로세스 구축

다. 공공조달 및 수요확대 성과 제고

- 우수발명품 플랫폼 구축 홍보 및 수요기관 연계
- 특허청 관련기관 우선구매비율 등 혜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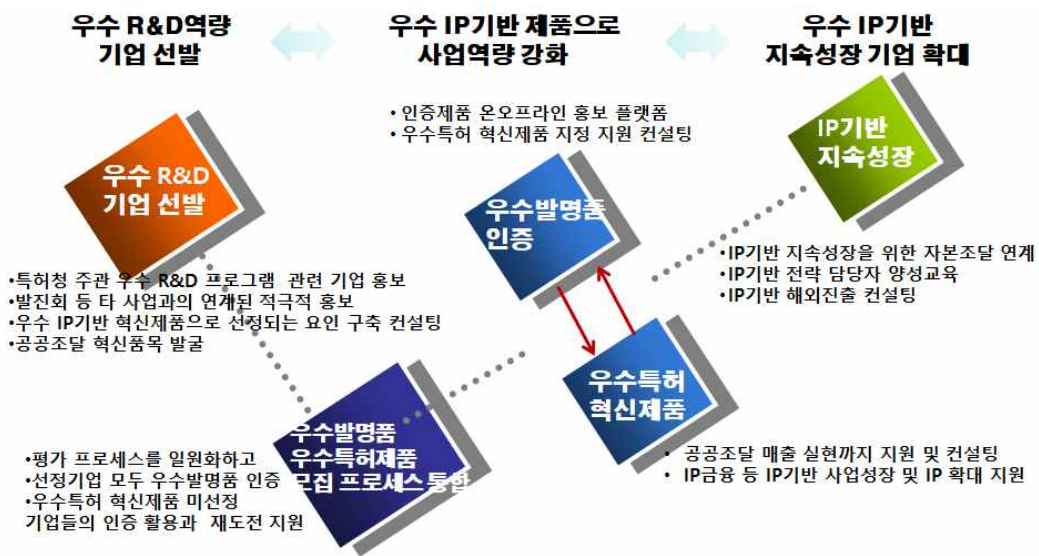
라. IP기반 기업 성장

- 인증 기업들의 지속적인 IP투자 확대 프로그램 지원
- 특허청 사업과의 후속 연계 지원

1. 사업 추진 프로세스 통합 방안

□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제품 추천사업 통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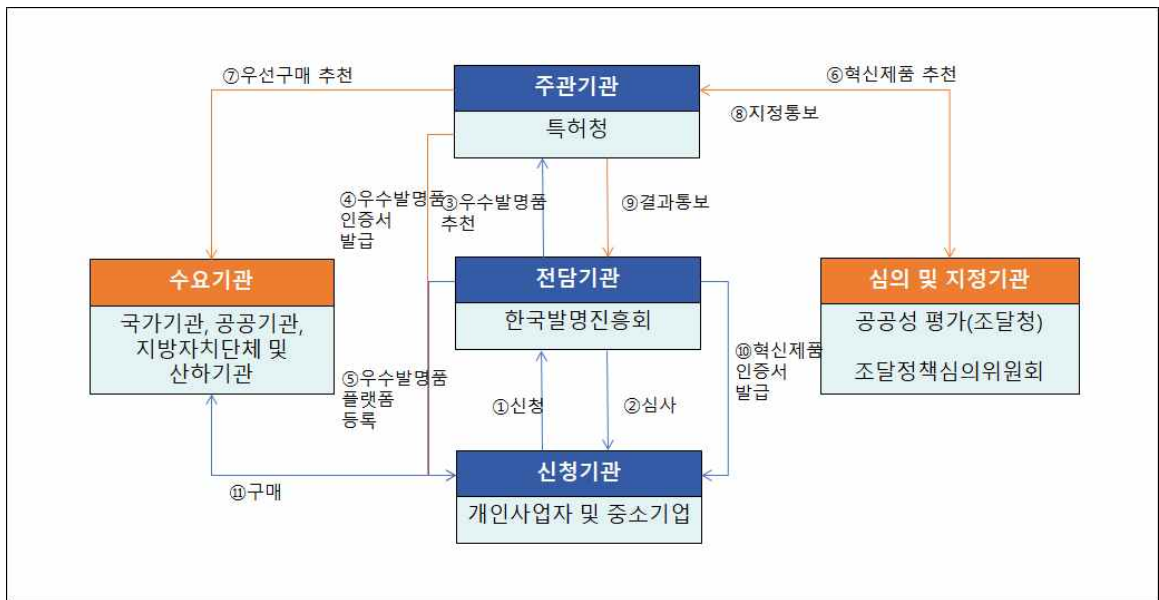
<그림 4-5>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사업 통합 방안



- 이원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사업을 (가칭)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제품 추천사업으로 통합하여 특허청의 우수 특허 중심의 IP 혁신 기업들의 공공 판로를 확보하고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기업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선정 프로세스에서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기업의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선정 기업들에 대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지원 혜택을 모두 부여하여 다양한 공공판로와 제품 홍보를 통한 사업 성장을 지원함
- 한편 선정 기업들에 대해 조달청의 혁신제품 패스트트랙 III에 추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심사 프로세스에서 탈락한 경우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추천 지원을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제고하여 재도전하도록 지원함

- 특허청 주도의 우리나라의 우수 특허와 IP 기반 혁신 역량을 갖춘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공공판로 확대와 우수 기술 인증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IP기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함
- 또한 다양한 특허청의 IP 창출,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들을 연계하여 우수 특허기반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 성장 단계별 지원과 공공 수요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컨설팅으로 IP 스타 기업을 지속 발굴함
- 특허청의 국내 우수특허 제품에 대한 인증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지식재산 강국인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인정받고 인지도 향상과 판로 개척에 기여하도록 함

<그림 4-6> 통합 사업 추진 체계



2.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제품 추천사업 실행 개요

가. 우수발명품 인증 및 혁신제품 추천사업 통합 프로세스

- 두 사업의 목적, 자격, 선정 기준, 수요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기준으로 사업 실행

1)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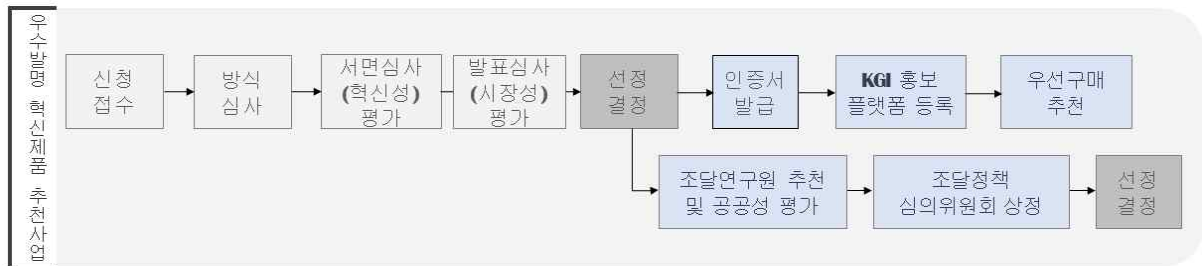
- 우수발명제품(Good Invention Product: GIP)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통해 공공 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지정 사업에 추천하여 공공부문 구매력 확보를 활용하여 성장하도록 지원

2)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및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3) 추진 프로세스

<그림 4-7> 통합 사업 추진 프로세스



- 우수 발명제품 보유 기업 신청을 위한 사업 홍보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R&D 지원 단계부터의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제품 개발 이후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특허청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시행으로 연 3회 신규 신청 접수를 받아 방식 심사와 서면심사,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결정을 실행
-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특허청 주관의 GI (Good Invention) 인증서를 발급하고 (가

칭) GI 홍보 플랫폼에 등록하여 우수특허제품의 홍보와 거래 활성화가 되도록 관리

- 선정 기업들에 대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우선구매 추천을 진행
- 동시에 선정된 기업들을 조달청의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Ⅲ에 추천하여 공공성 평가를 통해 조달정책 심의와 선정 결정 후 해당 제품들의 공공조달 시범구매 및 수의계약 등을 진행
- 본 사업 통합 추진 프로세스를 통해 특허청 주도의 우수특허 제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 우선구매 추천 및 다양한 인증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혁신성있는 IP기반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성장을 지원함
- 또한 동시에 조달청의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Ⅲ에 추천을 받아 기업들의 공공조달 수요 확보와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특허제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R&D투자와 혁신 제품 개발로 기업 성장을 가속화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에도 우수특허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하여 제품 홍보와 공공 수요를 발굴하고 특허청의 혁신성 및 공공성 제고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전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4) 심사 기준

- 우수특허제품 우선구매추천과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Ⅲ 추천을 위해 공통 심사기준을 통합 적용하여 기술혁신성, 시장성, 품질보증 및 공급능력, 공공성 지표로 평가함
- 기술혁신성과 품질보증 및 공급능력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 우위의 제품 경쟁력과 생산성 등을 평가하고 시장성과 공공성 지표를 통해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력과 조달청 공공성 평가에서의 우위를 평가함
- 분야별 지표의 배점은 제품 경쟁력(기술혁신성, 품질보증 공급능력) 50%, 시장 경쟁력(시장성, 공공성) 50%의 균형 배점으로 평가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되도록 함

5) 지원 혜택

- 특허청 주관 우수발명제품 인증 및 우선구매추천
 - 대한민국 특허청 추천 우수발명제품(Good Invention: GI) 인증서 발급
 - GI 제품 홍보 및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지속 홍보 및 공공 및 민간 수요 거래 촉진
 - 정부 및 지자체의 우선구매추천

- 조달청 혁신조달 패스트트랙 III 추천
 - 공공조달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특허청 발명진흥회 사업 선정에 가점 부여
 - IP기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지원 사업 연계
 - 추가 산업재산권 취득에 심사료 일정비율 지원 등

6) 사후 관리

- 선정된 기업들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조달 실적 등을 파악하여 성과가 미흡한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기간 연장

- 혁신제품 패스트트랙III의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들에 대한 공공성 평가 컨설팅과 우선구매추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조달관련 역량 또는 제품 개선을 통해 재도전 기회 부여

- 연 1회 또는 2회의 (가칭) Good Invention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선정되어 등록된 특허청이 추천하는 우수특허제품에 대한 대규모 홍보와 수요 발굴 및 국내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한국의 우수특허기반 신제품들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

- 본 사업 추천 기업들의 지속적 R&D와 지식재산권 확대, 기업 성장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수행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과 교육 실행

1. 법령 및 시행령 변경조정안

가. 근거법 관련

-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우수발명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임

- 추후 동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8., 2013. 7. 30., 2016. 1. 27.>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 [본조신설 2016. 12. 2.]

나. 운영 지침 신설 안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발명품의 정의 및 선정 기준 등을 명기한 특허청 고시 제정이 필요함

- 운영 지침 신설(특허청 고시 제정)은 크게 두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 「우수발명품 선정 및 우선구매 추천사업 운영 지침」 제정안
- (2안) 「우수발명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

- (1안)은 현행 사업 내용을 유지하되 사업의 주관기관을 발명진흥회에서 특허청으로 이

관하고 사업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발명진흥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 특허청 고시 제2021-22호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수발명품 선정 및 우선구매추천과 혁신제품추천에 대한 고시로 운영
- (2안)은 사업의 주관기관을 특허청으로 이관하는 것 뿐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확대하여 '우수발명품 인증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임
- 이 경우에는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 추천, 혁신제품 추천 하는 사업 외에 좀 더 다양한 지원사업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규정에 포함하여 추진
- 우수발명품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좀 더 폭넓은 홍보 및 촉진책 추진
- (2안)의 경우는 사업명을 '우수발명품 인증제도(안)'로 변경하고, 우수발명품에 대한 지원 정책을 1)제품에 인증 표시, 2)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3)조달청 혁신제품 추천, 4) 추가 혜택(기획 필요)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포함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설 지침안을 (1안)과 (2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2. 법령 및 시행령 후속 조치

- 특허청 주관의 우수발명품 선정사업으로 통합 이관하면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다음의 기존 법령에 의거하여 추천 및 홍보지원 등의 관련 사업을 위임하는 방안이 고려됨
- (1안) 우수발명품 인증 운영지침에서 우선구매와 홍보지원 등을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해 위임, 특허청 고시 제2021-22호를 통합
- (2안) 우수발명품 인증 운영지침에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심의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존의 우선구매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천사업을 연계
- 또한 기존의 우수발명품 선정 및 우선구매추천사업의 운영요령에 대한 삭제가 필요함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1조~148조 (발진회 인증절차) 삭제

특허청고시 제0000-00호

(1안) 우수발명품 선정 및 우선구매 추천사업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우수발명품 선정 및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 및 홍보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수발명품 선정 및 우선구매 추천 등에 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우수발명품”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장의 추천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② “우선구매 추천”이란 우수발명품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선정업체가 요청하는 기관에 특허청장 명의의 추천서를 발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전담기관) ① 특허청장은 우수발명품의 선정 및 우선구매 추천을 위한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공고 및 운영
2. 신청 서류의 접수·처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3. 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우수발명품 확인서의 발급 및 재발급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

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자문·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5조(신청자격) ① 우선구매 추천을 받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2. 규격이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기업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 ② 신청 기업 중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원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공동권리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요건) ①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 ②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③ 조달청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한다.
- ④ 당해 연도에 1개 업체 당 1개의 제품만 선정될 수 있으며, 탈락된 제품의 경우 1회 재신청이 가능하다.
- ⑤ 규격추가 제품일 경우 특허 존속기간이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유효기간 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한다.
- ⑥ 규격추가인 경우 확인서 최초 유효기간 내에서 1회만 신청 가능하며, 탈락된 제품은 재신청할 수 없다.

제7조(신청의 제한)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 시 우선구매 추천 신청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공고 시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8조(신청서 제출) ① 우선구매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시 제시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의 현황 : 주소, 상시종업원수, 연간매출 등
2. 신청제품 :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품 권리번호, 제품명, 제품의 용도 등
3. 제품의 특성 : 기술 내용, 동종업체 기술 제품비교(효과 및 성능) 등

③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에 따른다.

제9조(신청 서류의 보완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업에게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 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의 지정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의 보완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기업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보완사항이 많아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일체의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회의를 제외하고는 해당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심사 및 선정

제10조(심의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은 우수발명품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담당할 심의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 등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수발명품 선정을 위한 서면 심사
2. 우수발명품 선정을 위한 발표 심사
3.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심사
4. 그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은 우수발명품 선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2조(평가 기준) ① 신규지정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 기준에 따른다.

1.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2.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3.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4.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② 규격추가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 기준에 따르며, 신규지정 당시 서류와 제품의 동일성, 규격추가 제품의 동일 기술 적용여부, 관련 권리, 사실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1.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등 등록 여부 확인
2. 제품의 특허기술 적용여부 판단
3. 기 지정된 제품과의 핵심기술(기능·성능)동일 여부 판단
4. 제품의 시험성적서 및 관련 인증서 검토 판단
5. 제품 생산 및 공급 능력 서류 검토 판단

제13조(심사 및 선정 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에 의거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우수발명품 선정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발표심사는 전화인터뷰로 진행하거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신청인을 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심사의 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방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지정 및 규격 추가에 관한 서면심사 위원회를 동일 구성하여 함께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지정 서면심사 위원회는 [별표]에 의거, 서면심사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 발표심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2. 서면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과의 상세 면담 및 제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신규 지정 및 규격추가에 대한 발표심사 위원회를 동일 구성하여 함께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지정의 발표심사 위원회는 발표심사 기준표에 의거,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총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제품을 “적격”으로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라도 각 세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량(0점)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 한다.
3. 규격추가의 발표심사 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규격추가에 찬성하는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③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별표])를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16조(선정심사의 가점 부여) ① [별표]의 항목에 따라 발표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가점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④ 가점은 가점 세부 항목의 구분 없이 최대 5점 이내로 부여한다.

제17조(서면심사 면제 혜택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수혜기업이 지원제품을 대상으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을 신청할 경우 서면심사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1.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 이내의 수혜기업
- 2. 최종평가(우수, 적정, 보완) 결과 '적정' 이상 기업

제4장 선정에 따른 추천서 발급 등

제18조(확인서의 발급) ① 발표심사 위원회가 “적격”으로 평가한 우수발명품에 한해 특허청장 명의의 ‘우수발명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우수발명품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발명품 선정 결과를 특허청 및 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선정 당해자의 미공개 요구 시 예외)
- ③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에서 해외홍보 등을 위한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영문확인서를 별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수요기관 추천서 발송) ① 우수발명품 선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서는 특허청장 명의로 발송되며 우편발송은 지양하고 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을 통한 추천서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추천서 발송시에는 선정기업의 기업정보, 추천제품명, 제품에 포함된 권리정보 등을 포함하여 발송하고, 제품 카달로그 또는 홍보자료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 ③ 수요기관이 온나라 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천서와 함께 홍보자료를 발송하되, 등록되어 있지 않는 수신기관일 경우 수신기관명, 신청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발송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수요기관에 대한 추천서는 1회(20개 공공기관) 일괄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선정기업이 추천서 발송을 추가로 희망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년 1회(10개 공공기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추천서를 발송한 해에는 추가 추천서 발송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추가 추천서는 신규 수요기관에만 발송가능하다.

제20조(혁신제품 추천 신청) ①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혁신 제품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표]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이미 2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재신청할 수 없다.

1. 제품 규격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술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1조(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심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추천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 ② 위원회는 [별표]서식에 따라 혁신성, 시장성, 품질보증·공급능력 및 공공구매 필요성을 평가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혁신제품 추천) 특허청장은 제21조의 심의를 통과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고하는 추천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3. 타부처 혁신제품에 이미 지정되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4.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고하는 추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우수발명품의 표시 등) ① 선정기업은 우수발명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해

추천제품과 제품의 용기, 포장, 홍보물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이라는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품 표시 방법 및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발명품 선정기업은 우수발명품 추천제품과 제품의 용기, 포장, 홍보물에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를 사용할 수 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우수발명품 BI 사용시 추천제품명, 확인서 번호, 확인서 기간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우수발명품 BI 사용시 색깔, 형태, 폰트 등은 임의변경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BI의 색깔은 흑백으로 사용 가능하다.
5. 특허청과 전담기관, 우수발명품 선정기업이 아닌 제3자는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우수발명품 BI를 사용할 수 없다.

③ 특허청과 전담기관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표시 및 우수발명품 BI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관련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허청과 전담기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사업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유효기간 연장 및 추천의 취소

제24조(유효기간 및 연장) 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거나, '제4조 다. 신청의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② 선정일은 전담기관이 정한 날짜로서 유효기간의 첫째날을 의미한다.

③ 제 27조에 따라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④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⑤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목록은 사업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 한다.

⑦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전담기관 업무담당자가 판단하되, '제7조(신청의 제한)' 및 '제23조(추천의 취소)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평가기준)'를 준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동일제품 판단은 신규·연장 신청서류를 각각 비교 확인하여 판단하되,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제4조 바의 신청 서류의 보완 등을 준용한다.

2. 제1호에서 전담기관 업무 담당자가 판단이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⑧ 법정감염병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기업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피해 기간만큼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 발생일이 유효기간 내의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우수발명품 확인) ① 본 사업에 따른 우수발명품 여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 업무 담당자가 신청 제품설명서 및 제품 카탈로그 (사진) 등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업무 담당자가 확인이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③ 1)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에 선정된 우수발명품은 선정당시의 제품설명서 외 해당 제품규격(모델명), 물품분류번호, 식별번호로 특정된다.

제26조(확인서 변경 발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의 확인서 변경 신청 요구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 발급할 수 있다.

1. 단순 회사명 및 대표자의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서 변경 요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확인서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확인서의 변경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1.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3. 기타 확인서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제27조(추천의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서면통지로서 특허청장에게 우선구매 추천 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1.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3.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4. 해당 권리 또는 제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7. 사업 신청시 컨설팅 업체(신청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8. 우선구매추천서를 임의로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발송할 경우
9. 특허청과 전담기관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10. 해당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 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1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표시 및 우수발명품 BI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제6장 선정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제28조(선정제품 홍보) ① 특허청과 전담기관은 우수발명품 선정제품의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인지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요 홍보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광고게재를 위해 필요시 비용을 신청인들에게 각출할 수 있다.

제29조(선정기업 교육) ① 전담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하여 구매기관에 대한 납품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공공기관 납품실적 조사) ① 전담기관은 우수발명품 선정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물품분류번호(또는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제31조(선정기업의 타기관 연계사업 추천) ① 선정기업에 대하여 확인서 유효기간 내 있는 동일 제품에 대해 타기관 동일 연계사업에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특허청고시 제0000-00호

(2안) 우수발명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우수발명품의 인증과 공공구매 추천 및 홍보 등 제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수발명품 인증 등에 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우수발명품”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으로 보호되는 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장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② “공공구매 추천”이란 우수발명품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선정업체가 요청하는 기관에 특허청장 명의의 추천서를 발송하는 것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 ① 특허청장은 우수발명품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공고 및 운영
 2. 신청서류의 접수·처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우수발명품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자문·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5조(신청자격) ① 우선구매 추천을 받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및 조달사업법 제 26조 1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전용 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기업

2. 규격이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기업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② 신청 기업 중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원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동권리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요건) ①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③ 조달청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당해 연도에 1개 업체 당 1개의 제품만 선정될 수 있으며, 탈락된 제품의 경우 1회 재신청이 가능하다.

⑤ 규격추가 제품일 경우 특허 존속기간이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유효기간 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한다.

⑥ 규격추가의 경우 확인서 최초 유효기간 내에서 1회만 신청 가능하며, 탈락된 제품은 재신청할 수 없다.

제7조(신청의 제한)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 시 우수발명품 인증 신청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공고 시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8조(신청서 제출) ① 우수발명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시 제시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의 현황 : 주소, 상시종업원수, 연간매출 등
2. 신청제품 :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품 권리번호, 제품명, 제품의 용도 등
3. 제품의 특성 : 기술 내용, 동종업체 기술 제품비교(효과 및 성능) 등

③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에 따른다.

제9조(신청 서류의 보완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업에게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 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의 지정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의 보완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기업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보완사항이 많아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일체의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회의를 제외하고는 해당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심사 및 선정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은 우수발명품 인증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담당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 등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기

타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수발명품 인증을 위한 서면 심사
2. 우수발명품 인증을 위한 발표 심사
3.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심사
4. 그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은 우수발명품 인증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2조(평가 기준) ① 신규 지정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 기준에 따른다.

1. 기술 혁신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2. 제품 시장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3.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4. 공공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② 규격추가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 기준에 따르며, 신규지정 당시 서류와 제품의 동일성, 규격추가 제품의 동일 기술 적용여부, 관련 권리, 사실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1.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등 등록 여부 확인
2. 제품의 특허기술 적용여부 판단
3. 기 지정된 제품과의 핵심기술(기능·성능)동일 여부 판단
4. 제품의 시험성적서 및 관련 인증서 검토 판단
5. 제품 생산 및 공급 능력 서류 검토 판단

제13조(심사 및 선정 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에 의거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우수발명품 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발표심사는 전화인터뷰로 진행하거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신청인을 심사회에 참석시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의 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방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지정 및 규격 추가에 관한 서면심사 위원회를 동일 구성하여 함께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지정 서면심사 위원회는 [별표]에 의거, 서면심사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 발표심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2. 서면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과의 상세 면담 및 제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신규 지정 및 규격추가에 대한 발표심사 위원회를 동일 구성하여 함께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지정의 발표심사 위원회는 발표심사 기준표에 의거,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총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제품을 “적격”으로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라도 각 세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량(0점)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 한다.

3. 규격추가의 발표심사 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규격추가에 찬성하는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③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별표])를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16조(선정심사의 가점 부여) ① [별표]의 항목에 따라 발표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가점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④ 가점은 가점 세부 항목의 구분 없이 최대 5점 이내로 부여한다.

제17조(서면심사 면제 혜택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수혜기업이 지원제품을 대상으로 우수발명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면심사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1.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 이내의 수혜기업
- 2. 최종평가(우수, 적정, 보완) 결과 '적정' 이상 기업

제4장 선정에 따른 추천서 발급 등

제18조(인증서의 발급) ① 발표심사 위원회가 “적격”으로 평가한 우수발명품에 한해 특허청장 명의의 ‘우수발명품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우수발명품 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발명품 인증 결과를 특허청 및 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선정 당해자의 미공개 요구 시 예외)
- ③ 우수발명품 인증 기업에서 해외홍보 등을 위한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영문확인서를 별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수요기관 추천서 발송) ① 우수발명품 인증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서는 특허청장 명의로 발송되며 우편발송은 지양하고 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을 통한 추천서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추천서 발송시에는 인증기업의 기업정보, 추천제품명, 제품에 포함된 권리정보 등을 포함하여 발송하고, 제품 카달로그 또는 홍보자료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 ③ 수요기관이 온나라 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천서와 함께 홍보자료를 발송하되, 등록되어 있지 않는 수신기관일 경우 수신기관명, 신청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발송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수요기관에 대한 추천서는 1회(20개 공공기관) 일괄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인증기업이 추천서 발송을 추가로 희망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년 1회(10개 공공기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추천서를 발송한 해에는 추가 추천서 발송을 신청할 수 없다.
- ⑥ 제5항의 추가 추천서는 신규 수요기관에만 발송가능하다.

제20조(혁신제품 추천 신청) ① 우수발명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혁신 제품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표]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이미 2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재신청할 수 없다.

1. 제품 규격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술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1조(혁신제품 추천) 특허청장은 우수발명품 인증제품을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어 혁신 제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고하는 추천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3. 타부처 혁신제품에 이미 지정되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4.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고하는 추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우수발명품의 표시 등) ① 선정기업은 우수발명품 인증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해 인증제품과 제품의 용기, 포장, 홍보물에 우수발명품 인증제품이라는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품 표시 방법 및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발명품 인증기업은 우수발명품 추천제품과 제품의 용기, 포장, 홍보물에만 우수

- 발명품 인증제품의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를 사용할 수 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우수발명품 인증제품의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를 사용하지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우수발명품 BI 사용시 추천제품명, 확인서 번호, 확인서 기간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우수발명품 BI 사용시 색깔, 형태, 폰트 등은 임의변경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BI의 색깔은 흑백으로 사용 가능하다.
 5. 특허청과 전담기관, 우수발명품 선정기업이 아닌 제3자는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우수발명품 BI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특허청과 전담기관은 우수발명품 인증제품의 허위·부정표시 및 우수발명품 BI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관련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특허청과 전담기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사업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유효기간 연장 및 추천의 취소

제23조(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거나, '제7조 신청의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 ② 선정일은 전담기관이 정한 날짜로서 유효기간의 첫째날을 의미한다.
- ③ 제 26조에 따라 우수발명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 ④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 ⑤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목록은 사업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 한다.
- ⑦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전담기관 업무담당자가 판단하되, '제7조(신청의 제한)' 및 '제26조(추천의 취소)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평가기준)'를 준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동일제품 판단은 신규·연장 신청서류를 각각 비교 확인하여 판단하되,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제4조 바의 신청 서류의 보완 등을 준용한다.

2. 제1호에서 전담기관 업무 담당자가 판단이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⑧ 법정감염병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기업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피해 기간만큼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 발생일이 유효기간 내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우수발명품 인증 확인) ① 본 사업에 따른 우수발명품 인증 여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 업무 담당자가 신청 제품설명서 및 제품 카탈로그 (사진) 등을 검토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업무 담당자가 확인이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③ 1)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에 선정된 우수발명품은 선정당시의 제품설명서 외 해당 제품규격(모델명), 물품분류번호, 식별번호로 특정된다.

제25조(인증서 변경 발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의 인증서 변경 신청 요구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 발급할 수 있다.

1. 단순 회사명 및 대표자의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서 변경 요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확인서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확인서의 변경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1.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제26조(추천의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서면통지로서 특허청장에게 인증 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1.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인증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3.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4. 해당 권리 또는 제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7. 사업 신청시 컨설팅 업체(신청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8.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추천서를 임의로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발송할 경우
9. 특허청과 전담기관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10. 해당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인증후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11. 우수발명품 인증제품의 허위·부정표시 및 우수발명품 BI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제6장 선정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제27조(선정제품 홍보) ① 특허청과 전담기관은 우수발명품 인증제품의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인지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요 홍보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광고계재를 위해 필요시 비용을 신청인들에게 각출할 수 있다.

제28조(선정기업 교육 및 지원) ① 전담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하여 공공 구매기관에 대한 납품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특허청과 전담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하여 구매기관에 대한 공공수요 개발을 위한 지원 및 자문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다.

제29조(공공기관 납품실적 조사) ① 전담기관은 우수발명품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물품분류번호(또는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제30조(선정기업의 타기관 연계사업 추천) ① 선정기업에 대하여 확인서 유효기간 내 있는 동일 제품에 대해 타기관 동일 연계사업에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V.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 실행 사업

1. 단계별 실행 사업
2. 세부 실행 사업
3. 사업 실행 로드맵

1. 우수 R&D 역량 기업 선발

가. 우수발명품 인증 혁신제품 추천 홍보

- 본 사업은 우수발명품을 개발하는 IP기반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통한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관련 기업들의 많은 지원과 선정이 국내 IP기반 기업들의 확대에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본 사업에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R&D 단계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도
- 연 3회 신규 선정 신청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 참여 관련 기업들에게 이메일 홍보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홈페이지에 우수발명품 인증 및 혁신조달 추천 사업의 사이트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Good Invention(GI) 플랫폼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서비스를 통합 운영

나. 혁신조달 가능 우수발명품 개발 기업 발굴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다양한 R&D와 제품개발 단계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우수발명품 선정을 위한 혁신성과 공공성의 핵심 요인들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기술 혁신성 요인 뿐만 아니라 가격 및 시장 수요를 분석하여 시장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제품 개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IP 창출과 보호 단계의 타 사업 지원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들에서 차별화된 공공수요 품목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

2. 우수발명품 혁신제품 추천 및 통합 지원

가. 우수발명품 인증 및 우선구매추천

-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들에 대한 특허청장이 인증하는 우수발명(Good Invention) 마크를 부여하고 공공분야 우선구매 추천
- GI 플랫폼에 인증 제품들을 등록하고 제품군별로 공공수요 기관의 특성을 연계하여 맞춤형 추천과 홍보를 진행

나. 혁신제품 조달 추천

- 조달청의 패스트트랙 III의 혁신제품으로 추천하여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시범구매와 공공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조달연구원의 평가 과정에서 제품 혁신성이 평가된 우수발명품에 대해 공공성을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의 개선 논의가 필요함
- 조달연구원의 평가에서 혁신성에 대한 재평가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수발명품 선정 제품에 대한 혁신성 가점 제도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다. 우수발명품(Good Invention) 플랫폼 구축 및 온오프라인 홍보

- 특허청이 인증하는 우수발명품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정되는 제품들에 대한 통합 홍보 및 지원을 실행

- 우수발명품 인증에 대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인지도 향상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한국의 IP기반 제품들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홍보와 진출까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선정 기업들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조달 추천 등을 가장 핵심적인 추가 지원 필요 서비스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과 우수발명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홍보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조달 종합 포털 ‘혁신장터’ 와 ‘이음장터’, ‘디지털서비스몰’, ‘벤처나라’ 등이 다양한 공공구매 연계의 플랫폼으로서 기업들에게 중요한 수요 확보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허청이 인증하는 우수발명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우수 특허와 혁신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공공과 민간 수요와 연계되도록 하는 특허청 인증 특성을 살린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특허청 주도의 본 사업이 확대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 연 1-2회 우수발명품 박람회(Good Invention Fair)를 개최하여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발명품들의 참가 지원을 받아 오프라인 홍보와 민간 및 공공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사를 진행
-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기업들을 선정하여 Good Invention Award를 수여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기업과 고객들의 인지도와 공신력을 더욱 상승시키고 우수발명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3. 우수발명품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 지원 사업

가. 우수발명품 공공조달 수요 확보 지속 지원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을 비롯한 공공 및 민간 수요 성과에 따라 충분한 수요 창출의 성과에 못미치는 경우 추가적인 1~2년의 지원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 각 제품별 적합성이 높은 공공분야에 맞춤형 추천과 함께 차별화된 공공분야의 부가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나.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들에 대한 IP기반 성장 컨설팅 및 교육

-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들의 공공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후속 제품 개발에 있어 IP 창출, 보호, 사업화와 성장에 이르는 단계의 특허청 사업의 연계 지원
- 후속 제품과 기업 성장을 위한 IP 금융, IP 사업화 컨설팅과 CIPO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의 통합 컨설팅을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의 기존 지원 사업들을 연계하여 제공
-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들이 지속적인 R&D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여 IP 기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특화된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의 관련 지원 사업들을 기업의 창업-R&D-지식재산권 확보-제품개발-사업화-혁신조달-IP금융-컨설팅 및 교육-글로벌화 등의 사업 성장 프로세스별로 정리하거나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와 같이 IP 창출, 보호, 활용 프로세스로 조정되어 기업의 단계별 관련 사업 연계와 통합 지원이 가시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

- 특허청에서 선정 인증한 우수발명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단계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1. IP기반 제품 공공판로 탐색 지원 사업

가. 사업 목적

- IP기반 우수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수요 분석 및 기관 판로 매칭

나. 사업 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R&D를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다. 사업 내용

-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 평가
 - 신청된 제품에 대한 혁신성과 공공성 pre-test 지원
- 공공수요 매칭 분석
 - 공공수요 트렌드와 제품 분야 및 기능별 수요 기관들의 DB를 통한 공공수요 분야 매칭 분석 및 컨설팅
- 국가정책 기술 및 산업 분야와의 적합성 분석 및 컨설팅

- 공공수요 산업 및 기관에 대한 연계와 우선구매 추천
 - 우수발명품 선정 및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매칭된 공공수요 분야의 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와 우선구매 추천

라. 사업 효과

- R&D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개발된 중소규모 기업들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공공분야의 수요에서 확보하도록 지원
- IP기반 제품들에 대해서 공공조달 분야에서 평가하는 혁신성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공공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제품의 보완점을 확인하여 반영
- 해당 제품에 대한 공공수요 제품 트렌드와 기관 및 산업 분야별 특성과의 매칭 분석을 통해 타겟 기관 및 분야를 선정
- 우수 발명품 선정 프로세스로 연계하여 해당 공공수요 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으로 공공구매까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지원

2. IP기반 혁신시제품 실증 지원 사업

가. 사업 목적

- IP기반 개발 시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공공의 수요와 부합하는 혁신성을 중심으로 조달 적정성 등을 실증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혁신조달 제품 선정 효과성을 제고

나. 사업 대상

- 특허청의 R&D단계의 IP 창출,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IP기반 개발 시제품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다. 사업 내용

- IP기반 시제품 성능의 혁신성을 인증을 통해 효과적인 혁신조달에 진입하고 각종 기술적 인증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원
- 시제품 분야별 기술인증전문기관과 연계
- 인증에 대한 비용 지원(필요시 매칭 자금 지원)
- 혁신 기능성에 대한 실제 작동 검증을 통해 문제 확인, 원인 분석, 개선안 도출 및 반영 지원
- 제품 성능에 대한 기술인증 전문가들의 개선 컨설팅 및 테스트 보고서 작성 지원
- 개선 기술 또는 기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특허, 실용신안권 확보 가능성에 대한 변리사 자문 및 지원

라. 사업 효과

- IP R&D 사업 등의 지원으로 개발된 시제품들의 기술 혁신성과 공공 수요에 적합한 기능성 실현의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지원으로 그 기술 우위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혁신제품 선정에 기여
- 특허청과 연계된 기술인증기관과 변리사 등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하

여 소규모 기업들의 시제품의 기술혁신성에 대한 공신력 확보

- 추가 IP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원하여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여 IP 기반 혁신제품을 통한 기업의 특허 자산 경쟁우위 확보

3. 공공판로를 위한 IP기술 마케팅 지원: SMK(Sales-Material-Kit) 작성

가. 사업 목적

- IP기반 기술 기업들의 제품개발 단계 이후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타겟 시장 수요와 마케팅 트렌드를 분석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핵심
- 기술 기반 소규모 기업들의 이러한 시장지향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역량과 전문 인력 부족의 취약점을 지원하는 기술 마케팅 전략 지원을 통해 제품의 시장 성과를 제고
- 특히 공공판로를 모색하는 기업들에 대해 공공구매 시장에 대한 특화된 IP기술 마케팅 지원으로 안정적인 공공수요 확보에 기여하도록 함

나. 사업 대상

- 특허청의 IP 창출, 보호, 사업화 단계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시제품을 보유한 기업

다. 사업 내용

- 기술 기반 제품의 마케팅 전략 수립 교육
 - 공공분야 기술 니즈 및 공공수요 트렌드 분석
 - 관련 사업구조 및 경쟁자 분석
 - 기술 우위,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포지셔닝 수립
 - 타겟 공공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 SMK(Sales-Material-Kit): 기술소개서 작성
 - 기술우위를 기반으로 한 활용 분야와 타겟 시장의 공공 수요에 대한 적합성 등을 제시한 SMK 작성 및 자문 지원

- 기술 우위 제품의 혁신성, 공공성 기반 마케팅 실행 계획서 도출
 - 각 프로세스별 교육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실행가능한 마케팅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출

- 교육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고 IP기반 기술 기업 공공 마케팅 전략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위주의 실무 교육으로서 교육 효과를 제고하도록 함

라. 사업 효과

- 기술 우위 기업들의 효과적인 공공 수요시장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과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성과를 제고하고 IP기반 기업으로 지속 성장에 기여함

- 공공판로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기술우위 기반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 교육으로 소규모 기술기반 기업에 취약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서의 핵심 마케팅 역량을 구축하도록 함

4. 우수발명품 혁신제품 지정 촉진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가. 공공수요 연계전략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1) 개발 목적

- 우수발명품 신청 준비 기업들에 대한 공공 수요와 시장성 분석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기업들에 대해 우수발명품 선정시 가점 제도를 도입
-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들에게 대한 공공성 평가 전 심사에 필요한 공공성 보완 전략 수립 교육

2) 개발 필요성

-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제품화 단계에 집중된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은 제품화 이후에 제품의 수요 개발과 경쟁 제품에 대한 우위 요소를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시장 진입단계에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함
- 공공 수요에 적합한 제품의 품목, 기능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화의 방향을 수립한다면 보다 빠르게 혁신제품으로 선정하여 공공구매의 성과까지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개발된 제품이 공공 수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 기관을 설정하고 경쟁사 대비 제품의 가치 및 혁신성, 가격의 우위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 및 전략이 필요함

3) 개발 프로세스

- IP기반 경영 전략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전문가, 공공조달관련 전문 연구원, 기술분야별 변리사 등을 초빙하여 통합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구축하여 온오프

라인 제공 프로세스를 도입

- 개발된 단계별 공공 수요 분석 및 기술기반 제품의 공공성 확보 전략 수립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매뉴얼로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우수발명품 선정 전후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혁신제품 선정 및 공공구매 성과를 제고

4) 파급 효과

-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IP 창출 및 보호, 사업화 단계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수발명품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 프로그램을 공공성 평가 단계에서 혁신제품에서 탈락한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하여 문제점 보완을 통한 재도전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할 수 있음

나. 공공수요 품목 및 기능 트렌드 분석 DB 및 프로그램 개발

1) 개발 목적

- 국내 공공수요 품목은 공공분야 환경 변화와 국가 핵심 기술 분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음
 - 특히 최근에는 환경, 안전, 의료기기, 우수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위기대응을 위한 제품, 비축 물자 등의 품목 등이 보다 큰 매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와 융합된 제품들의 진입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공공 수요 품목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자료를 DB화하여 기업들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보다 공공 수요에 적합한 제품과 기능의 개발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2) 활용 및 파급효과

- 특히 이러한 품목과 기능에 대한 특허 정보 분석과 연계하여 제공한다면 보다 집중적인 R&D 활동과 IP 창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IP 정보 분석 전문 기관들과 연계하여 공공 수요의 기술 트렌드와 특허의 매칭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공공 수요 매칭 전략 지원 사업에 활용
- 또한 이러한 공공 수요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DB를 제공하여 자사 제품의 공공 수요 적합성을 분석도록 하는 세미나를 제공함

다. IP기반 기술마케팅 전략 사례집 개발

1) 개발 목적

- 공공수요 연계 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들의 보다 실효적인 전략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별 성공 사례집을 발간
- 본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 제품을 개발하면서 고려해야 할 기술마케팅 전략과 공공관로 개척을 위한 공공성을 갖춘 제품 우위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인지하고 실제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활용 및 파급효과

- 사례 개발의 과정에서 IP기반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전략 및 마케팅 분야 교수, 변리사, 기술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여 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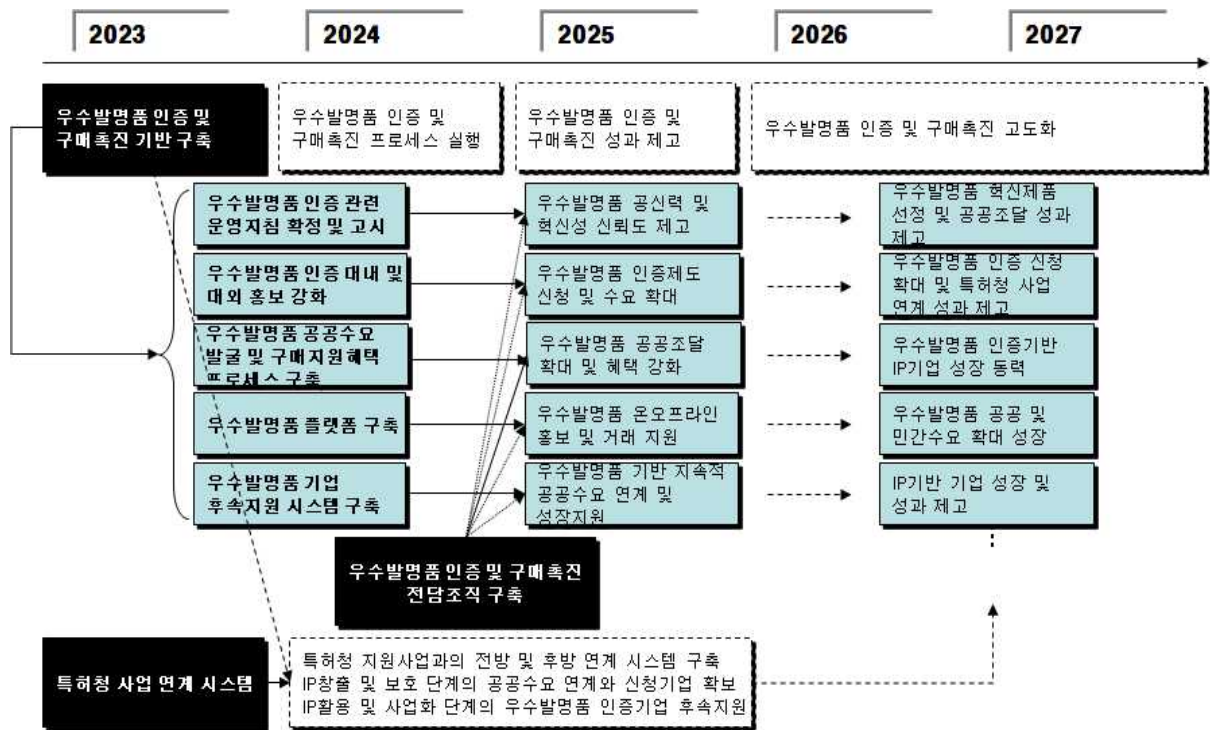
고 해당 기업들의 관련 컨설팅과 지속적인 IP 전략 멘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음

- 우수발명품 기업들의 공공수요 확보를 통한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본 사례 콘텐츠를 각종 교육 및 컨설팅의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 및 컨설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1. 사업 추진 로드맵

- 특허청 주관의 우수발명품 인증 제도를 정착시키고 혁신제품 추천 및 공공구매촉진 사업의 정착과 성과 도출을 위해 초기 3개년이 우수발명품 인증제도의 기반 및 특허청 사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 프로세스 정착, 실행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는 핵심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봄
- 해당 5개년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그림 5-1>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 사업 실행 로드맵



2. 기반 구축 핵심 과제

-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1단계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가. 우수발명품 인증 관련 제도 기반 구축

- 우수발명품 인증제도의 특허청 주관으로 변경과 혁신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을 연계하는 사업의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 및 요령 등을 구축
 - 우수발명품 인증 제도의 법령 및 지침 신설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의 조항 등을 정리하여 사업 기반 구축
 - 기존 특허청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천 사업 지침 등의 변경
- 주관기관인 특허청과 실행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역할 및 사업 진행 프로세스 확립
- 평가 프로세스에서의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과 혁신제품 심사에서의 추가 가점 등에 대한 지원 마련

나. 우수발명품 인증 대내 및 대외 홍보 강화

- 특허청 주관 우수발명품(GI 또는 GIP) 인증제도에 대한 언론 및 온오프라인 홍보
- 홈페이지 구축 및 기존 사업들의 참여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참여 촉진

다. 우수발명품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지원혜택 프로세스 구축

- 특허청 주도의 공공수요 발굴과 구매지원혜택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실효적인 혜택

강화

- 특허청 관련 기관들의 구매필요 제품이나 혁신기능에 대한 추천 프로세스 등을 통해 IP기반 제품 개발 기업들과 연계
- 특허청 관련기관들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의무구매비율,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자체 등의 우선구매비율 도입 모색

라. 우수발명품 플랫폼 구축

- 인증 우수발명품에 대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품 홍보 및 공공거래 지원
- 온라인 홍보와 연계하여 오프라인 우수발명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여 공공수요 관련 기관들을 초청 적극 홍보 진행

마. 우수발명품 기업 후속지원 시스템 구축

- 선정된 우수발명품 기업들의 공공수요 확보 이후 지속적인 IP 투자와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자금조달, 시장 확대방안에 대한 사업 연계 시스템 구축
- 공공수요 발굴 컨설팅, IP경영전략 및 마케팅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수요 발굴 및 인력 확보를 지원

바. 특허청 사업 연계 시스템 구축

- 우수발명품 인증사업이 공공조달 성과를 제고하고 공신력있는 인증제도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특허청 사업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다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통합 IP기반 기업 성장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매출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 허브로 거시적 관점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사. 우수발명품 인증 및 구매촉진 전담 조직 구축

- 우수발명품 인증제도가 공신력있는 특허기반 우수발명제품으로서의 기술혁신성과 시장성 인증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조직의 역할이 필요함
- 또한 인증 관리 및 사후 지원,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수요 촉진 전략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가 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NEP, NET 사업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담 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청 우수발명품 인증제도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유사한 전문 평가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참고문헌

권남호·윤지웅(2021), 효과적인 민간부문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제도 개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발명제품 혁신성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혁신 발명제품 조달대체여부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www.kip.re.kr

현대리서치연구소 (2021), 202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현대리서치연구소 (2021), 202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부 록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특허청 정책연구과제인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 및 운영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입니다.

응답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사업으로 실행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 응답 내용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000 교수

설문조사 관련 문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000 교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이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이란?

: 우수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추천함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귀 사가 참여하신 사업은 무엇입니까?

- ①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만 참여 (2~12 문항, 21~32문항)
- ②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만 참여 (13~19 문항, 21~32문항)
-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모두 참여 (2~32문항)

[2번~12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관련 의견수렴]

2. 다음 중 '우수발명품'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생각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 선택 가능)

- ①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② 국내·국외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우수한 제품
- ③ 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우수한 제품
- ④ 친환경, 친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우수한 제품
- ⑤ 그 외: ()

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특허청 사업공고를 통해 알게 됨
- ②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됨
- ③ 한국발명진흥회가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됨
- ④ 타 기업들의 공공조달 사례를 통해 알게 됨
- ⑤ 판로지원을 위한 정보를 찾던 중 알게 됨
- ⑥ 기타 경로: ()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에 지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제품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인증으로 활용
- ②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용
- ③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점 획득
- ④ 공공조달 시장 판로개척의 기반 마련
- ⑤ 그 외: ()

5. 다음 중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프로세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선택, 2개까지)

- ① 선정평가 기준의 변화 및 현실화
- ② 선정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③ 선정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사업 지원
- ④ 업종별·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프로세스 마련
- ⑤ 그 외: ()

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
- ②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
- ③ 온라인 신청 절차를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
- ④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자료(매뉴얼 등)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
- 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⑥ 선정결과 확인서 및 추천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⑦ 없음
- ⑧ 그 외: ()

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우수발명품 선정 시 '기술 및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조달 취지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우수발명품 선정 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제품을 추천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우수발명품 선정 시 '기대 시장 규모 및 타 산업의 파급성'을 평가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우수발명품 선정 시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없음
- ⑥ 그 외: ()

8.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선정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책'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우수발명품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 ② 우수발명품 선정 인증서의 공공분야 가점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타 기업과의 상생 협력(예: 소재 부품기업, 생산기술 보유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발명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 ④ 우수발명품이 민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사업을 마련한다.
- ⑤ 우수발명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 ⑥ 없음
- ⑦ 그 외: ()

9.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선정 제품의 '홍보 및 사업지원'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우수발명품에 대한 인증 인지도 및 활용성 확대
- ② 우수발명품 선정제품에 대한 온라인 홍보 플랫폼 마련
- ③ 우수발명품 선정제품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행사 진행
- ④ 우수발명품 선정제품에 대한 제품 혁신 및 판로 개척을 위한 IP금융 지원
- ⑤ 우수발명품 선정제품을 기반으로 사업 성장을 위한 IP전략 및 경영 컨설팅
- ⑥ 없음
- ⑦ 그 외: ()

10. 위의 9번에서 언급된 '홍보 및 사업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선정 이후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투자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증가했다.
- ② 감소했다.
- ③ 변동이 없다.

12. 향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④ 해당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

[13번~19번: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관련 의견수렴]

13.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특허청 사업공고를 통해 알게 됨
- ②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됨
- ③ 한국발명진흥회가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됨
- ④ 타 기업들의 공공조달 사례를 통해 알게 됨
- ⑤ 판로지원을 위한 정보를 찾던 중 알게 됨
- ⑥ 기타 경로: ()

14.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에 지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공공조달 시장 판로확보를 통한 사업 성장
- ②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용
- ③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점 획득
- ④ 제품의 특허 기반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인증으로 활용
- ⑤ 그 외: ()

15. 다음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의 프로세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선택, 2개까지)

- ① 선정평가 기준의 변화 및 현실화
- ② 공공조달 선정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컨설팅
- ③ 선정 제품의 추가적인 판로개척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④ 선정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사업 지원
- ⑤ 없음
- ⑥ 그 외: ()

16.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
- ②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
- ③ 신청 절차를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
- ④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자료(매뉴얼 등)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
- 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혁신성 심의(1차 평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⑥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공공성 심의(2차 평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⑦ 심사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⑧ 없음
- ⑨ 그 외: ()

17.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향후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혁신성 심의(1차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공공성 평가(2차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최종 선정 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상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대상 우수 특허기반 혁신제품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최종 선정 후 제품 및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및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민간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사업 등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시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그 외: ()

18.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사업 선정 이후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R&D투자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증가했다.
- ② 감소했다.
- ③ 변동이 없다.

19. 향후 추가적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20번: 우수발명품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선정 기업 의견수렴]

20. 우수발명품 선정 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에 지원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우수발명품 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되는 프로세스의 경험이 우수특허기반 사업 신청과 심사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 ② 우수발명품 선정 후 제품의 개선과 홍보가 이루어져 우수특허기반 사업 신청의 혁신 기반이 마련되었다.
- ③ 우수발명품 선정 후 사업의 성장과 수익성 확보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이 가능한 규모로 성장했다.
- ④ 우수발명품 선정 이후 추가적인 특허 확보 및 기술 혁신으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개발이 가능했다.
- ⑤ 우수발명품 선정 이후 여러 다양한 공공분야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품의 공공성 기반이 마련되었다.
- ⑥ 없음
- ⑦ 그 외: ()

[21번~32번: 귀 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귀 기업이 속한 산업을 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농업·임업·축산업·어업·수산업
- ② 광업
- ③ 제조업
- ④ 전기, 가스, 증기·공기조절 공급업

- ⑤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⑥ 건설업
- ⑦ 도매·소매업
- ⑧ 운수·창고업
- ⑨ 숙박·음식점업
- ⑩ 정보통신업
- ⑪ 금융·보험업
- ⑫ 부동산업
-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⑭ 교육서비스
- ⑮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⑯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2. 귀 기업의 선정된 제품(우수발명품, 혁신제품)은 다음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합니까?

- ① 기계, 금속
- ② 전기, 전자
- ③ 정보통신
- ④ 바이오, 의료
- ⑤ 화학, 섬유
- ⑥ 건설환경
- ⑦ 기타()

23. 귀 기업의 주된 시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수출
- ② 내수
- ③ 수출과 내수 모두

24. 귀 기업의 주된 고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부기관(B2G)
- ② 개인소비자(B2C)
- ③ 다른 기업 또는 생산자(B2B)

30. 귀 기업의 상표권 보유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유효상표)

- ① 5건 미만
- ② 5건~20건 미만
- ③ 20건 이상
- ④ 없음

31. 귀 사의 설립년도는 언제입니까? (예: 1990년)

()

32. 귀 사의 2022년말 예상 총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1,000백만원)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방안 연구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인 : 특허청장 이인실


발행처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566 FAX. 042-471-8048

홈페이지 www.kipo.or.kr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우수발명품 선정 및 혁신조달 촉진방안 연구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225
<http://www.kipo.go.kr>

ISBN : 979-11-6884-094-2 13500

DOI : 10.8080/P9791168840942